

서울시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www.seoul.go.kr

제 3383호

2016. 12. 1.(목)

함께
서울



목 차

◆ 자치법규

[입법예고]

제2016-2310호 서울특별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3
제2016-2311호 서울특별시교통안전대책실무위원회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4

◆ 고 시

제2016-383호 결핵병·브루셀라병 검사 및 검사증명서 휴대 명령 고시	5
제2016-384호 자전거도로의 노선지정에 관한 고시	12
제2016-385호 하천공사시행계획(변경) 고시	22
제2016-387호 도시계획시설(도로 등)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	23
제2016-388호 청담·도곡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 고시	28
제2016-389호 도시계획시설[낙산근린공원(변경)]사업 실시계획 인가고시	39
제2016-390호 도시관리계획(구로역 및 신도림역세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40
제2016-391호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 지형도면 고시(서강대학교)	89

◆ 공 고

제2016-2306호 종합공사시공업자 행정처분(등록말소) 공고	95
제2016-2312호 서울 시민시장 표준규약 공고	95
제2016-2317호 천왕 도시개발사업 1차 공사완료 공고	100
제2016-2318호 상계·장암 도시개발사업 1차 공사완료 공고	101
제2016-2323호 2016년 하반기 서울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차지원 신청안내 공고	102
제2016-2324호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103
제2016-2332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업체 행정처분(등록말소) 공시송달 공고	104
제2016-2336호 「서울특별시 자치현장 조례」 제정 관련 공청회 개최 공고	105
제2016-2338호 2016년도 제21차 건축물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결과 공고	111

◆ 구 고 시

제2016-112호 명동구역 제4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정비계획) 지정(변경) 정정고시(중구)	112
제2016-162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성북구)	115

제2016-163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성북구)	119
제2016-114호 도시계획시설사업(유통업무설비:대규모점포)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정정 고시(노원구)	124
제2016-155호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마포세무서)사업 사업시행자 변경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마포구)	125
제2016-86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양천구)	126

◆ 구 공 고

제2016-1144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도봉구)	129
제2016-1984호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변경(폐지) 결정(안) 열람공고(강남구)	131
제2016-1426호 도시관리계획(잠실광역중심 제1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재)열람공고(송파구)	134

◆ 사업소고시

제2016-273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136
제2016-274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136

◆ 기 타

제2016-419호 하천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137
제2016-423호 하천점용(변경)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137
제2016-424호 하천점용(변경)허가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서울지방국토관리청)	138
제2016-427호 하천점용(일시)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139

◆ 정 정

강서구고시 제2016-58호 정정	140
--------------------------	-----

자 치 법 규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2310호

서울특별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12월 1일
서울특별시장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1. 폐지이유

- 가. 「교통안전법」 개정에 의해 교통안전대책위원회가 지방교통위원회로 변경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 및 개정되었음
나. 「서울특별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서울특별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의 내용을 대신할 ‘서울특별시 교통위원회’가 구성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서울특별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를 폐지한다.

3. 의견제출

이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교통운영과,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시청별관덕수궁길 15, 서소문청]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교통운영과(전화:02)2133-2470, FAX:02)2133-1054, E-mail: lina74@seoul.go.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폐지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2311호
서울특별시교통안전대책실무위원회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교통안전대책실무위원회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12월 1일
서울특별시장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1. 폐지이유

- 가. 「교통안전법」 개정에 의해 교통안전대책위원회가 지방교통위원회로 변경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 및 개정되었음
 나. 「서울특별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서울특별시교통안전대책실무위원회규칙」의 내용을 대신할 ‘도시교통안전실무위원회’가 구성되어 본 규칙을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서울특별시교통안전대책실무위원회규칙」을 폐지한다.

3. 의견제출

이 규칙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교통운영과,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시청별관덕수궁길 15, 서소문청]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교통운영과(전화:02)2133-2470, FAX:02)2133-1054, E-mail: lina74@seoul.go.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폐지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383호

결핵병·브루셀라병 검사 및 검사증명서 휴대 명령 고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결핵병·브루셀라병 검사 및 검사증명서 휴대명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1일

서울특별시장

제1조(목적) 이 명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결핵병·브루셀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결핵병·브루셀라병 검사 및 검사증명서 휴대 명령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사 대상) ① 결핵병 검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에서 사육되고 있는 생후 12개월 이상의 소
2. 결핵병 양성 또는 의양성으로 판정된 소와 함께 사육되었거나 과거 결핵병이 발생한 지역에서 사육되어 결핵병의 감염이 의심되는 소 등 검사기관의 장이 결핵병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
3. 종축을 사육하거나 검정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한 소
4. 수출입 검역을 받는 소

② 브루셀라병 검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에서 사육되는 생후 12개월 이상의 한·육우 암소
2. 육성을 전문으로 하는 젖소 농장의 착유를 하지 않는 생후 12개월 이상의 젖소 암소
3. 거래 또는 가축시장·도축장에 출하되는 소(거세 수소는 제외 한다. 이하 같다)
4. 수집상·중개상이 사육하는 소(거세 수소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5. 자연 종부(自然 種付)용으로 이용하는 수소
6. 젖소 농장에서 집유된 원유

제3조(검사 시기 등) ① 결핵병 검사 대상별 검사 시기 및 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에서 사육되는 생후 12개월 이상의 젖소 : 연 1회 이상
2. 거래 또는 가축시장에 출하되는 생후 12개월 이상의 소(젖소는 제외한다.) : 거래 또는 출하 시(도축장 출하는 제외 한다.)
3. 수출입 검역을 받는 소 : 수출입 시

② 브루셀라병 검사 대상별 검사 시기 및 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에서 사육되는 생후 12개월 이상의 한·육우 암소 : 연 1회 이상
2. 육성을 전문으로 하는 젖소 농장의 착유를 하지 않는 생후 12개월 이상의 젖소 암소 : 연

1회 이상

3. 거래 또는 가축시장·도축장에 출하되는 소 : 거래 또는 출하 시
4. 수집상·중개상이 사육하는 소 : 연 4회 이상
5. 자연 종부(自然 種付)용으로 이용하는 수소 : 연 4회 이상
6. 젖소 농장에서 집유된 원유 : 연 6회 이상

제4조(검사 방법) ① 결핵병 검사는 튜버큐린 피내주사 반응법 또는 감마인터페론법으로 실시한다.

② 브루셀라병 검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 젖소 농장의 원유 : 밀크링 반응법 또는 ELISA법
2. 소 개체별 혈청

가. 1차검사 : 로즈벵갈 응집반응법 또는 평판 응집반응법

나. 확인검사 : ELISA법·보체 결합반응법 또는 시험관 응집반응법 (미국식)

제5조(검사 신청) 결핵병 또는 브루셀라병 검사를 받아야 하는 소의 소유자 등은 제3조의 검사 시기 및 횟수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결핵병 또는 브루셀라병 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라 검사를 신청하여야 하는 소의 소유자 등은 해당 가축을 거래 또는 가축시장이나 도축장에 출하하고자 하는 날부터 최소 21일전까지 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검사 절차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결핵병·브루셀라병 검사를 신청 받은 즉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방역요원 또는 공수의 등을 동원하여 채혈을 실시하고, 검사시료를 별지 제1호 서식의 “결핵병·브루셀라병 검사의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이하 “연구원장”이라 한다)에게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브루셀라병 검사의 경우 생후 6개월 미만의 송아지는 그 어미 소에 대해 채혈을 실시하고, 생후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의 송아지는 그 어미 소 또는 해당 송아지에 대해 채혈을 실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의뢰받은 연구원장은 제4조에 따른 검사방법으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검사증명서 발급) ① 연구원장이 결핵병 또는 브루셀라병의 검사를 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결핵병·브루셀라병 검사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최종 기재일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검사를 실시한 연구원장은 지체 없이 검사결과를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입력하고, 소의 소유자 등으로부터 검사증명서의 발급 요구가 있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결핵병·브루셀라병 검사증명서”(이하 “검사증명서”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검사증명서 휴대 등) ① 가축의 소유자 등 또는 가축운송업자는 소를 거래하거나 가축시장 또는 도축장에 출하하는 때에는 제7조에 따른 검사증명서를 휴대하거나, 휴대전화 또는 인터넷을 활용하여 쇠고기이력시스템을 통해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검사를 실시하였는지 여

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매매가 이루어진 때에는 검사증명서를 구매자 또는 가축시장의 운영자·도축장의 영업자(이하 “구매자 등”이라 한다)에게 인계하거나 구매자 등에게 쇠고기이력시스템에서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검사를 실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증명서의 휴대 등 의무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브루셀라병 : 거래 또는 가축시장·도축장에 출하되는 소
2. 결핵병 : 거래 또는 가축시장에 출하되는 생후 12개월 이상의 소(젖소는 제외한다.)

제9조(검사증명서 확인 등) ① 구매자 등은 제8조에 따라 소를 거래하거나 도축하고자 하는 경우 가축의 소유자 등 또는 가축 운송업자가 검사 증명서 등을 휴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거나, 휴대전화 또는 인터넷을 활용하여 쇠고기 이력시스템에서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검사결과를 확인한 후 거래 또는 도축검사 신청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매자 등은 제1항에 따른 검사증명서 등을 휴대하지 아니하거나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검사를 받지 아니한 소를 발견하는 때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소를 사육한 농장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과태료) 이 명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증명서 또는 쇠고기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검사결과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소를 거래 또는 가축시장·도축장에 출하하는 소유자 등 또는 가축운송업자에 대하여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부루셀라병 검사 및 검사증명서 휴대명령”(서울특별시 고시 제2012-41호)은 폐지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검사 의뢰서

가 축 사육시설	농 장 명		소 재 지				
소 유 자 (관리자)	성 명		생 년 월 일	-			
	주 소	(전 화 :) (우편/방문)					
사육두수		검사의뢰두수		채혈두수			
구 매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 화 :)					
의 뢰 가 축 내 역	품 종	성 별	연령	개체번호	특 징	송아지	
						이표번호	연령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위와 같이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자(채혈요원) :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

[별지 제2호 서식]

(앞면)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검사 대장

1. 농장 현황

농장명(대표자)		전화번호	
농장소재지		품 종	
사육 현황	총 두(암소 : , 수소 :) - 비육 : 육성 : 송아지 : 기타:		

2. 검사 실적

구분	검 사 년월일	검사자	검사 두수	검 사 결 과				비 고
				양 성	의양성	음 성	계	
1차			두	두 (개체번호 기재)	두 (개체번호 기재)	두 (개체번호 기재)		
2차								
3차								

(뒷면)

구분	검사일자	검사자	검사 두수	검 사 결 과				비 고
				양 성	의양성	음 성	계	
4차			두 (개체번호 기재)	두 (개체번호 기재)	두 (개체번호 기재)	두 (개체번호 기재)		
5차								
6차								

3. 검사 특이사항 등 기타

검사기관명 :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

[별지 제3호 서식]

제 호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검사 증명서							
가 축 사육시설	농 장 명					소 재 지			
소 유 자 (관리자)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전 화 :)						
검사실시 내 역	검 사 연월일					검사두수			
	브루셀라병 검사방법					결핵병 검사방법			
검 사 가 축	축 종	품 종	성 별	연 령	귀표(개체)번호	특 징	검사결과		
					※ 송아지의 어미 소는 해당 송아지의 귀표 번호도 기재 (예) 어미 소-○○○○ (송아지-○○○○)		브루 셀라	결핵	
검사자	소 속				직		성 명		
비고 1. 위 검사결과는 가축의 소유자가 검사를 신청한 시료에 대한 것으로 결핵병·브루셀라 병의 특성상 감염 초기에는 반응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농장 입식후 재검사를 받을 것을 권장함 2. 유효기간 : 검사일부터 2월									
위와 같이 검사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장 인									

210mm×297mm(보존용지 1종, 80g/㎡)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384호
자전거도로의 노선지정에 관한 고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 7조의 규정 및 도로교통법 제15조, 같은법 시행 제9조에 의하여 자전거도로의 노선지정과 자전거전용차로 통행시간을 일반시민에게 사전에 널리 알리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6년 12월 1일
서울특별시장

1. 노선지정현황

구분	노선명	노선 번호	자전거도로 의 종류	도로 관리청	도로구간		총연장 (km)	자전거도로 너비(m)	통행시간	주요 경유지	지정 사유
					기점	종점					
당초	사직로 (경복궁주변)		자전거 전용도로	서울특별시	경복궁역	종로문화원	0.6	2.2		정부 중앙청사	
변경	사직로		자전거 전용차로	서울특별시	경복궁역 교차로	동십자각	0.6	2.2	0시~24시	정부 중앙청사	전용차로 통행시간 지정
당초	율곡로 (경복궁주변)		자전거 전용차로	서울특별시	종로문화원	안국동사거리	0.3	2.2		광화문	
변경	율곡로		자전거 전용차로	서울특별시	동십자각	안국동사거리	0.3	2.2	0시~24시	광화문	전용차로 통행시간 지정
당초	삼청동길 (경복궁주변)		자전거 전용차로	서울특별시	청와대	인사동교차로	0.7	2.2		경복궁	
변경	삼청로		자전거 전용차로	서울특별시	청와대 춘추관	경복궁교차로 (동십자각)	0.7	2.2	0시~24시	경복궁	도로명 변경 전용차로 통행시간 지정
당초	청계천로 (북측)		자전거 전용차로	서울특별시	고산자교	청계8가 (황학교)	1.4	1.5		영등교	
	청계천로 (북측)		자전거 전용차로	서울특별시	청계7가 (다산교)	청계8가 (황학교)	0.7	1.2		영등교	
변경	청계천로 (북측)		자전거 전용차로	서울특별시	청계7가 (다산교)	고산자교	2.1	1.2	0시~24시	영등교	노선연장 통합 전용차로 통행시간 지정
당초	청계천로 (남측)		자전거 전용차로	서울특별시	청계7가	고산자교	2.1	1.5		청계문화 회관	
변경	청계천로 (남측)		자전거 전용차로	서울특별시	청계7가	고산자교남측	2.1	1.5	0시~24시	청계문화 회관	전용차로 통행시간 지정
당초	천호대로		자전거 전용차로	서울특별시	군자교	천호대교북단	3.6	2.2		군지역	
	천호대로		자전거 전용차로	서울특별시	군자교	신답철교	3	2		장안평역	
변경	천호대로		자전거 전용차로	서울특별시	신답철교	천호대교북단	6.8	2	0시~24시	군지역, 장안평역	노선연장 통합 전용차로 통행시간 지정

구분	노선명	노선 번호	자전거도로 의 종류	도로 관리청	도로구간		총연장 (km)	자전거도로 너비(m)	통행시간	주요 경유지	지정 사유
					기점	종점					
당초	월계로 (강북구)		자전거 전용차로	서울특별시	미아사거리	월계2교사거리	2.4	1.1		서울꿈의 숲	
	월계로 (성북구)		자전거 전용차로	서울특별시	미아사거리	월계2교사거리	2.4	1.1		북서울 꿈의숲	
변경	월계로(양측)		자전거 전용차로	서울특별시	미아사거리	월계2교사거리	2.4	1.1	0시~24시	북서울 꿈의숲	전용차로 통행시간 지정
당초	오현길		자전거 전용차로	서울특별시	강북장애인 복지관	삼양입구사거 리(송중초등 학교앞)	2.2	1.1		북서울 꿈의숲	
변경	오현로		자전거 전용차로	서울특별시	강북장애인 복지관	송중초등학교	3.7	1.1	0시~24시	북서울꿈 의숲	도로명 변경 전용차로 통행시간 지정
당초	연서로		자전거 전용차로	서울특별시	응암역	연신내역앞	2.3	1.7		구산역	
변경	연서로3		자전거 전용차로	서울특별시	응암역	연신내역앞	2.3	1.7	0시~24시	구산역	노선명 변경 전용차로 통행시간 지정
당초	여의동로		자전거 전용차로	서울특별시	여의나루역	원효대교남단	0.6	1.1		여의도중 학교	
	여의동로		자전거 전용차로	서울특별시	여의성모 병원	서울교사거리	1.7	1.1		63빌딩	
변경	여의동로		자전거 전용차로	서울특별시	여의나루역	서울교사거리	2.3	1.1	0시~24시	여의도중, 63빌딩	노선연장 통합 전용차로 통행시간 지정
당초	여의서로		자전거 전용차로	서울특별시	마포대교 남단	한국전통의숲, 세우빌딩	0.2	2.2		물빛광장	
변경	여의서로		자전거 전용차로	서울특별시	마포대교 남단	한국전통의숲, 세우빌딩	0.2	2.2	0시~24시	물빛광장	전용차로 통행시간 지정
당초	여의서로		자전거 전용차로	서울특별시	국회헌정 기념관앞 정문	국회의사당 동문앞	0.2	2.2		국회헌정 기념관	
	여의서로		자전거 전용차로	서울특별시	국회의사당 남문앞	서울교사거리	1	2.2		여의2교북 단	
변경	여의서로		자전거 전용차로	서울특별시	국회헌정 기념관앞 정문	서울교사거리	1.2	2.2	0시~24시	여의2교북 단	노선연장 통합 전용차로 통행시간 지정
당초	국회대로		자전거 전용차로	서울특별시	여의2교북단	서강대교남단	0.9	2.1		국회의사 당	
변경	국회대로		자전거 전용차로	서울특별시	여의2교북단	서강대교남단	0.9	2.1	0시~24시	국회의사 당	전용차로 통행시간 지정
당초	의사당로		자전거 전용차로	서울특별시	국회앞 삼거리	여의도오거리	1.7	1.7		여의도역	
변경	의사당대로		자전거 전용차로	서울특별시	국회앞 삼거리	여의도오거리	1.7	1.7	0시~24시	여의도역	노선명 변경 전용차로 통행시간 지정

구분	노선명	노선 번호	자전거도로 의 종류	도로 관리청	도로구간		총연장 (km)	자전거도로 너비(m)	통행시간	주요 경유지	지정 사유
					기점	종점					
당초	여의대로		자전거 전용차로	서울특별시	서울교	마포대교남단	1.7	1.7		여의도 공원	
변경	여의대로		자전거 전용차로	서울특별시	서울교	마포대교남단	1.7	1.7	0시~24시	여의도 공원	전용차로 통행시간 지정
당초	여의공원길		자전거 전용차로	서울특별시	국민일보	여의도지구대	0.3	1.1		여의도 공원	
변경	여의공원로		자전거 전용차로	서울특별시	국민일보	여의도지구대	0.3	1.1	0시~24시	여의도 공원	노선명 변경 전용차로 통행시간 지정
당초	여의나루길		자전거 전용차로	서울특별시	윤중초교앞 교차로 윤중중학교앞	여의나루역 삼거리	1.3	1.1		여의도역	
변경	여의나루길		자전거 전용차로	영등포구청	윤중초교앞 교차로 (윤중중학교앞)	여의나루역 삼거리	1.3	1.1	0시~24시	여의도역	전용차로 통행시간 지정
당초	배움길		자전거 전용차로	서울특별시	대한지적공 사앞 교차로	여의도선착장 삼거리	1.2	1.1		대한지적 공사	
변경	국제금융로7 길,8길		자전거 전용차로	서울특별시	대한지적공 사앞 교차로	여의도선착장 삼거리 (여의도고교)	0.9	1.1	0시~24시	대한지적 공사	노선명 변경 전용차로 통행시간 지정
신규	국제금융로7 길,8길		자전거 전용차로	영등포구청	대한지적공 사앞 교차로	윤중중학교	0.2	1.1	0시~24시	윤중 중학교	자전거도로 노선추가
당초	복음길, 여의길		자전거 전용차로	서울특별시	순복음교회 앞교차로	여의성모병원 앞 교차로	1.6	1.1		여의도 공원	
변경	국회대로76길, 국제금융로		자전거 전용차로	영등포구청	순복음교회 앞교차로	여의성모병원 앞 교차로	1.6	1.1	0시~24시	여의도 공원	노선명 변경 전용차로 통행시간 지정
당초	광장 아파트길		자전거 전용차로	서울특별시	전경련회관 앞	광장아파트 삼거리	0.3	1.1		광장 아파트	
변경	여의대로2길		자전거 전용차로	영등포구청	전경련회관 앞	광장아파트 삼거리	0.3	1.1	0시~24시	광장 아파트	노선명 변경 전용차로 통행시간 지정
신규	월드컵북로		자전거 전용차로	마포구청	상암초교	상암삼거리	0.7	1.5	0시~24시	상암 중학교	자전거도로 노선추가 전용차로 통행시간 지정
당초	구룡로		자전거 전용차로	서울특별시	구룡사거리	수색교	1.3	1.5		월드컵파 크7단지	
변경	가양대로		자전거 전용차로	서울특별시	구룡사거리	수색교	1.3	1.5	0시~24시	월드컵파 크7단지	노선명 변경 전용차로 통행시간 지정
당초	증산로		자전거 전용차로	서울특별시	중동삼거리	강변북로	1.8	1.5		월드컵 터널	
변경	증산로		자전거 전용차로	서울특별시	중동삼거리	월드컵경기장 사거리	1.1	1.5	0시~24시	월드컵 터널	전용차로 통행시간 지정

구분	노선명	노선 번호	자전거도로 의 종류	도로 관리청	도로구간		총연장 (km)	자전거도로 너비(m)	통행시간	주요 경유지	지정 사유
					기점	종점					
당초	DMC길		자전거 전용차로	서울특별시	디지털미디어 시티입구	성암로	0.9	1.5		월드컵파 크 4단지	
변경	상암산로		자전거 전용차로	서울특별시	디지털미디어 시티입구	성암로	0.9	1.5	0시~24시	월드컵파 크 4단지	노선명 변경 전용차로 통행시간 지정
당초	상암초교길		자전거 전용차로	서울특별시	월드컵파크 3단지	성암로	0.9	1.5		상암초등 학교	
변경	매봉산로		자전거 전용차로	마포구청	월드컵파크 3단지	성암로	0.9	1.5	0시~24시	상암초등 학교	노선명,도로관 리청 변경 전용차로 통행시간 지정
당초	난지중앙길		자전거 전용차로	서울특별시	강변북로	난지천공원	1	1.5		월드컵 공원	
변경	하늘공원로		자전거 전용차로	마포구청	강변북로	난지천공원	1	1.5	0시~24시	월드컵 공원	노선명,도로관 리청 변경 전용차로 통행시간 지정
신규	광성로		자전거 전용차로	마포구청	서강대 (경의선)	창전로	0.6	1.5	0시~24시	마포역산e 슬렌스힐 아파트	자전거도로 노선추가 전용차로 통행시간 지정
당초	태봉로		자전거 전용차로	서초구청	네이처힐 3단지	네이처힐 7단지	0.7	1.2		서초우면 우체국	
변경	태봉로		자전거 전용차로	서초구청	네이처힐 3단지	네이처힐 7단지	0.7	1.2	0시~24시	서초우면 우체국	전용차로 통행시간 지정
당초	동남로		자전거 전용차로	강동구청	이마트 사거리	광문고사거리	0.6	1.2		광문고등 학교	
변경	동남로		자전거 전용차로	강동구청	이마트 사거리	광문고사거리	0.6	1.2	0시~24시	광문고등 학교	전용차로 통행시간 지정
당초	감일남로		자전거 전용차로	강동구청	오륜사거리	거마로 종착점 (마천터널 인근)	2	1.5	0시~24시	위례지하 보차도	
변경	감일남로		자전거 전용차로	강동구청	오륜사거리	거마로 종착점 (마천터널 인근)	2	1.5	0시~24시	위례지하 보차도	전용차로 통행시간 지정
당초	노원길		자전거 전용차로	서울특별시	노원고등 학교	상계초교 사거리	1.4	1.2		상계동 7,9,10단 지 사거리	
변경	노원길		자전거 전용차로	서울특별시	노원고등 학교	상계초교 사거리	1.4	1.2	0시~24시	상계동 7,9,10단 지 사거리	전용차로 통행시간 지정
당초	한글비석길		자전거 전용차로	서울특별시	노원성당	상계역	2	1.2		마들역	
변경	한글비석길		자전거 전용차로	서울특별시	노원성당	상계역교차로	2	1.2	0시~24시	마들역	전용차로 통행시간 지정
당초	느티울1길		자전거 전용차로	서울특별시	주공3단지	상계중학교	1.1	1.2		상수초등 학교	

구분	노선명	노선 번호	자전거도로 의 종류	도로 관리청	도로구간		총연장 (km)	자전거도로 너비(m)	통행시간	주요 경유지	지정 사유
					기점	종점					
변경	노티울1길 (동일로215길)		자전거 전용차로	서울특별시	주공2단지	상계한양 아파트	1.1	1.2	0시~24시	상수초등 학교	노선명 변경 전용차로 통행시간 지정
당초	수락산길		자전거 전용차로	서울특별시	상계근린 공원	원광사	2.6	1.2		상원초교 교차로	
변경	수락산로		자전거 전용차로	서울특별시	상계대창 센시티 아파트	상원초교 교차로	0.9	1.2	0시~24시	상원초교 교차로	노선명 변경 전용차로 통행시간 지정
당초	늘푸른길		자전거 전용차로	서울특별시	상계8동주민 센터	삼락교회앞 삼거리	0.9	1.2		상경중학 교	
변경	동일로227길		자전거 전용차로	노원구청	상계8동주민 센터	상원초교 교차로	0.9	1.2	0시~24시	상경중학 교	노선명 변경 전용차로 통행시간 지정
당초	당현길		자전거 전용차로	서울특별시	상계주공 223동앞	당현2교 교차로	1.1	1.2		상계백병 원	
변경	동일로213길		자전거 전용차로	노원구청	상계주공 1단지	당현2교 교차로	1.1	1.2	0시~24시	상계백병 원	노선명 변경 전용차로 통행시간 지정
당초	보건소길		자전거 전용차로	서울특별시	구로동 530-49	구로동 110-4	0.4	2.2		구로구보 건소	
변경	구로중앙 28길		자전거 전용차로	구로구청	혜성빌딩앞 교차로	현대파트빌딩 교차로	0.4	2.2	0시~24시	구로5동 주민센터	노선명 변경 전용차로 통행시간 지정
당초	잠원로		자전거 전용차로	서울특별시	반포킴스 클럽	한남IC	1.7	2.3		잠원한신 아파트	
변경	잠원로		자전거 전용차로	서울특별시	반포킴스 클럽	당래길	1.7	2.3	0시~24시	잠원한신 아파트	전용차로 통행시간 지정

자전거도로 노선지정 현황도



①사직로(경복궁 주변)



②율곡로(경복궁 주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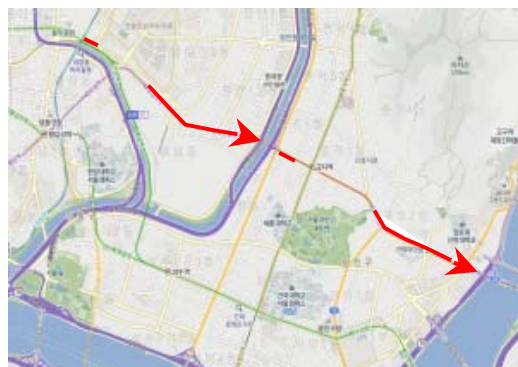
③삼청로(경복궁 주변)



④청계천로(북측)



⑤청계천로(남측)



⑥천호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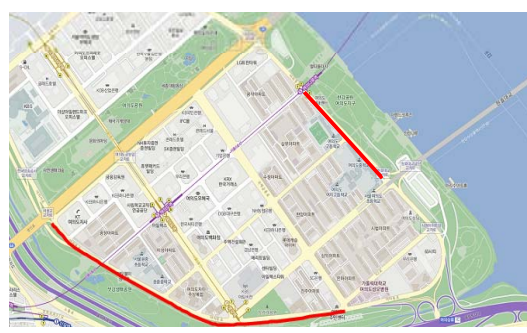
⑦월계로(양측)



⑧오현로



⑨연서로3



⑩여의도로



⑪여의서로



⑫여의서로



⑬국회대로



⑭의사당대로



⑮여의대로



⑯여의도공원로



⑰여의나루길



⑱국제금융로7길, 8길



⑲국제금융로7길, 8길



⑳국회대로76길, 국제금융로



㉑여의대로2길



㉒월드컴북로



㉓가양대로



㉔증산로



㉕상암산로



㉖매봉산로



㉗하늘공원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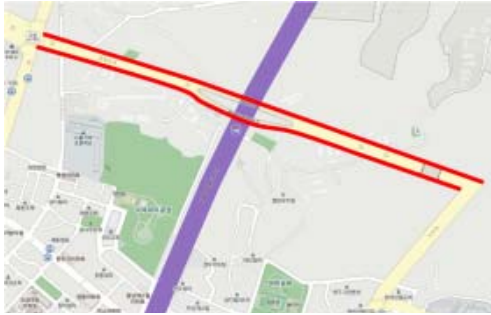
㉘광성로



㉙태봉로



㉚동남로



㉓ 가밀남로



㉔ 노원길



㉕ 한글비석길



㉖ 느티울1길



㉗ 수락산길



㉘ 늘푸른길



㉙ 당현길



㉚ 구로중앙로28길



⑨잠원로(한남ic-반포킴스클럽)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385호

하천공사시행계획(변경) 고시

「하천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하천공사의 시행에 관한 계획(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1일

서울특별시

1. 하천공사의 명칭 : 여의천 하천정비(단면확장) 공사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 가. 하천공사의 목적
 - 집중호우 시 침수 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본마울 지역의 수해피해 예방과 치수안전성을 확보하고 자연과 조화된 친환경적인 자연형 하천으로 정비하여 시민들의 휴식공간 제공한다.
 - 나. 하천공사의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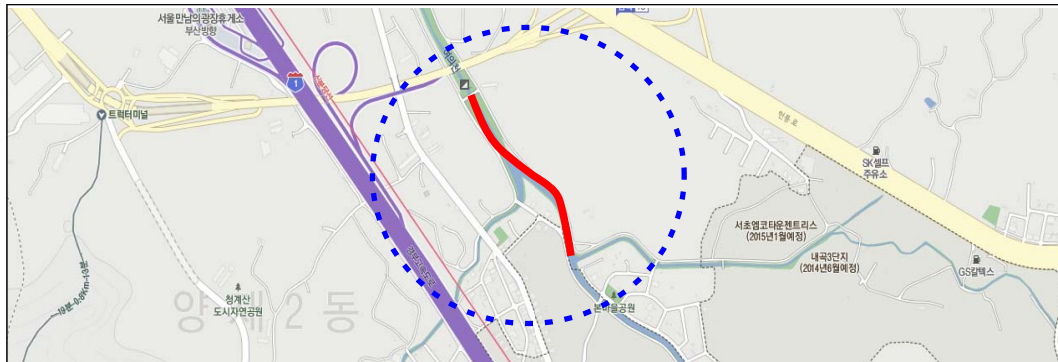
구분	하천명	사업개요								비고
		공사명	공사위치		사업량(m)			착수 및 준공예정		
			시점	종점	축제	호안	기타	착수	준공	
기정	여의천	여 의 천 하천정비 (단면확장) 공 사	새원교	신원천 합류부	L=470	L=1,071	구조물공	‘14.3.20.	‘16.12.31.	
변경	여의천	여 의 천 하천정비 (단면확장) 공 사	새원교	신원천 합류부	L=470	L=1,071	구조물공	‘14.3.20.	‘17.6.30.	

3. 하천공사시행지역의 위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원동, 염곡동 지내(별첨 위치도 참조)
4.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가. 하천공사 시행자 : 서초구청
 나. 시행자의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
 - 당초 : 착수일 2014. 3. 20. ~ 준공예정일 2016. 12. 31.
 - 변경 : 착수일 2014. 3. 20. ~ 준공예정일 2017. 6. 30.
6.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과 소유자 및 소유자 이외의 권리자의 명세(변경 없음) : 게재 생략
7. 관계도서(실시설계도서, 예정공정표, 지형도면 등) 열람 및 문의처
 - 서초구청 물관리과 (☎ 02-2155-7152)
8.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변경 없음)

구 분	전 체	연차별 투자계획(백만원)					비 고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사업비	6,800	2,500	-	-	2,300	2,000	

9. 공사예정공정 : 2014. 3. 20. ~ 2017. 6. 30.
 10. 하천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 공사시행자 공사구간 하천시설 관리(공사기간 내)
 11. 폐천부지등 발생예상면적 : 없음



위 치 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387호

도시계획시설(도로 등) 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328호(2009. 9. 3.)로 도시계획시설(도로 등)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361호(2015.11.19.)로 도시계획시설(도로 등)사업 실시계획 고시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89호(2016. 9.13)로 도시계획시설(도로 등)사업 실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경미한 사항)된 『월드컵대교 건설공사』에 대하여,

2. 토지조서 변경사항이 발생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변경 작성하고, 같은 법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1일

서울특별시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마포구 상암동 ~ 영등포구 양평동(변경없음)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등)사업

2) 명 칭 : 월드컵대교 건설공사

다. 사업의 규모(변경없음)

1) 사업면적 : 131,966㎡

2) 규 모 : 폭 31.4m(왕복 6차로), 연장 1.98km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1) 성 명 : 서울특별시장

2)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고시일로부터 2020년8월31일까지

(변경없음)

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별첨 토지조서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첨 토지조서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로계획과(☎2133-8084),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3708-254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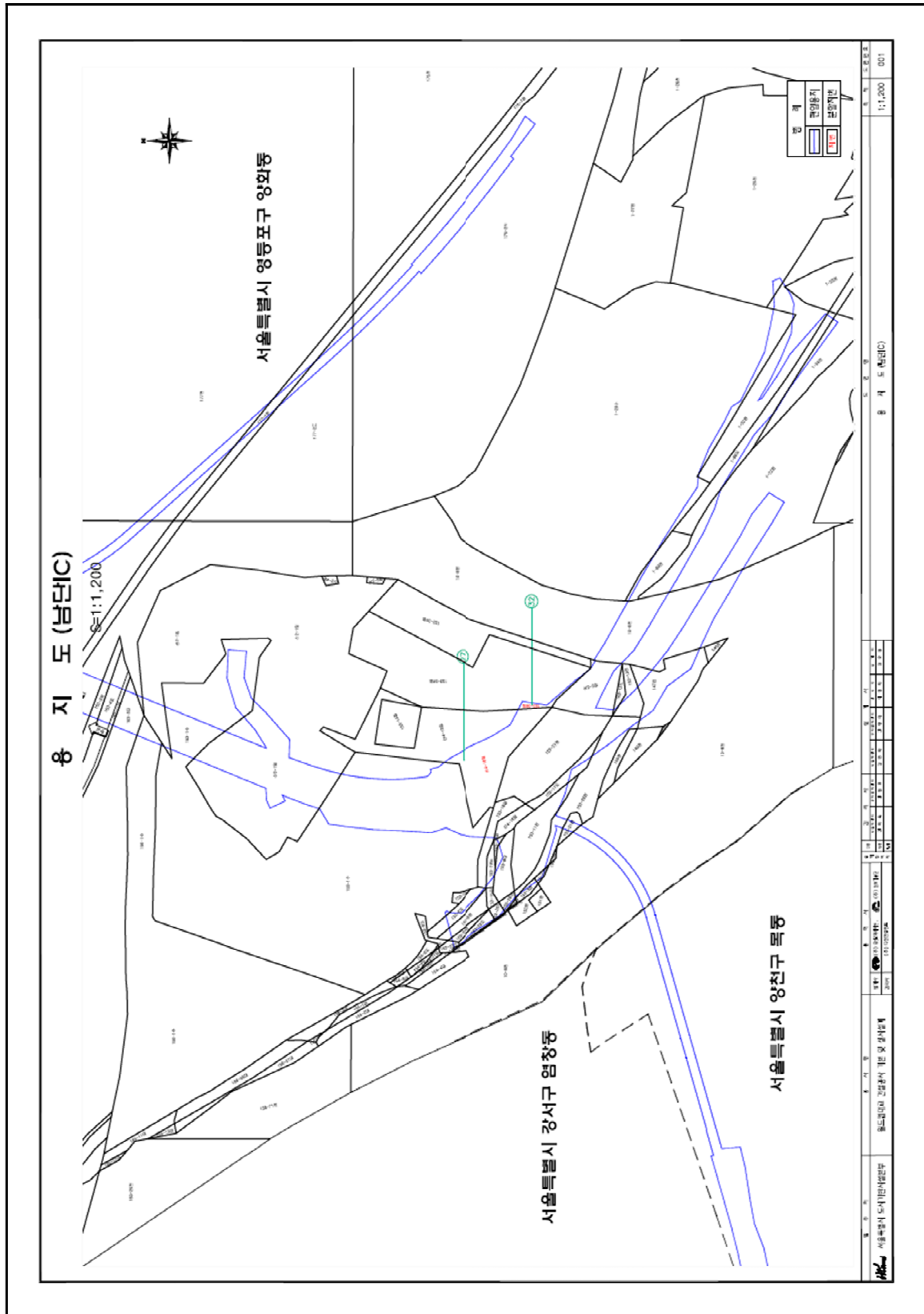
토 지 조 서
☐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천구 : 변경없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금회변경구간)

연번	소재지	지목	토 지 내 역		소유자
			지 번	면적(㎡)	
삭제	양화동	임야	153-34	7,062	진주강씨 양천공파 종중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하늘마을1로 7, 401동 1404호 (중산동, 하늘마을)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268-10
32	양화동	임야	153-36	129	
삭제	양화동	임야	산4-13	2,829	이미숙외
27	양화동	임야	산4-18	2,328	

※ 상세내용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김덕기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389-1 한신빌라 2층		김옥희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73-1 양정빌라 -11	근저당	
김덕기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6길 142,2층동 (양재동,한신빌라)		장의성	서울시 동작구 서달로 6길 41(흑석동)	근저당	
김상기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102길 20(갈월동)					
김숙희	서울시 양천구 목동서로 38,110동304호 (목동,신시가지아파트)					
김승기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102길 18,105호 (갈월동,동양아파트)					
김옥희	서울시 서초구 바우피로 25길 25,11호 (양재동,양정빌라)					
김은숙	서울시 서초구 바우피로 31길 13,에이동 202호 (양재동,현대빌라)					
김정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산운로 135,714동 302호 (운중동,산운마을)					
이미숙	서울시 동작구 만양로 8길 50, 102동 1702호 (노량진동, 우성아파트)					
임경순	인천시 서구 가현로 41, 202동 1002호 (마전동, 대원레스피아1차아파트)					



위 치 도(변경없음)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388호

청담·도곡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 고시

건설부고시 제131호(1976. 8. 21)에 의하여 아파트지구로 지정되고 강남구고시 제2012-49호(2012. 06. 15)에 의하여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 변경결정된 청담·도곡아파트지구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와 「주택법(법률 제6916호)」 부칙 제9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6852호)」 부칙 제5조 제3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청담·도곡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을 변경 지정(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작성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1일
서울특별시

1. 명칭, 위치 및 면적

가. 명칭 : 서울특별시 청담·도곡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

나. 위치 : 강남구 청담동, 삼성동, 역삼동, 도곡동, 대치동 일대

다. 면적

구분	정비구역 명칭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청담도곡 아파트지구	강남구 청담동, 삼성동, 역삼동, 도곡동, 대치동 일대	1,111,765.4	감) 46,971.4	1,064,794.0	

2. 주요 변경내용

가. 토지이용계획 변경

나. 도시계획시설(도로,공원) 변경

3. 청담·도곡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토지이용계획

1) 지구 면적표

(단위 : ㎡)

구 분	계	청담주구	삼성주구	역삼주구	도곡주구
변경전	1,111,765.4	104,200.8	290,643.3	472,298.1	244,623.2
변경후	1,111,765.4	104,200.8	290,643.3	425,326.7	244,623.2
비 고	“변경없음”	“변경없음”	“변경없음”	감) 46,971.4	“변경없음”

2) 토지이용계획

가) 전체 토지이용계획표 - 금회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증감(㎡))
		면적(㎡)	비율(%)	면적(㎡)	비율(%)	
계		1,111,765.4	100.0	1,064,794.0	100.0	감) 46,971.4
주거용지	소 계	836,353.2	75.2	806,341.8	75.9	감) 30,011.4
	주택용지	836,353.2	75.2	806,341.8	75.9	감) 30,011.4
중심시설 용 지	소 계	41,706.8	3.8	38,053.8	3.6	감) 3,653.0
	주구중심	33,071.8	3.0	29,418.8	2.8	감) 3,653.0
	분구중심	8,635.0	0.8	8,635.0	0.8	
도시계획 시설용지	소 계	233,705.4	21.0	220,398.4	20.5	감) 13,307.0
	도로용지	108,806.6	9.8	95,792.9	8.9	감) 13,013.7
	공원용지	47,549.0	4.2	47,255.7	4.4	감) 293.3
	학교용지	59,065.4	5.3	59,065.4	5.5	
	공공청사용지	17,514.4	1.6	17,514.4	1.6	
	공공공지	770.0	0.1	770.0	0.1	

■ 결정(변경)사유서

구역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청담·도곡 아파트지 구	• 주택용지 면적변경 - 감)30,011.4㎡ - 기정 : 836,363.2㎡(75.2%) - 변경 : 806,341.8㎡(75.9%) • 주구중심 면적변경 - 감)3,653.0㎡ - 기정 : 33,071.8㎡(3.0%) - 변경 : 29,418.8㎡(2.8%) • 도로용지 면적변경 - 감)13,013.7㎡ - 기정 : 108,806.6㎡(9.8%) - 변경 : 95,792.9㎡(8.9%) • 공원용지 면적변경 - 감)293.3㎡ - 기정 : 47,549.0㎡(4.2%) - 변경 : 47,255.7㎡(4.4%)	• 청담·도곡 아파트지구 역삼주구 내 역삼동 756번지 일원(중심시설용지 및 개발잔여지)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아파트지구에서 일부 해제하고자 함.	

나) 저밀도 지역(준치지역 포함) - 금회 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증감(㎡))
		면적(㎡)	비율(%)	면적(㎡)	비율(%)	
계		618,787.5	100.0	571,816.1	100.0	감) 46,971.4
주거용지	소 계	511,284.3	82.6	481,272.9	84.1	감) 30,011.4
	주택용지	511,284.3	82.6	481,272.9	84.1	감) 30,011.4
중심시설 용지	소 계	23,786.7	3.9	20,133.7	3.6	감) 3,653.0
	주구중심	23,786.7	3.9	20,133.7	3.6	감) 3,653.0
	분구중심	-	-	-	-	-
도시계획 시설용지	소 계	83,716.5	13.5	70,409.5	12.3	감) 13,307.0
	도로용지	59,409.4	9.6	46,395.7	8.2	감) 13,013.7
	공원용지	23,557.1	3.8	23,263.8	4.1	감) 293.3
	학교용지	-	-	-	-	-
	공공청사용지	750.0	0.1	750.0	-	-
	공공공지	-	-	-	-	-

다) 고밀도 지역 - 금회 변경 없음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증감(㎡))
		면적(㎡)	비율(%)	면적(㎡)	비율(%)	
계		492,977.9	100.0	492,977.9	100.0	-
주거용지	소 계	325,068.9	65.9	325,068.9	65.9	-
	주택용지	325,068.9	65.9	325,068.9	65.9	-
중심시설 용지	소 계	17,920.1	3.7	17,920.1	3.7	-
	주구중심	9,285.1	1.9	9,285.1	1.9	-
	분구중심	8,635.0	1.8	8,635.0	1.8	-
도시계획 시설용지	소 계	149,988.9	30.4	149,988.9	30.4	-
	도로용지	49,397.2	10.0	49,397.2	10.0	-
	공원용지	23,991.9	4.9	23,991.9	4.9	-
	학교용지	59,065.4	12.0	59,065.4	12.0	-
	공공청사용지	16,764.4	3.4	16,764.4	3.4	-
	공공공지	770.0	0.1	770.0	0.1	-

라) 청담주구

구분		면적(㎡)	비율(%)	비고
계		104,200.8	100.0	—
주거용지	소계	78,928.8	75.7	—
	주택용지	78,928.8	75.7	—
중심시설 용지	소계	3,686.0	3.5	—
	주구중심	3,686.0	3.5	—
	분구중심	—	—	—
도시계획 시설용지	소계	21,586.0	20.7	—
	도로용지	3,414.0	3.3	—
	공원용지	17,402.0	16.7	—
	학교용지	—	—	—
	공공청사	—	—	—
	공공공지	770.0	0.7	—

마) 삼성주구

구분		면적(㎡)	비율(%)	비고
계		290,643.3	100.0	—
주거용지	소계	223,237.0	76.8	—
	주택용지	223,237.0	76.8	—
중심시설 용지	소계	12,763.8	4.4	—
	주구중심	8,379.1	2.9	—
	분구중심	4,384.7	1.5	—
도시계획 시설용지	소계	54,642.5	18.8	—
	도로용지	29,943.4	10.3	—
	공원용지	8,234.7	2.8	—
	학교용지	—	—	—
	공공청사	16,464.4	5.7	—
	공공공지	—	—	—

바) 역삼주구 - 금회변경

구분		기정		변경		비고 (증감(㎡))
		면적(㎡)	비율(%)	면적(㎡)	비율(%)	
계		472,298.1	100.0	425,326.7	100.0	감) 46,971.4
주거용지	소계	329,405.3	69.7	299,393.9	70.4	감) 30,011.4
	주택용지	329,405.3	69.7	299,393.9	70.4	감) 30,011.4
중심시설 용지	소계	18,836.7	4.0	15,183.7	3.6	감) 3,653.0
	주구중심	16,052.4	3.4	12,399.4	2.9	감) 3,653.0
	분구중심	2,784.3	0.6	2,784.3	0.7	-
도시계획 시설용지	소계	124,056.1	26.3	110,749.1	26.0	감) 13,307.0
	도로용지	51,509.9	10.9	38,496.2	9.1	감) 13,013.7
	공원용지	13,180.8	2.8	12,887.5	3.0	감) 293.3
	학교용지	59,065.4	12.5	59,065.4	13.9	-
	공공청사	300.0	0.1	300.0	0.1	-
	공공공지	-	-	-	-	-

사) 도곡주구

구분		면적(㎡)	비율(%)	비고
계		244,623.2	100.0	-
주거용지	소계	204,782.1	83.7	-
	주택용지	204,782.1	83.7	-
중심시설 용지	소계	6,420.3	2.6	-
	주구중심	4,954.3	2.0	-
	분구중심	1,466.0	0.6	-
도시계획 시설용지	소계	33,420.8	13.7	-
	도로용지	23,939.3	9.8	-
	공원용지	8,731.5	3.6	-
	학교용지	-	-	-
	공공청사	750.0	0.3	-
	공공공지	-	-	-

3) 용도지역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111,765.4	감) 46,971.4	1,064,794.0	100.0	
제1종일반주거지역	26,660.3	-	26,660.30	2.5	
제2종(7층)일반주거지역	91,308.1	감) 539.2	90,768.9	8.5	
제2종(12층)일반주거지역	-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993,797.0	감) 46,432.2	947,364.8	89.0	

※ 아파트지구에서 제척되는 용도지역임

나. 도시계획시설 - 금회변경

1) 도로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 장 (m)	위 치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 점	종 점				
기정	중로	2	1	15m	집산 도로	281 (75)	역삼동 805-31	역삼동 755-8	일반 도로	-	-	
기정	중로	3	1	12m	집산 도로	277	대로 1-22	대로 3-71	일반 도로	-	-	
기정	소로	1	1	10m	국지 도로	130	역삼동 805-44	역삼동 805-43	일반 도로	-	-	
기정	소로	1	2	10m	국지 도로	130	역삼동 805-36	역삼동 805-36	일반 도로	-	-	
기정	소로	3	1	6m	국지 도로	135 (76)	역삼동 767-20	역삼동 805-43	일반 도로	-	-	

※ 아파트지구에서 제척되는 도로임. ()는 일부 제척되는 도로 연장임.

2) 공원

■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 면 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1	공 원	소공원	역삼동 765-30번지	262.3	-	262.3		
기정	2	공 원	소공원	역삼동 765-33번지	31.0	-	31.0		

※ 아파트지구에서 제척되는 공원임.

다. 건축물 규제사항 - 금회변경없음

1) 용도규제- 금회변경없음

구 분	건 축 범 위
주택용지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 운동시설(건축물을 수반하는 운동시설은 제외한다), 유치원, 탁아소, 경로당, 공동주택관리용시설, 공급처리시설, 사회복지관, 생활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문화의 집에 한함)
지구중심	-
주구중심	제1,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제외), 복지시설,(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에 한함), 의료시설(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에 한함), 교육연구시설(학교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종교집회장, 공연장, 집회장, 전시장에 한함), 판매시설(2천제곱미터미만), 운동시설(옥외골프연습장 제외), 업무시설(금융업소 및 사무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에 한함), 생활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문화의집에 한함)
분구중심	수퍼마켓과 일용품등의 소매점,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사회복지관, 생활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문화의집에 한함)
학교용지	학교
공원용지	공원에 부수되는 시설
도로용지	도로에 부수되는 시설
공공청사용지	공공청사

※ 건축물의 용도는 관련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서울시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는 용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음

※ 역삼주구내 성보길 남측은 옹벽으로 대지조건상의 이유로 기존상가의 연면적규모에 한하여 대지복측(현재옹벽) 주택용지 지하에 상가시설을 재건축할 수 있음

2) 건폐율 규제 - 금회변경없음

구 분	건 폐 율	비 고
제3종일반주거지역	50% 이하	

※ 건폐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는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범위를 적용

3) 세대밀도- 금회변경없음

구 분	세대밀도(세대수/ha)	비 고
연 립 주 택	60 ~ 150	주택용지 + 중심시설용지
저 층 아 파 트	70 ~ 250	
고 층 아 파 트	150 ~ 400	

4) 건축물의 높이 - 금회변경없음

구 분	건축물의 높이	비 고
연 립 주 택	4층 이하	
아 파 트	5층 이상	
기타용도건축물	5층 이하	

※ 사업시행단위별 건축물의 높이는 사업시행인가 전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름

5) 공동주택과의 이격거리

- 공동주택간 인동거리는 관계법령에 따름

6) 건축물 배치

- 한강 인접부 탑상형 배치로 시각적 개방감 확보
- 간선도로변 탑상형 또는 직각배치 유도로 시각회랑 확보

7) 주택용지안의 녹지확보

- 주택용지면적의 30% 이상의 녹지면적 확보

8) 주택공급별 규모비율

- 주택공급별 규모비율은 관계법령에 따름

9) 경관계획- 금회변경없음

- 기본방향
 - 저밀도지구 및 간선가로변 고층건물과 조화를 고려한 스카이라인 구상
 - 한강변 탑상형 배치를 통한 한강과 간선가로변의 시각적 개방감 확보
 - 주변지역과 조화될 수 있도록 단지내 스카이라인의 자연스럽고 단계적인 변화 유도

구 분	높이 / 형태	비 고
통경축 선정	탑상형 배치 권장	
한강 인접부	고층 탑상형 배치 권장	청담주구

10) 용적률 규제계획 - 금회변경없음

■ 계획(기준)용적률(주택용지)

구 분	계 획 용 적 률	비 고
제2종(12층)→제3종일반주거지역	200% 이하	청담주구
제3종일반주거지역	230% 이하	

■ 용적률인센티브(상한용적률) : 사업시행단위별 공공시설부담률에 따라 용적률완화 차등적용

※ 상한용적률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10항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

상한용적률(%) = $(1+1.3a) \times \text{용도지역에 따른 용적률}(\%)$ 이내

(a: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대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 용적률 인센티브 대상 공공용지 : 도로, 공원, 공공공지, 공공청사 및 기타공공시설의 설치를 목적으로 민간이 기부채납하는 용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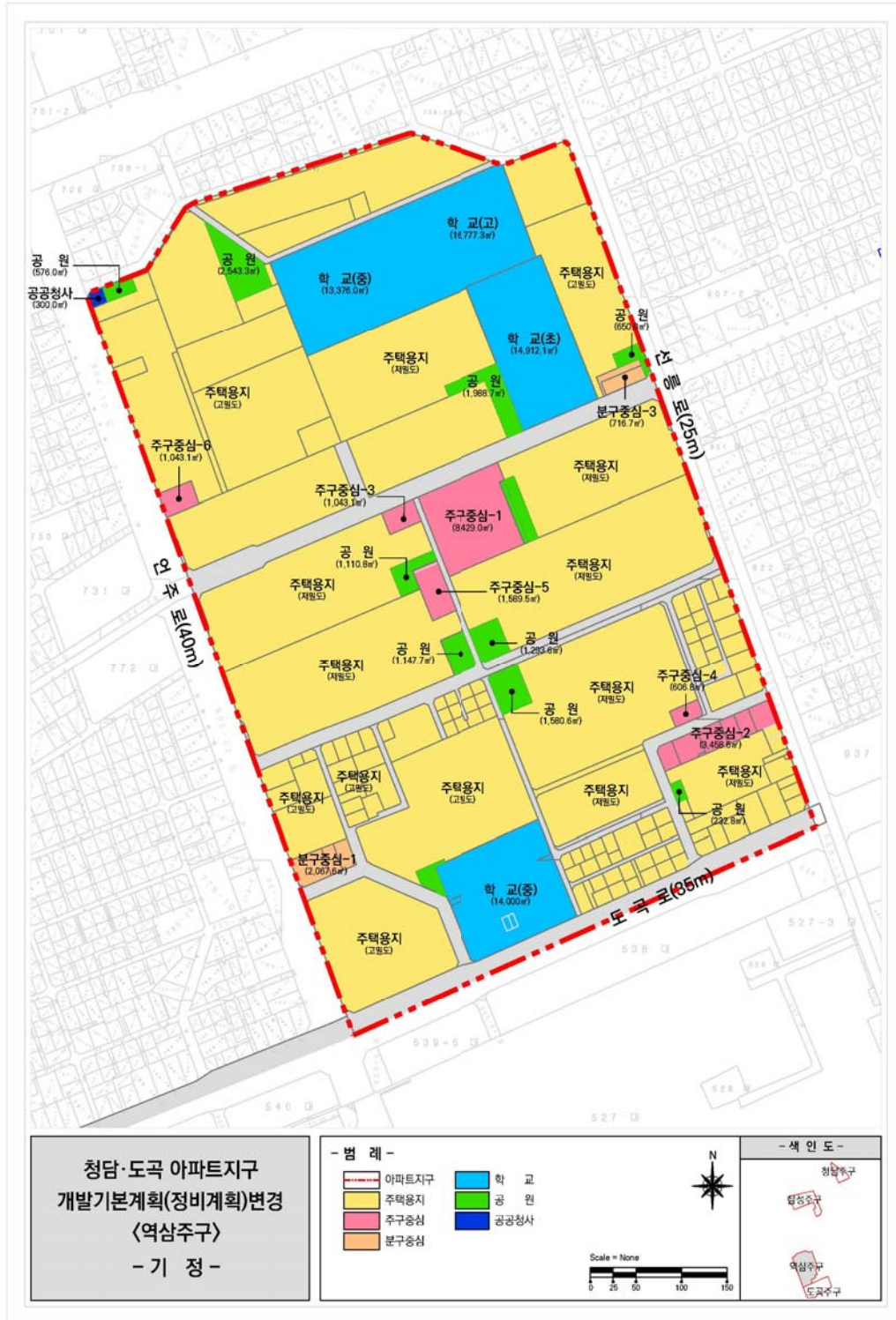
11) 기존건축물의 처리에 관한 사항

- 개발잔여지 및 기존건축물은 관련법규정 및 개발기본계획지침에 따라 처리
- 개발기본계획에서 주택용지로 계획된 경우 부지정형화 및 적정규모개발을 위해 다음의 권장사항에 부합되도록 처리
 - 주택재건축대상 아파트단지의 재건축시 연접된 개발잔여지가 있을 경우, 가급적 공동개발을 원칙으로 함
 - 중소규모 개발잔여지 단독개발시 연접필지와 공동건축을 통해 연립주택, 아파트규모의 개발이 가능하도록 유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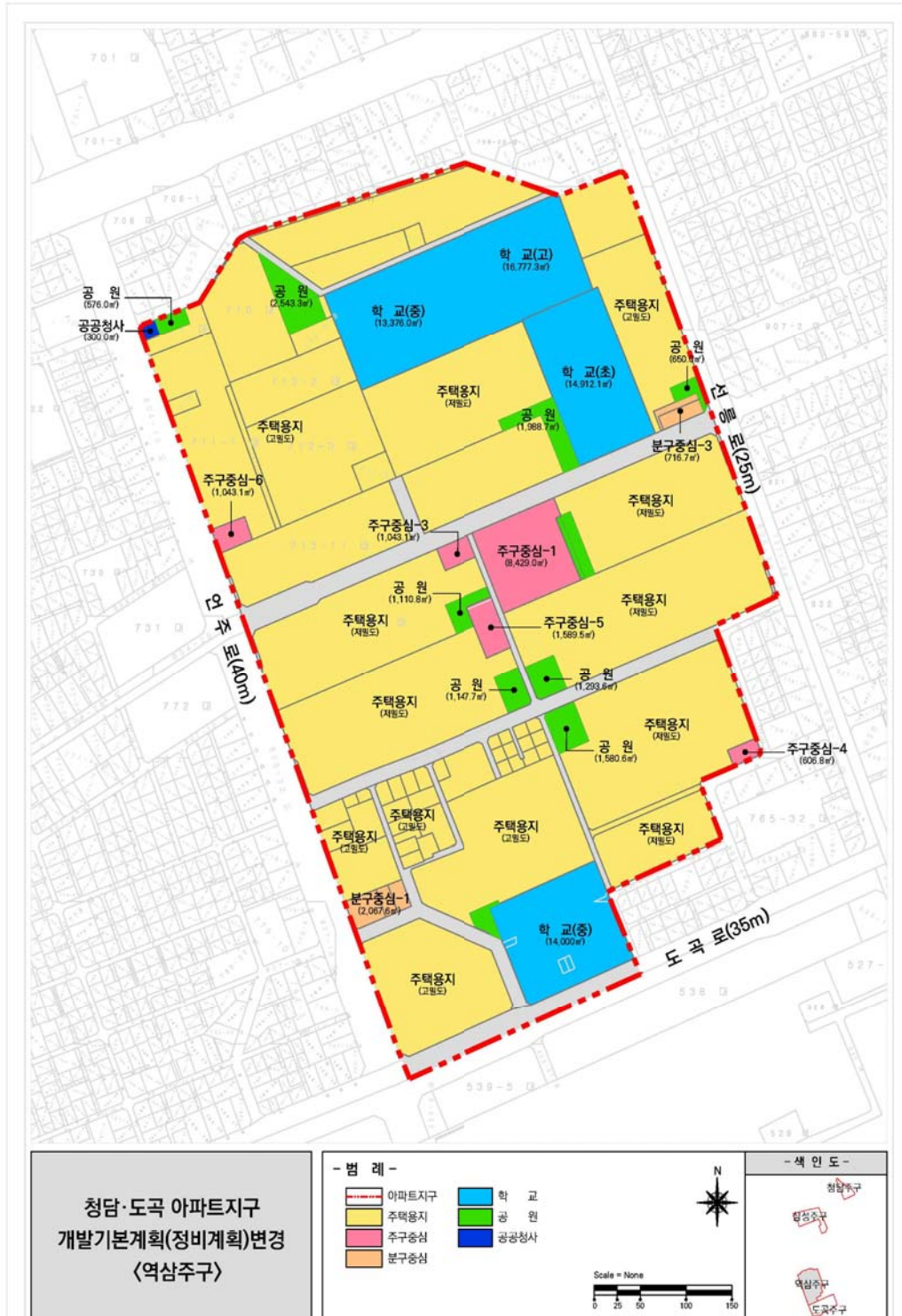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변경결정 도서 참조 (비치도서와 같음)

5. 시민열람 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 2133-7142)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지형도면 고시도(기정)



지형도면 고시도(변경)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389호

도시계획시설[낙산근린공원(변경)]사업 실시계획 인가고시

1. 서울시 고시 제272호(1982. 7.24)로 최초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 서울시 고시 제99호(2016.4.7.)로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성북구 삼선동 1가 2번지 낙산근린공원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을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인가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한양도성도감(☎2133-2663)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보입니다

2016년 12월 1일
서울특별시장

가. 사업 개요

- 사업종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 사업명칭 : 낙산근린공원 조성
- 대 상 지 : 성북구 삼선동 1가 2번지(204㎡)
- 사업규모 : 204㎡

나. 사업 내용 : 공원조성을 위한 토지(임차권)의 보상

다.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사무수임자)

라. 사업기간 : 실시계획 인가일로 부터 2018. 12. 31.까지

마.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따로붙임

바. 기타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 서울특별시 한양도성도감(☎2133-266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1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지적 (㎡)	편입면 적 (㎡)	성 명	주 소	지 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삼선동 1가 2번지	대지	204	204	서울 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31	전부	박주호	동대문구 제기동 294, 노블하우스 302호	토지임차권 (재활용품수 집장 운영)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390호

도시관리계획(구로역 및 신도림역세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1997-304호(1997.9.29.)호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0-319호(2000.11.10.)로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435호(2008.12.4.)로 변경 결정된 『구로역 및 신도림역세권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2016년 제14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16.09.28.)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구로역 및 신도림역세권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1일

서울특별시장

I. 결정(변경) 취지

- 서남권 생활권계획의 구로 지구중심 조정 및 주변 준공업지역의 대규모 개발 계획수립 등 주변지역의 개발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구로역 주변 준공업지역과 노후 건축물이 밀집된 주거지역의 계획 실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구로역 및 신도림역세권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함

II.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구로역 및 신도림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구로구 구로동 602-5일대 (경인로558-6일대) 구로구 신도림동 642일대 (신도림로16일대)	1,071,585.2	감)10,908.5	1,060,676.7	서울특별시고시 제1997-304호 (1997.9.29)	구역계 제척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적(㎡)	변경사유
변경	구로역 및 신도림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구로구 구로동 602-5일대 (경인로558-6일대) 구로구 신도림동 642일대 (신도림로16일대)	구역면적 : 1,060,676.7 (감소면적 : 10,908.5)	• 제척지역은 구역내 타지역과 지역적 특성이 상이한 저층 주거지역으로 현재 용도지역·지구 제한으로 관리 가능하고 주민의 적극 해제 의견이 있어 구역에서 제척

②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071,585.2	감)10,908.5	1,060,676.7	100.0	-제척 : 감)10,908.5㎡
주거지역	소 계	579,555.0	증)79,259.5	658,814.5	62.1	-제척 : 감)10,908.5㎡ -기재착오 정정 : 증)90,168.0㎡
	일반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12,994.0	-	1.2	-
	제2종일반주거지역	5,848.0	증)68,969.0	74,817.0	7.1	-제척 : 감)5,848.0㎡ -기재착오 정정 : 증)74,817.0㎡
	제3종일반주거지역	453,663.0	증)10,290.5	463,953.5	43.7	-제척 : 감)5,060.5㎡ -기재착오 정정 : 증)15,351.0㎡
	준주거지역	107,050.0	-	107,050.0	10.1	-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91,024.8	-	91,024.8	8.6	-
공업지역	준공업지역	401,005.4	감)116,329.0	284,676.4	26.8	-기재착오 정정 : 감)116,329.0㎡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	증)26,161.0	26,161.0	2.5	-기재착오 정정 : 증)26,161.0㎡

주) * : 기정면적은 구로구고시 제2011-38호(2011.7.28 구로역 및 신도림역세권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신도림역주변 특별계획구역Ⅱ블록 세부개발계획 변경)의 면적임

주) 기재착오 정정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499호(2008.12.30 마곡지구 도시개발구역에 따라 준공업지역 변경), 조서상 면적이 변경되지 않아 금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시 기재착오에 의한 오류를 정정하는 사항임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위 치	용도지역		면적(㎡)	변경사유
		기정	변경		
-	-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감)5,848.0	• 구역계 제척 (10,908.5㎡ 감소)
-	-	제3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감)5,060.5	
-	-	준공업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74,817.0㎡	• 서울시고시 제2008-499호 반영후 조서상 면적 기재 착오에 따른 오류 정정
-	-	준공업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15,351.0㎡	
-	-	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26,161.0㎡	

나. 용도지구 결정조서 : 변경없음

2.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 도로 총괄표

류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49	28,044 (10,738)	759,695 (228,539)	19	9,754 (4,244)	214,472 (75,712)	16	9,086 (3,229)	237,723 (62,013)	14	9,204 (3,265)	307,500 (90,814)

류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광로	2	5,070 (1,922)	230,390 (88,730)	-	-	-	1	320	16,640	1	4,750 (1,602)	213,750 (72,090)
대로	4	11,730 (1,366)	360,500 (45,266)	2	2,800 (896)	98,000 (31,360)	1	6,230 (373)	186,900 (11,190)	1	2,700 (97)	75,600 (2,716)
중로	19	7,775 (4,000)	135,311 (61,163)	3	4,507 (901)	90,140 (18,020)	10	1,985 (1,985)	29,775 (29,775)	6	1,283 (1,114)	15,396 (13,368)
소로	25	3,469	33,494	14	2,447	26,332	4	551	4,408	6	471	2,754

□도로 결정(변경)조서

연번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류별	번호	폭원(m)							
1	기정	광로	2	95	33~52	주간선	320	구로동 552-102	신도림동 (광3-2)*	일반 도로	서고 78호 (2000.4.6)	공원로
2	기정	광로	3	-	35~54 (45)	주간선	4,750 (1,602)	문래동광장 (동측구역계)	오류동광장 (서측구역계)	"	건고 64호 (1978.3.29)	경인로(광3-2) 중복결정 · 지하: 공공보도1 (기결정) 노선번호부여
	변경	광로	3	2	35~54 (45)	주간선	4,750 (1,602)	문래동광장 (동측구역계)	오류동광장 (서측구역계)	"	-	
3	기정	대로	1	51	35~43 (35)	주간선	1,950 (556)	구로동 (광3-2)*	구로동 (대3-18) (남측구역계)	일반 도로	서고 7호 (1994.1.10)	구로중앙로
4	기정	대로	1	48	35	주간선	807 (340)	신도림동 418-10* (광3-2)*	신도림동 281-132 (북측구역계)	"	건고 393호 (1978.12.7)	십자로
5	기정	대로	2	37	30	주간선	6,230 (373)	구로동 (광3-2)*	등촌동 (북측구역계)	"	건고 393호 (1978.12.7)	등촌로
6	기정	대로	3	143	25~28	주간선	2,700 (97)	신길광장 (대3-18) (구로동586-5)	남구로광장 (대1-51) (구로동584-1)	"	서고 445호 (1981.12.22)	새말로
7	기정	중로	1	220	20	보조 간선	1,750 (230)	구로동 (대1-51)*	가리봉동 (남측구역계)	"	서고 445호 (1981.12.22)	
8	기정	중로	1	-	20	집산	552	구로동 600-74 (경인로)	북측구역계 (구로동 611-1)	"	서고 5호 (1969.3.18)	노선번호부여
	변경	중로	1	8	20	집산	552	구로동 600-74 (광3-2)*	북측구역계 (구로동 611-1)	"		

연번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류별	번호	폭원(m)							
9	기정	중로	2	-	15	집산	221	신도림동 416-28	북측구역계	"	서고 32호 (1970.7.25)	노선번호부여
	변경	중로	2	9	15	집산	221	신도림동 416-28	북측구역계	"		
10	기정	중로	2	-	10~15	집산	185	북측구역계	신도림동 416-20	"	서고 319호 (2000.11.10)	노선번호부여
	변경	중로	2	10	10~15	집산	185	북측구역계	신도림동 416-67*	"		
11	기정	중로	2	-	15	집산	163	신도림동 419-20	신도림동 (대1-45)	"	서고 48호 (1993.3.4)	노선번호부여
	변경	중로	2	11	15	집산	163	신도림동 419-20	신도림동 (광3-2)*	"		
12	기정	중로	2	-	15	집산	222	신도림동 365	신도림동 375-1	"	서고 48호 (1993.3.4)	노선번호부여
	변경	중로	2	12	15	집산	222	신도림동 (광3-2)*	신도림동 375-1	"		
13	기정	중로	2	-	15	집산	334	신도림동 371-1	신도림동 338	"	서고 319호 (2000.11.10)	노선번호부여
	변경	중로	2	13	15	집산	334	신도림동 332-2*	신도림동 338	"		
14	기정	중로	2	-	15	집산	60	구로동 501-16	구로동 501-4	"	서고 319호 (2000.11.10)	노선번호부여
	변경	중로	2	14	15	집산	60	구로동 501-16	구로동 1254*	"		
15	기정	중로	2	-	15	집산	189	구로큰길 (대1-51)	구로동 474-9	"	서고 319호 (2000.11.10)	노선번호부여
	변경	중로	2	15	15	집산	189	구로큰길 (대1-51)	구로동 473-28*	"		
16	기정	중로	2	-	15	집산	357	경인로 1-45	경인로 418-3	"	서고 435호 (2008.12.4)	노선번호부여
	변경	중로	2	16	15	집산	357	경인로 (광3-2)*	신도림동* 418-6*	"		
17	기정	중로	2	-	15	집산	111	신도림동 360-6	광로3-2	일반 도로	서고 157호 (2006.5.4)	노선번호부여
	변경	중로	2	17	15	집산	111	신도림동 360-6	광로3-2	"		
18	기정	중로	2	-	15	국지	143	구로동 12-1	구로동 3-31	"	서고 92호 (2004.4.6)	노선번호부여
	변경	중로	2	18	15	국지	143	구로동 1-2*	구로동 3-25*	"		
19	기정	중로	3	-	12	집산	244	경인로 (대1-45)	구로동 609-23	"	서고 319호 (2000.11.10)	노선번호부여
	변경	중로	3	19	12	집산	244	경인로 (광3-2)*	구로동 609-23	"		
20	기정	중로	3	-	12	집산	112	구로동 609-16	구로동 609-29	"	서고 319호 (2000.11.10)	노선번호부여
	변경	중로	3	20	12	집산	112	구로동 609-16	구로동 609-29	"		
21	기정	중로	3	-	12	집산	248	신도림동 406-14	구로동 610-12	"	서고 32호 (1970.7.25)	노선번호부여
	변경	중로	3	21	12	집산	248	신도림동 406-21*	구로동 609-23*	"		

연번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류별	번호	폭원(m)							
22	기정	중로	3	-	12	국지	140	구로동 616-1	구로동 611-11	"	서고 32호 (1970.7.25)	노선번호부여
	변경	중로	3	22	12	국지	140	구로동 610-10*	구로동 610-10*	"		
23	기정	중로	3	-	12	국지	95	신도림동 397-6	신도림동 404-1	"	서고 319호 (2000.11.10)	노선번호부여
	변경	중로	3	23	12	국지	95	신도림동 397-6	신도림동 642*	"		
24	기정	중로	3	-	10~12	집산	444 (275)	문래동1가 120 (신도림동349-90)	신도림동360-6	"	서고 157호 (2006.5.4)	노선번호부여
	변경	중로	3	24	10~12	집산	444 (275)	문래동1가 120 (신도림동349-90)	신도림동360-96*	"		
25	기정	소로	1	-	10	국지	259	경인로 (대1-45)	신도림동 406-1	"	서고 319호 (2000.11.10)	노선번호부여
	변경	소로	1	25	10	국지	259	경인로 (광3-2)*	신도림동 406-1	"		
26	기정	소로	1	-	10	국지	68	신도림동 385-1	신도림동 390-57	"	서고 32호 (1970.7.25)	노선번호부여
	변경	소로	1	26	10	국지	68	신도림동 385-1	신도림동 390-39*	"		
27	기정	소로	1	-	10	국지	160	신도림동 419-4	신도림동 416-7	"	서고 319호 (2000.11.10)	노선번호부여
	변경	소로	1	27	10	국지	160	신도림동 419-39*	신도림동 416-7	"		
28	기정	소로	1	-	10	국지	104	경인로 (대1-45)	신도림동 419-21	"	서고 319호 (2000.11.10)	노선번호부여
	변경	소로	1	28	10	국지	104	경인로 (광3-2)*	신도림동 419-21	"		
29	기정	소로	1	-	10	국지	202	신도림동 425-15	신도림동 360-37	일반 도로	서고 319호 (2000.11.10)	노선번호부여
	변경	소로	1	29	10	국지	202	신도림동 425-19*	신도림동 629-2*	"		
30	기정	소로	1	-	10	국지	95	경인로 (대1-45)	신도림동 360-8	"	서고 319호 (2000.11.10)	노선번호부여
	변경	소로	1	30	10	국지	95	경인로 (광3-2)*	신도림동 360-96*	"		
31	기정	소로	1	-	10	국지	560	신도림동 427-3	구로동 603-46	"	서고 319호 (2000.11.10)	노선번호부여
	변경	소로	1	31	10	국지	560	신도림동 427-3	구로동 603-46	"		
32	기정	소로	1	-	10	국지	54	경인로 (대1-45)	신도림동 439-47	"	서고 319호 (2000.11.10)	노선번호부여
	변경	소로	1	32	10	국지	54	경인로 (광3-2)*	신도림동 439-47	"		
33	기정	소로	1	-	10	국지	33	경인로 (대1-45)	신도림동 414-50	"	서고 32호 (1970.7.25)	노선번호부여
	변경	소로	1	33	10	국지	33	경인로 (광3-2)*	신도림동 413-50*	"		

연번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류별	번호	폭원(m)							
34	기정	소로	1	-	10	국지	313	신도림동 589-12	경인로 (대1-45)	"	서고 3호 (1969.1.18)	쿨데삭 반경 변경 및 노선번호부여
	변경	소로	1	34	10	국지	313	구로동* 589-12	경인로 (광3-2)*	"		
35	기정	소로	1	-	10	국지	73	경인로 (대1-45)	구로동 593-8	"	서고 440호 (1979.10.15)	노선번호부여
	변경	소로	1	35	10	국지	73	경인로 (광3-2)*	구로동 593-8	"		
36	기정	소로	1	-	10~17	국지	266	구로동 3-81	구로동 570-160	"	서고 319호 (2000.11.10)	도로정형화 및 노선번호부여
	변경	소로	1	36	10~17	국지	266	구로동 3-81	구로동 570-160	"		
37	기정	소로	1	-	10	국지	160	구로큰길 (대1-51)	구로동 501-5	"	서고 3호 (1969.1.18)	노선번호부여
	변경	소로	1	37	10	국지	160	구로큰길 (대1-51)	구로동 501-5	"		
38	기정	소로	1	-	10	국지	100	구로동 501-4	구로동 1254	"	서고 440호 (1979.10.15)	노선번호부여
	변경	소로	1	38	10	국지	100	구로동 1254*	구로동 1254	"		
39	기정	소로	2	-	8	국지	286	신도림동 375-8	신도림동 311-5	"	서고 48호 (1993.2.24)	일부 선형 변경, 중점 가각부 변경, 노선번호부여
	변경	소로	2	39	8	국지	286	신도림동 306-10*	신도림동 312-23*	"		
40	기정	소로	2	-	8	국지	110	구로동 560-10	구로동 3-4	"	서고 319호 (2000.11.10)	노선번호부여
	변경	소로	2	40	8	국지	110	구로동 560-10	구로동 3-4	"		
41	기정	소로	2	-	8	국지	117	구로동 572-8	구로동 572-32	"	서고 435호 (2008.12.4)	고시내용 오류 정정, 노선번호부여
	변경	소로	2	41	8	국지	190	구로동 572-10	구로동 572-8	"	서고 390호 (2002.11.5)	
42	기정	소로	3	-	6	국지	110	구로동 612-1	구로동 402-5	일반 도로	서고 3호 (1969.1.18)	노선번호부여
	변경	소로	3	42	6	국지	110	구로동 612-1	구로동 402-5	"		
43	기정	소로	3	222	6	국지	85	신도림동 312-16*	신도림동 646*	"	서고 3호 (1969.1.18)	
44	기정	소로	3	227	6	국지	160	구로동 3-76	구로동 3-4	"	서고 319호 (2000.11.10)	
45	기정	소로	3	-	4	국지	36	구로동 1253	구로동 1253	"	서고 319호 (2000.11.10)	노선번호부여
	변경	소로	3	45	4	국지	36	구로동 1254*	구로동 1253-1*	"		
46	신설	소로	3	46	6	국지	46	신도림동 419-21	신도림동 432-11	"		
47	기정	중로	1	58	20	보조 간선	2,205	구로동 (대1-51)	구로동 (광2-19)	"	건고 738호 (1963.12.24)	(구역제척지역)

연번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류별	번호	폭원(m)							
48	기정	소로	1	-	10	국지	38	구로동 474-7	구로동 496-79	"	서고 319호 (2000.11.10)	폭원축소 및 노선번호부여 (구역제척지역)
	변경	소로	2	48	8	국지	38	구로동 474-28*	구로동 496-79	"		
49	기정	소로	3	-	6	국지	34 (15)	구로동 496-148	구로동 494-20 (구로동 496-149)	"	서고 88호 (1981.3.27)	노선번호부여 (구역제척지역)
	변경	소로	3	49	6	국지	34	구로동 496-148	구로동 494-20	"		

주) 폭원 및 연장의 ()는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사항임.

주) *는 표기오류에 대한 정정사항임.

주) 구역제척에 따라 8번(도로연번기준)이후의 도로는 기 결정된 도로연번과 다름.

[2008. 12. 4 결정된(서울시고시 2008-435)결정조서 도로연번 참조]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도로명	연번			
광로3-	2	광로3-2	• 노선번호 부여	• 기결정시 노선번호 미부여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구역내 효율적 관리를 위해 노선번호 부여
중로1-	9	중로1-8	• 노선번호 부여	
중로2-	10	중로2-9	• 노선번호 부여	
중로2-	11	중로2-10	• 노선번호 부여	
중로2-	12	중로2-11	• 노선번호 부여	
중로2-	13	중로2-12	• 노선번호 부여	
중로2-	14	중로2-13	• 노선번호 부여	
중로2-	15	중로2-14	• 노선번호 부여	
중로2-	16	중로2-15	• 노선번호 부여	
중로2-	44	중로2-16	• 노선번호 부여	
중로2-	-	중로2-17	• 노선번호 부여	
중로2-	-	중로2-18	• 노선번호 부여	
중로3-	17	중로3-19	• 노선번호 부여	
중로3-	18	중로3-20	• 노선번호 부여	
중로3-	19	중로3-21	• 노선번호 부여	
중로3-	20	중로3-22	• 노선번호 부여	
중로3-	21	중로3-23	• 노선번호 부여	
중로3-	24	중로3-24	• 노선번호 부여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도로명	연번			
소로1-	22	소로1-25	• 노선번호 부여	• 기결정시 노선번호 미부여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구역내 효율적 관리를 위해 노선번호 부여
소로1-	23	소로1-26	• 노선번호 부여	
소로1-	24	소로1-27	• 노선번호 부여	
소로1-	25	소로1-28	• 노선번호 부여	
소로1-	26	소로1-29	• 노선번호 부여	
소로1-	27	소로1-30	• 노선번호 부여	
소로1-	28	소로1-31	• 노선번호 부여	
소로1-	29	소로1-32	• 노선번호 부여	
소로1-	30	소로1-33	• 노선번호 부여	• 기결정시 노선번호 미부여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구역내 효율적 관리를 위해 노선번호 부여
소로1-	31	소로1-34	• 쿨데삭 반경 변경 • 노선번호 부여	
소로1-	32	소로1-35	• 노선번호 부여	
소로1-	33	소로1-36	• 도로정형화 • 노선번호 부여	• 서울시고시 제2015-427호 D4-1 획지변경에 맞추어 D4-2 남측 도로 정형화 • 기결정시 노선번호 미부여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구역내 효율적 관리를 위해 노선번호 부여
소로1-	34	소로1-37	• 노선번호 부여	• 기결정시 노선번호 미부여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구역내 효율적 관리를 위해 노선번호 부여
소로1-	35	소로1-38	• 노선번호 부여	
소로2-	37	소로2-39	• 종점 가각부 변경 및 일부선형변경 • 노선번호 부여	• 종점 가각부 회전반경 확보 및 일부 도로선형을 지적경계와 일치되도록 조정 • 기결정시 노선번호 미부여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구역내 효율적 관리를 위해 노선번호 부여
소로2-	38	소로2-40	• 노선번호 부여	• 기결정시 노선번호 미부여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구역내 효율적 관리를 위해 노선번호 부여
소로2-	45	소로2-41	• 고시내용 오류 정정 • 노선번호 부여	• 서울시 고시 제2002-390호 고시내용 반영(오류 정정) • 기결정시 노선번호 미부여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구역내 효율적 관리를 위해 노선번호 부여
소로3-	39	소로3-42	• 노선번호 부여	• 기결정시 노선번호 미부여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구역내 효율적 관리를 위해 노선번호 부여
소로3-	43	소로3-45	• 노선번호 부여	
-		소로3-46	• 도로신설 B=6m, L=46m	• 획지계획 변경에 의한 도로 신설
소로1-	36	소로2-48	• 도로폭원변경 B = 10m → 8m • 노선번호 부여	• 현황여건 반영과 미집행시설 해소를 고려하여 폭원 축소 • 기결정시 노선번호 미부여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구역내 효율적 관리를 위해 노선번호 부여
소로3-	42	소로3-49	• 노선번호 부여	• 기결정시 노선번호 미부여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구역내 효율적 관리를 위해 노선번호 부여

□지하차도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2) 철도 : 변경없음

나. 공간시설 : 변경없음

다. 유통 및 공급시설 : 변경없음

라. 공공·문화체육시설 : 변경없음

③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최소·최대개발규모(미적용) : 변경없음

나. 가구 및 획지계획

(1) 가구 결정(변경) 조서

구 분	가 구 번 호		비 고
	기 정	변 경	
가 구	A1, A2, A3, A4, A5, B1, B2, B3, B4, B5, B6, B7, B8, B9 C1, C2, C3, C4, C5, C6, C7, C8, C9, C10, C11, C12 D1, D2, D3, D4, D5, D6 E1, E2, E3, E4	A1, A2, A3, A4, A5, B1, B2, B3, B4, B5, B6, B7, B8, B9 C1, C2, C3, C4, C5, C6, C7, C8, C9, C10 D1, D2, D3, D4, D5, D6 E1, E2, E3, E4	- 간선도로를 기준으로 5개 지역으로 구분 - 구역계 제척(C8,C9)에 따른 가구번호 재부여

(2)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기정

구분	가구 번호	획지 번호	지 번	면적 (㎡)	계획내용	비 고
기정	A1	1	328-4대, 329-6대, 329-5대, 329-4잡 330-34대, 330-35대, 330-33대, 330-52대 330-36대, 330-38대, 330-37대, 331-11대 328-5잡, 331-19도	1,331	획지선지정	간선도로변 적정 개발규모 유도
		2	331-15대, 330-32대, 330-52대, 330-39대 330-42대, 330-43대, 330-44대, 330-41대 330-40대, 330-45대, 330-53대, 330-47대 331-12대, 331-14대, 331-13대, 331-19도	755	획지선지정	간선도로변 적정 개발규모 유도
		3	331-16대, 330-98대, 331-10대, 331-8대 330-48대, 330-49대, 330-50대, 330-51대 331-19도	432	획지선지정	간선도로변 적정 개발규모 유도
		4	328-18도, 332-1대, 344-21전, 345-3대 330-59대	5,739	획지선지정	신도림아이파크 (2015.02.06)
		5	319-18도, 328-48도, 646대	48,286	획지선지정	신도림역 특별계획구역 I-II 신도림대림4차 (2003.05.27)
		6	312-17대, 318-7대, 319-17대, 328-33대	6,128	획지선지정	우성아파트 (1992.12.04)
		7	375-1대, 375-12장, 375-25대	1,710	획지선지정	-
기정	A2	1	338-2대, 338-3대, 338대, 344-37도 344-39잡, 344-53도, 344-54도, 344-57대	4,394	획지선지정	-
		2	337대	16,529	획지선지정	신도림역 특별계획구역 I-I 신도림대림1차 (2007.08.06)
기정	A3	1	644대	17,274	획지선지정	신도림동아2차 (2000.05.17)
기정	A4	1	420-6장, 419-4장	4,491	획지선지정	간선도로변 적정 개발규모 유도
		2	420-1대, 433-6대, 433-3대, 419-21구	1,341	획지선지정	간선도로변 적정 개발규모 유도

※기정 획지면적은 구역면적임

구분	가구 번호	획지 번호	지 번	면적 (㎡)	계획내용	비 고
기정	A5	1	306-10도, 645-1도, 645대	23,837	획지선지정	신도림동아3차 (2000.11.14)
		2	380-17대, 380-18대, 380-19대, 380-20대 380-21대, 380-23대, 380-26도, 380-28대 380-29대, 380-33대, 380-34대, 380-35대 380-52대, 380-53도, 380-54도, 380-55대 381-18전	1,162	획지선지정	과소필지 해소, 간선도로변 적정 개발규모 유도
		3	380-10대, 380-11대, 380-12대, 380-13전 380-14대, 380-15대, 380-16대, 380-26도 380-36전, 380-37대, 380-38대, 380-39대 380-40대, 380-9대, 381-14대, 381-15대 381-16대, 381-17대, 380-17대, 380-54도	923	획지선지정	과소필지 해소, 간선도로변 적정 개발규모 유도
		4	380-26도, 380-3대, 380-41대, 380-42대 380-43대, 380-45대, 380-46대, 380-49대 380-4장, 380-50대, 380-7대, 381-12전	1,040	획지선지정	과소필지 해소, 간선도로변 적정 개발규모 유도
		5	380-26도, 380-2대, 380-50대, 381-4대 381-5답, 381-6대, 382-2대, 383-16대 383-18대, 383-3대, 383-4대, 383-6대 383-7전, 383-8대, 419-20구, 383-21대 383-22대	1,509	획지선지정	과소필지 해소, 간선도로변 적정 개발규모 유도
		6	383-2대, 375-15대, 383-1대, 419-20구	270	획지선지정	과소필지 해소, 간선도로변 적정 개발규모 유도
기정	B1	1	649대	17,052	획지선지정	신도림대림7차 (2004.06.16)
기정	B2	1	386-2도, 388-4도, 390-49대, 390-39구 416-27대, 416-4대, 416-56대, 390-62대 390-63구	10,353	획지선지정	-
기정	B3	1	416-5대, 416-6도	4,307	획지선지정	-
기정	B4	1	418-3장, 419-40장, 419-6장, 420-4장	2,686	획지선지정	신도림크라운빌 (2015.09.16)
		2	385-2도, 417대, 418-1대, 418-4잡 418-5잡, 419-20구	5,758	획지선지정	-
기정	B5	1	435-10대, 435-18대, 435-19대, 435-16장 435-17대	3,920	획지선지정	신도림대우3차 (2007.09.20)
기정	B6	1	417대, 418-1대, 418-2대, 418-5잡 419-21구, 419-24대, 436-10대, 436-4대	1,254	획지선지정	과소필지 해소, 적정 개발규모 유도
		2	436-7대	1,239	획지선지정	과소필지 해소, 적정 개발규모 유도
		3	416-54도, 416-7대	1,519	획지선지정	과소필지 해소, 적정 개발규모 유도
		4	416-64대, 437-1대	3,853	획지선지정	과소필지 해소, 적정 개발규모 유도

※기정 획지면적은 구역면적임

구분	가구 번호	획지 번호	지 번	면적 (㎡)	계획내용	비 고
기정	B7	1	648대	4,319	획지선지정	신도림대림6차 (2003.08.16)
		2	1264대, 397-3도, 398-12전, 398-1전 612-39대, 612-41대, 642대, 410-19도	74,593	획지선지정	신도림대림2차 (2001.11.30)
		3	415-13도, 415-14도, 415-1구, 415-6구 416-36대, 416-38도	922	획지선지정	-
		4	647대	15,913	획지선지정	신도림대림5차 (2003.08.16)
		5	390-44대, 390-59대	1,001	획지선지정	-
		6	397-2전, 398-2전	824	획지선지정	-
		7	406-13대, 410-13대, 410-15대	7,602	획지선지정	-
		8	402-3대	2,099	획지선지정	-
		9	400-3전	453	획지선지정	-
		10	399-5도, 611-23도, 612-9대, 612-27대 612-25대	282	획지선지정	-
기정	B8	1	612-12대	390	획지선지정	-
		2	612-13대, 612-14대, 612-21대	575	획지선지정	-
		3	612-1장	713	획지선지정	-
기정	B9	1	406-10대, 406-1대, 588-4대, 604-1대 604-19대	25,637	획지선지정	-
		2	604-19대	2,418	획지선지정	-
기정	C1	1	611-1대, 611-6대, 612-2대, 612-6대	1,314	획지선지정	-
		2	612-7대	1,305	획지선지정	-
		3	612-10대	727	획지선지정	-
		4	612-11대, 612-22대	457	획지선지정	-
		5	611-26대	7,189	획지선지정	-
기정	C2	1	604-2도, 605-2도, 606-1대, 606-4대	33,872	획지선지정	-
		2	606-4대	2,460	획지선지정	-
기정	C3	1	616-1대	7,312	획지선지정	-
		2	610-16대, 610-6도, 610-9대, 611-12도	1,500	획지선지정	-
		3	609-1대, 609-22잡, 609-24대, 609-7대	4,237	획지선지정	-
		4	609-9대, 616-2대	1,863	획지선지정	-

※기정 획지면적은 구역면적임

구분	가구 번호	획지 번호	지 번	면적 (㎡)	계획내용	비 고
기정	C4	1	610-14대, 609-24대, 609-16대, 609-14대	1,069	획지선지정	-
		2	610-8대, 610-17대, 608-7구	3,569	획지선지정	-
		3	609-7대, 609-28대	2,706	획지선지정	-
		4	609-29대	338	획지선지정	-
		5	609-30대	411	획지선지정	-
		6	608-2대, 608-3대, 609-6대	712	획지선지정	-
		7	607-1대, 607-5대, 607-4대, 606-5대 607-6대, 607-2대	2,521	획지선지정	-
		8	605-2도, 600-6주, 597-13대, 600-78대 604-23대, 600-77주, 604-26대, 604-21도	2,091	획지선지정	-
		9	600-71대	793	획지선지정	-
기정	C5	1	589-12대, 589-13대, 591-5도, 594-19대 594-3대, 594-7대, 594-8대, 594-9대 598-10대, 598-11대, 598-12대, 598-13대 598-14대, 598-15전, 598-19전, 598-1대 598-20전, 598-22대, 598-24전, 598-26도 598-2대, 598-30대, 598-34대, 598-37도 598-38도, 598-41대, 598-44도, 598-45도 598-4대, 598-5대, 598-6대, 598-7대 598-8전, 598-9대, 599-2대, 599-3대 600-12대, 600-14대, 600-2도, 600-3대 600-48대, 600-57대, 600-59대, 600-60대 600-61대, 600-73대, 601-2도, 602-5대 602-6대	8,399	획지선지정	구로역앞 사거리 특별계획구역
기정	C6	1	593-11대, 593-13대, 593-14대, 593-8대 595-1대, 596-1대, 596-3대, 596-4대 596-5대, 596-6대, 596-7대, 597-15대 597-1전, 597-20대, 597-22대, 597-23대 597-24대, 597-26대, 597-27대, 597-28대 597-29전, 597-31대, 597-32전, 597-33대 597-34대, 597-35대, 597-36대, 597-37도 597-40대, 597-41대, 597-44대, 597-45대 597-46도, 597-47대, 597-49대, 597-50대 597-51대, 597-52도, 597-53대, 597-54대 597-56대, 597-57도, 597-58대, 597-59대 597-63대, 597-65대, 597-67대, 597-68대 597-71대, 597-74대, 597-75대, 597-76대 597-77대, 598-16대, 598-26도, 598-29전	6,548	획지선지정	구로역앞 사거리 특별계획구역
기정	C7	1	584-12대	15,640	획지선지정	-
		2	474-1대	1,358	획지선지정	신동아미래지움 (2004.11.23)
기정	C10	1	501-18대, 572-6대, 572-8대, 573대	12,245	획지선지정	구로역주변 특별계획구역 AK플라자 (1993.08.25)

구분	가구 번호	획지 번호	지 번	면적 (㎡)	계획내용	비 고
기정	C11	1	501대	9,986	획지선지정	구로역주변 특별계획구역 신구로자이 (2007.05.11)
		2	501-7대, 501-8대, 501-9대	560	획지선지정	-
		3	501-5대, 501-12대	659	획지선지정	-
기정	C12	1	1253-1도, 1253-4도, 1253-7대, 1282대	3,578	획지선지정	-
기정	D1	1	439-6대, 439-28대, 439-32대, 439-33전 439-34대, 439-47전, 439-50대, 439-51전 439-52대, 439-53전, 439-54대, 439-57대 439-58대, 439-59대, 439-62대, 439-63대 439-64전, 439-65대, 439-69대, 439-84도	2,605	획지선지정	간선도로변 적정 개발규모 유도
		2	426-30대, 426-31대, 426-32대, 426-33대 439-4대, 439-12대, 439-49대, 439-5대 439-10대, 429-15대, 439-15대, 439-11대 439-16대, 439-13대, 429-16대, 427-4대 439-14대, 429-17대, 439-17대, 427-19대 427-20대, 429-3대, 427-21대, 427-22대 427-30대, 439-18대, 428-4대, 427-24대 427-23대, 428-5대, 428-3대, 428-2전 428-1도, 428-20대, 428-14대, 439-19대 428-9대, 428-11대, 428-21도, 428-6대 428-8대, 439-9전, 439-21대, 439-20대 427-18대, 427-45대, 429-22대	3,729	획지선지정	간선도로변 적정 개발규모 유도
		3	427-1 대, 427-36대, 427-14대, 427-4대 427-13대, 427-3대, 427-12대, 427-15대 427-11대, 427-16대, 427-2 대	1,163	획지선지정	-
		4	432-30대, 426-36대, 426-22대, 430-3대 426-23대, 426-24대, 426-25대, 426-26대	1,885	획지선지정	-
기정	D2	1	413-37대, 439-74대, 439-8대, 413-43대 413-36잡, 413-35대, 413-9장, 439-76대 439-47전	2,705	획지선지정	-
		2	413-10대	908	획지선지정	-
		3	413-13장, 413-49대	2,524	획지선지정	-
		4	413-13장, 413-49대	2,295	획지선지정	-
기정	D3	1	412-3대, 588-13대, 588-14대, 412-9대	2,521	획지선지정	-
		2	588대	1,553	획지선지정	-
		3	603-11대, 603-12잡, 603-9대	2,685	획지선지정	-
기정	D4	1	3-8대, 3-77도, 3-81종	1,085.0	획지선지정	간선도로변 적정 개발규모 유도
		2	3-76도, 3-83도, 3-85도, 3-9도 558-2도, 560-11도, 560대	14,545	획지선지정	신도림현대 (1994.01.21)
기정	D5	1	557-10장, 557-21대, 557-22대, 557-24대 557-26전, 557-27대, 557-28대, 557-29대 557-35장, 557-3대, 557-5대, 557대 558-2도, 558-4대, 560-11도	5,459	획지선지정	과소필지 해소, 적정 개발규모 유도
		2	552-8대, 552-9대, 560-16대	493	획지선지정	과소필지 해소, 적정 개발규모 유도

※기정 획지면적은 구적면적임

구분	가구 번호	획지 번호	지 번	면적 (㎡)	계획내용	비 고
기정	D5	3	557-49대, 산1-5임, 산2-2임	1,046	획지선지정	과소필지 해소, 적정 개발규모 유도
		4	1261대, 557-55도	3,047	획지선지정	일신건영 (1998.07.28)
		5	565-1도, 565-2대	800	획지선지정	-
기정	D6	1	1263대, 566-1대, 566-6대, 563-25대 3-85도, 560-10도, 560-7도, 563-2도 570-160도, 570도	30,223	획지선지정	구로롯데 (1999.11.27)
		2	567-4대, 563-4대, 563-24대, 1263-1대 567-20대, 567-24대	4,415	획지선지정	구로SK뷰 (2006.08.11)
		3	569-6대	144	획지선지정	-
		4	569-8대, 569-14대, 569-31대	502	획지선지정	-
		5	586-5대, 569-20대	881	획지선지정	-
		6	586-11철	585	획지선지정	-
		7	587-5도, 567-15철, 567-18철, 567-16철 587-3철, 567-17철, 568-5철	536	획지선지정	-
		8	569-9대, 569-13대	351	획지선지정	-
기정	E1	1	349-10잡, 349-15잡, 349-23대, 349-7잡 360-2철, 360-3철, 360-45장, 360-51장 360-52장	25,756.8	획지선지정	신도림역 특별계획구역 II 디큐브시티 (2011.07.18)
기정	E2	1	361주, 423-27도	850	획지선지정	-
		2	640대, 640-2대	4,229.6	획지선지정	-
		3	360-1장, 360-34장, 360-37장, 360-5대 360-7장, 360-8장, 362-53장, 362-54대 362-60대, 362-74대	2,259.4	획지선지정	-
		4	362-33대, 362-76도, 640-1대	247	획지선지정	-
기정	E3	1	432-1대, 360-25대	9,207	획지선지정	-
		2	425-10대, 425-15대, 425-8대, 425-9대	467	획지선지정	-
기정	E4	1	3-25대	22,593	획지선지정	신도림역 특별계획구역 III 테크노마트 (2007.12.28)
		2	3-25대, 1267대, 3-73대	43,872	획지선지정	-
		3	22-5대, 4-5대, 5-1대, 8-17대, 9-3대	812	획지선지정	-
		4	22-4대, 8-16잡	410	획지선지정	-
		5	22-3대, 7-11대, 8-12잡, 8-15잡	255	획지선지정	-
		6	22-2대, 7-10대, 8-14잡	202	획지선지정	-
		7	7-13대	202	획지선지정	-
		8	7-12대	200	획지선지정	-
		9	22-1대	200	획지선지정	-

※기정 획지면적은 구역면적임

□ 변경

구분	가구 번호	획지 번호	지 번	면적 (㎡)	계획내용	비 고
변경	A1	1	328-4대, 328-5잡, 329-4잡, 329-5잡 329-6대, 330-33대, 330-34대, 330-35대 330-36대, 330-37대, 330-38대, 330-52대 331-11대, 331-19도	1,293.3	획지선지정	획지분할가능선에 따라 획지분할 가능
		2	330-32대, 330-39대, 330-40대, 330-41대 330-42대, 330-43대, 330-44대, 330-45대 330-47대, 330-52대, 330-53대, 331-12대 331-13대, 331-14대, 331-15대, 331-19도	761.1	획지선지정	획지분할가능선에 따라 획지분할 가능
		3	330-48대, 330-49대, 330-50대, 330-51대 330-98대, 331-8대, 331-10대, 331-16대 331-19도	424.6	획지선지정	획지분할가능선에 따라 획지분할 가능
		4	693대	5,622.8	획지선지정	신도림아이파크 (2015.02.06)
		5	319-18도, 328-48도, 646대	48,285.9	획지선지정	신도림역주변 특별계획구역 1-2 신도림대림4차 (2003.05.27)
		6	312-17대, 318-7대, 319-17대, 328-33대	6,128.0	획지선지정	우성아파트 (1992.12.04)
		7	375-1대, 375-12장, 375-25대	1,710.0	획지선지정	-
변경	A2	1	330-61도, 338대, 338-2대, 338-3대 338-4도, 344-39잡, 344-57대	4,404.9	획지선지정	-
		2	337대	16,529.0	획지선지정	신도림역주변 특별계획구역 1-1 신도림대림1차 (2007.08.06)
변경	A3	1	644대	17,273.5	획지선지정	신도림동아2차 (2000.05.17)
변경	A5	1	306-10도, 645대, 645-1도	23,792.6	획지선지정	신도림동아3차 (2000.11.14)
		2	380-9대, 380-10대, 380-11대, 380-12대 380-13전, 380-14대, 380-15대, 380-16대 380-18대, 380-19대, 380-20대, 380-21대 380-23대, 380-26도, 380-28대, 380-29대 380-33대, 380-34대, 380-35대, 380-36전 380-37대, 380-38대, 380-39대, 380-40대 380-52대, 380-53도, 380-54도, 380-55대 381-14대, 381-15대, 381-16대, 381-17대	2,026.2	획지선지정	획지분할가능선에 따라 획지분할 가능
		3	380-3대, 380-4장, 380-7대, 380-26도 380-41대, 380-45대, 380-46대, 380-49대 380-50대, 381-12전	1,030.4	획지선지정	획지분할가능선에 따라 획지분할 가능
		4	380-26도, 380-50대, 381-4대, 381-5답 381-6대, 382-2대, 383-3대, 383-4대 383-6대, 383-7전, 383-8대, 383-16대 383-18대, 383-21대, 383-22대, 419-52대	1,495.5	획지선지정	획지분할가능선에 따라 획지분할 가능
		5	375-15대, 383-1대, 383-2대, 419-53대	283.4	획지선지정	-

※변경 획지면적은 토지대장 면적임

구분	가구 번호	획지 번호	지 번	면적 (㎡)	계획내용	비 고
변경	B1	1	649대	17,051.8	획지선지정	신도림대림7차 (2004.06.16)
변경	B2	1	388-4도, 390-39구, 390-49대, 390-62대 416-4대, 416-27대, 416-56대	10,322.4	획지선지정	-
변경	B3	1	385-1도, 416-5대	4,310.8	획지선지정	-
변경	B4	1	418-3장, 419-6장, 419-40장, 420-4장	2,686.0	획지선지정	신도림크라운빌 (2015.09.16)
		2	385-2도, 417대, 418-1대, 418-4잡 418-5잡, 419-20구	5,747.0	획지선지정	-
변경	B5	1	435-10대, 435-17도	3,757.1	획지선지정	신도림대우3차 (2007.09.20)
		2	419-21구, 430-13대, 430-14대, 431-6대 431-7대, 431-9대, 431-10대, 431-13대 431-29대, 432-4전, 432-5전, 432-6대 432-9대, 432-11대, 432-12대, 433-8대 433-9대, 433-10대, 433-11대, 433-12대 433-16대, 433-17대, 433-18대, 433-20대 433-21대, 433-23대, 433-24대, 433-29대 433-30대, 433-41대, 435-1도, 435-16장 435-17도	3,436.5	획지선지정	획지분할가능선에 따라 획지분할 가능
변경	B6	1	417-1대, 418-2대, 418-5잡, 418-9대 419-21구, 419-24대, 436-4대, 436-10대	1,266.8	획지선지정	-
		2	436-7대	1,239.0	획지선지정	-
		3	416-7대, 416-54도	1,498.2	획지선지정	-
		4	416-64대, 437-1대	3,853.0	획지선지정	-
변경	B7	1	648대	4,318.7	획지선지정	신도림대림6차 (2003.08.16)
		2	397-3도, 398-1전, 398-12전, 642대 612-39대, 612-41대, 1264대	74,574.1	획지선지정	신도림대림2차 (2001.11.30)
		3	415-1구, 415-6구, 415-13도, 415-14도 416-36대, 416-38도	922.0	획지선지정	-
		4	647대	15,912.8	획지선지정	신도림대림5차 (2003.08.16)
		5	390-44대	997.0	획지선지정	-
		6	397-2전, 398-2전	824.0	획지선지정	-
		7	406-13대, 410-13대, 410-15대	7,551.3	획지선지정	-
		8	402-3대	2,099.0	획지선지정	-
		9	400-3전	453.0	획지선지정	-
		10	399-5도, 611-23도, 612-9대, 612-25대	293.0	획지선지정	-
변경	B8	1	612-12대	377.5	획지선지정	-
		2	612-13대, 612-14대, 612-21대	575.0	획지선지정	-
		3	612-1장	713.0	획지선지정	-
변경	B9	1	406-1대, 406-10대, 588-4대, 604-1대 604-19대	25,496.1	획지선지정	-
		2	604-19대	2,437.0	획지선지정	-

※변경 획지면적은 토지대장 면적임

구분	가구 번호	획지 번호	지 번	면적 (㎡)	계획내용	비 고
변경	C1	1	611-1대, 611-6대, 612-2대, 612-6대	1,258.1	획지선지정	-
		2	612-7대	1,305.0	획지선지정	-
		3	612-10대	727.0	획지선지정	-
		4	612-11대, 612-22대	457.0	획지선지정	-
		5	611-26대	7,096.4	획지선지정	-
변경	C2	1	596-2도, 606-1대, 606-4대	33,795.6	획지선지정	-
		2	606-4대	2,434.3	획지선지정	-
변경	C3	1	616-1대	7,278.4	획지선지정	-
		2	610-9대, 610-16대, 611-12도	1,027.0	획지선지정	-
		3	609-1대, 609-7대, 609-22잡, 609-24대	4,236.7	획지선지정	-
		4	609-9대, 616-2대	1,871.4	획지선지정	-
변경	C4	1	609-14대, 609-16대, 609-24대, 610-14대	1,063.0	획지선지정	-
		2	608-7구, 610-8대, 610-17대	3,613.3	획지선지정	-
		3	609-7대, 609-28대	2,671.1	획지선지정	-
		4	609-29대	332.9	획지선지정	-
		5	609-30대	409.7	획지선지정	-
		6	608-2대, 608-3대, 609-6대	715.1	획지선지정	-
		7	607-1대, 607-4대, 607-5대	1,499.8	획지선지정	-
		8	604-21도, 606-5대, 607-2대, 607-6대	1,134.1	획지선지정	-
		9	596-2도, 597-13대, 600-6주, 600-77주 600-78대, 604-23대, 604-26대, 604-27대	2,001.3	획지선지정	-
		10	600-71대	794.5	획지선지정	-
변경	C5	1	589-12대, 589-13대, 596-2도, 600-12대 600-14대, 600-57대, 600-59대, 600-60대 600-61대, 600-73대, 602-5대, 602-6주	4,518.6	구로역앞사거리 특별계획가능구역3 (일반 지구단위계획 지침)	구로역앞사거리 특별계획가능구역3에 의한 획지선지정
		2	596-2도, 598-2도, 598-9대, 598-10대 598-11대, 598-12대, 598-13대, 598-14대 598-15전, 598-24전, 598-26도, 598-30대 598-38도	1,817.7	구로역앞사거리 특별계획가능구역3 (일반 지구단위계획 지침)	구로역앞사거리 특별계획가능구역3에 의한 획지선지정
		3	591-5도, 594-3대, 594-7대, 594-8대 594-9대, 594-19대, 598-1대, 598-2도 598-4대, 598-5대, 598-6대, 598-7대 598-19전, 598-20전, 598-22대, 598-26도 598-34대, 598-41대, 598-44도, 598-45도 599-2대, 599-3대, 600-3대, 600-48대	1,860.0	구로역앞사거리 특별계획가능구역3 (일반 지구단위계획 지침)	구로역앞사거리 특별계획가능구역3에 의한 획지선지정
		특계	589-12대, 589-13대, 596-2도, 600-12대 600-14대, 600-57대, 600-59대, 600-60대 600-61대, 600-73대, 602-5대, 602-6주 598-2도, 598-9대, 598-10대, 598-11대 598-12대, 598-13대, 598-14대, 598-15전 598-24전, 598-26도, 598-30대, 598-38도 591-5도, 594-3대, 594-7대, 594-8대 594-9대, 594-19대, 598-1대, 598-4대 598-5대, 598-6대, 598-7대, 598-19전 598-20전, 598-22대, 598-34대, 598-41대 598-44도, 598-45도, 599-2대, 599-3대 600-3대, 600-48대	8,196.3	구로역앞사거리 특별계획가능구역3 (특별계획구역 지침)	구로역앞사거리 특별계획가능구역3

※변경 획지면적은 토지대장 면적임

구분	가구 번호	획지 번호	지 번	면적 (㎡)	계획내용	비 고
변경	C6	1	597-15대, 597-26대, 597-27대, 597-28대 597-29도, 597-33대, 597-34대, 597-35대 597-36대, 597-40대, 597-41대, 597-44대 597-45대, 597-46도, 597-47대, 597-49대 597-50대, 597-51대, 598-29전	1,793.2	구로역앞사거리 특별계획가능구역4 (일반 지구단위계획 지침)	구로역앞사거리 특별계획가능구역4에 의한 획지선지정
		2	593-8대, 593-11대, 593-13대, 593-14대 595-1대, 596-4대, 597-1전, 597-20대 597-22대, 597-23대, 597-24대, 597-29도 597-31대, 97-32전, 597-37도, 597-58대 597-59대, 597-63대, 597-65대, 597-67대 597-68대, 597-74대, 597-75대, 597-77대 598-26도	2,918.3	구로역앞사거리 특별계획가능구역4 (일반 지구단위계획 지침)	구로역앞사거리 특별계획가능구역4에 의한 획지선지정
		3	596-1대, 596-3대, 596-5대, 596-6대 596-7대, 597-37도, 597-53대, 597-54대 597-76대	1,739.4	구로역앞사거리 특별계획가능구역4 (일반 지구단위계획 지침)	구로역앞사거리 특별계획가능구역4에 의한 획지선지정
		특계	597-15대, 597-26대, 597-27대, 597-28대 597-29도, 597-33대, 597-34대, 597-35대 597-36대, 597-40대, 597-41대, 597-44대 597-45대, 597-46도, 597-47대, 597-49대 597-50대, 597-51대, 598-29전, 593-8대 593-11대, 593-13대, 593-14대, 595-1대 596-4대, 597-1전, 597-20대, 597-22대 597-23대, 597-24대, 597-31대, 597-32전 597-37도, 597-58대, 597-59대, 597-63대 597-65대, 597-67대, 597-68대, 597-74대 597-75대, 597-77대, 598-26도, 596-1대 596-3대, 596-5대, 596-6대, 596-7대 597-53대, 597-54대, 597-76대	6,450.9	구로역앞사거리 특별계획가능구역4 (일반 지구단위계획 지침)	구로역앞사거리 특별계획가능구역4
변경	C7	1	584-12대	15,582.3	획지선지정	-
		2	474-1대	1,358.0	획지선지정	신동아미래지움 (2004.11.23)
변경	C8	1	501-18대, 572-6대, 572-8대, 573대	12,212.7	획지선지정	구로역주변 특별계획구역 AK플라자 (1993.08.25)
변경	C9	1	501대	9,986.0	획지선지정	구로역주변 특별계획구역 신구로자이 (2007.05.11)
		-	501-7대	182.5	-	-
		-	501-8대	187.8	-	-
		-	501-9대	190.4	-	-
		-	501-12대	260.9	-	-
		-	501-5대	369.1	-	-
변경	C10	1	1253-1도, 1253-7대, 1254도, 1282대	3,570.6	획지선지정	-
		-	572-1대, 572-22대, 572-24대, 572-25대 572-27대, 572-29대, 572-32대, 572-33대 572-35대, 572-38대, 572-39대, 572-43도 572-48대, 572-51대	1,528.6	-	-

※변경 획지면적은 토지대장 면적임

구분	가구 번호	획지 번호	지 번	면적 (㎡)	계획내용	비 고
변경	D1	1	439-6대, 439-28대, 439-32대, 439-33전 439-34대, 439-50대, 439-51전, 439-52대 439-53전, 439-54대, 439-57대, 439-58대 439-59대, 439-62대, 439-63대, 439-64전 439-65대, 439-69대, 439-84도, 439-102전	2,641.6	획지선지정	-
		2	426-30대, 426-31대, 426-32대, 426-33대 429-3대, 429-15대, 429-16대, 429-17대 429-22대, 439-4대, 439-5대, 439-10대 439-11대, 439-12대, 439-13대, 439-14대 439-15대, 439-16대, 439-17대, 439-18대 439-49대, 427-4대, 427-18대, 427-19대 427-20대, 427-21대, 427-22대, 427-23대 427-24대, 427-30대, 427-46대, 428-1도 428-2전, 428-3대, 428-4대, 428-5대 428-6대, 428-8대, 428-9대, 428-11대 428-14대, 428-20대, 428-21도, 439-9전	3,712.2	획지선지정	-
		3	426-22대, 426-24대, 426-25대, 426-26대 426-36대, 426-46대, 427-1대, 427-2대 427-3대, 427-11대, 427-12대, 427-13대 427-14대, 427-15대, 427-16대, 427-47대 427-48대, 427-49대, 430-3대, 432-30대	3,048.0	획지선지정	-
변경	D2	1	413-9장, 413-35대, 413-36잡, 413-37대 413-43대, 439-8대, 439-47전, 439-74대 439-76대	2,701.0	획지선지정	-
		2	413-10대	906.3	획지선지정	-
		3	413-13장, 413-49대	2,523.5	획지선지정	-
		4	413-13장, 413-49대	2,294.7	획지선지정	-
변경	D3	1	412-3대, 412-9대, 588-13대, 588-14대	2,521.0	획지선지정	-
		2	588대	1,574.8	획지선지정	-
		3	603-9대, 603-11도, 603-12잡	2,667.5	획지선지정	-
변경	D4	1	3-8대, 3-77도, 3-81종	1,085.0	획지선지정	-
		2	3-76도, 3-83도, 560대	14,340.6	획지선지정	신도림현대 (1994.01.21)
변경	D5	1	565-2대	769.0	획지선지정	-
		2	557-55도, 560-24도, 1261대	3,035.6	획지선지정	일신건영 (1998.07.28)
		3	557-3대, 557-10장, 557-35장, 558-2도 560-24도	2,621.7	획지선지정	-
		4	557-5대, 558-2도, 558-4대	1,236.4	획지선지정	-
		5	557-22대, 557-24대, 557-26전, 557-27대 557-28대, 557-29대, 557-49대, 산1-5임 산2-2임	1,743.0	획지선지정	-
		6	557대, 557-21대, 560-26도	882.2	획지선지정	획지분할가능선에 따라 획지분할 가능
		7	552-8대, 552-9대, 560-16대	493.0	획지선지정	-

※변경 획지면적은 토지대장 면적임

구분	가구 번호	획지 번호	지 번	면적 (㎡)	계획내용	비 고
변경	D6	1	3-76도, 560-7도, 560-10도, 563-25대 570도, 570-160도, 1263대	30,220.8	획지선지정	구로롯데 (1999.11.27)
		2	563-4대, 563-24대, 567-4대, 1263-1대	4,413.5	획지선지정	구로SK뷰 (2006.08.11)
		3	569-6대	145.0	획지선지정	-
		4	569-8대, 569-14대, 569-31대	502.0	획지선지정	-
		5	572-42도, 586-5대	873.0	획지선지정	-
		6	586-11철	588.7	획지선지정	-
		7	567-15철, 567-16철, 567-17철, 567-18철 567-20대, 568-5철, 587-3철, 587-5도	512.2	획지선지정	-
		8	569-9대, 569-13대	351.0	획지선지정	-
변경	E1	1	692대	25,756.8	획지선지정	신도림역주변 특별계획구역Ⅱ 디큐브시티 (2011.07.18)
변경	E2	1	360-15도, 361주	829.0	획지선지정	
		2	640대, 640-1대, 640-2대	4,234.7	획지선지정	
		3	360-1장, 360-5대, 362-54대, 362-60대 362-74대, 362-75대	2,252.0	획지선지정	획지분할가능선에 따라 획지분할 가능
		4	362-33대, 362-76도	242.4	획지선지정	획지분할가능선에 따라 획지분할 가능
변경	E3	1	360-15도, 432-1대	9,166.4	획지선지정	
		2	360-15도, 425-8대, 425-9대, 425-10대 425-15대, 425-52대	471.0	획지선지정	
변경	E4	1	3-25대	22,697.8	획지선지정	신도림역주변 특별계획구역Ⅲ 테크노마트 (2007.12.28)
		2	3-73대, 1267대	43,769.3	획지선지정	
		3	4-5대, 5-1대, 8-17대, 9-3대, 22-5대	812.3	획지선지정	
		4	8-16잡, 22-4대	409.5	획지선지정	
		5	7-11대, 8-12잡, 8-15잡, 22-3대	255.1	획지선지정	
		6	7-10대, 8-14잡, 22-2대	201.6	획지선지정	
		7	7-13대	201.8	획지선지정	
		8	7-12대	200.1	획지선지정	
		9	22-1대	200.1	획지선지정	

※변경 획지면적은 토지대장 면적임

(3) 공동개발지정 및 권장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가구 번호	연번	지 번	면적 (㎡)	계획내용			비 고	
				기정		변경		
A4	1	419-4대, 420-6장, 420-15대, 420-1대	5,520.8	-		공동개발 지정	공동개발 권장	획지에서 공동개발 로 계획
	2	419-50구, 433-3대, 433-6대	373.3	-		공동개발 지정		
B5	1	433-8대, 433-9대	229	공동개발 지정	공동개발 권장	-	획지로 계획	
	2	433-10대, 433-16대, 433-11대 433-12대, 433-41대, 433-29대	639	공동개발 권장				
	3	433-20대, 433-19대, 433-17대	239	공동개발 지정	공동개발 권장			
	4	433-21대, 433-30대, 433-23대	272	공동개발 지정				
	5	433-18대, 433-28대	245	공동개발 지정				
	6	433-24대	314	필지단위	공동개발 권장 (432-4전)			
	7	432-6대, 432-7대, 432-21대 432-19대, 432-20대, 0-999가 432-8대	427	공동개발 지정				
	8	431-6대, 431-7대	305	공동개발 지정				
	9	431-9대, 430-13대, 432-12대, 431-10대, 431-29대	573	공동개발 지정				
	10	432-9대, 432-11대	290	공동개발 권장				

(4) 획지간 공동개발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가구 번호	획지번호	면적 (㎡)	계획내용		비 고
			기정	변경	
A1	A1-1, 2, 3	2,518	획지간 공동개발 권장	-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의 획지간공동개발 원칙적 불허에 따라 계획하지 않음
A4	A4-1, 2	5,832	획지간 공동개발 권장	-	
A5	A5-2, 3, 4, 5, 6	4,904	획지간 공동개발 권장	-	
D1	D1-1, 2, 3, 4	9,382	획지간 공동개발 권장	-	
B7,B8	B7-10 / B8-1, 2, 3	1,960	획지간 공동개발 권장	-	
C1	C1-1, 2, 3, 4	3,803	획지간 공동개발 권장	-	
D6	D6-5, 6, 7	1,917	획지간 공동개발 권장	-	
D6	D6-3, 4, 8	997	획지간 공동개발 권장	-	
E2	E2-3, 4	2,517	획지간 공동개발 권장	-	

2. 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건축물의 용도

(1) 건축물의 불허용도 결정(변경) 조서

기 정			변 경		
구 분		불허용도	구 분	불허용도	비 고
A	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공장 •창고시설	A	•공장 •창고시설 •정신병원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주유소, 액화가스판매소 제외)	—
B	준주거지역	•안마시술소, 안마원 •장례식장 •공장, 창고	B	•안마시술소, 안마원 •장례식장 •공장, 창고시설 •옥외에 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정신병원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주유소, 액화가스판매소 제외)	—
C	특별계획구역, 특별계획가능구역	•변경되는 용도지역 허용용 도 이외의 용도 •일반미관지구내 건축불허용 도 준용	C	•변경되는 용도지역 허용용도 이외 의 용도 •일반미관지구내 건축불허용도 준용	•한국타이어부지 •대성연탄부지 •기산부지 •애경부지 •구로역앞사거리 특별계획가능구역
D	준공업지역	•옥외에 철타이 있는 골프연 습장 •정신병원 •격리병원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축 사 •가축시설 •도축장 •공동주택(기숙사 제외) (※주1 참조) •안마시술소, 안마원 •장례식장	D	•옥외에 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정신병원 •격리병원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축사 •가 축시설 •도축장 •공동주택(기숙사 제외) (※주1 참조) •안마시술소, 안마원 •장례식장	—
—		•용도지역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는 원칙적으로 불허 •미관지구가 지정된 지역은 미관지구내 건축 불허용도를 우선적으로 적용 •불허용도는 용도지역 및 미관지구 또는 지구단위계획 불허용도 중 강화된 규제사항을 적용			

※ 상기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 종류의 각호에 대한 분류임

※ 주1)준공업지역안의 공장부지(이적지 포함)에 공동주택 건립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35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 15조 등 관련규정 준수하여 추진가능

(2) 건축물의 권장용도 결정(변경) 조서

구분		전 총	비 고
기정	1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일반주거지역
	2	•업무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준주거지역
	3	•특별계획구역 권장용도(기결정) •구로역앞 사거리 : 문화시설, 업무/오피스텔, 교육연구시설	특별계획구역
	4	•업무시설 •아파트형 공장/도시형공장 •첨단업종/벤처기업집적시설 •집배송센터(공업관련 유통·물류센터) •교육연구시설(※ 경인로변에 접한 획지에 한하여 권장용도 인정)	준공업지역
변경	1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일반주거지역
	2	•업무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의료시설(불허용도인 정신병원 제외)	준주거지역
	3	•특별계획구역 권장용도(특별계획구역 지침)	특별계획구역
	4	•업무시설 •지식산업센터/도시형공장 •첨단산업 •집배송시설(공업관련 유통·물류센터) •교육연구시설	준공업지역, 구로역앞사거리 특별계획가능구역

※ 상가용도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 종류의 각호에 의한 분류임

※ 지식산업센터/도시형공장, 첨단산업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발전법(산업통상자원부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고시)에 의한 분류임

※ 미관지구내 공장, 창고시설이 불허하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44조 3항에 따라 지정된 건축선으로부터 너비 2미터 이상인 차폐 조경 등 설치후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능함

나. 건축물의 밀도

(1) 건폐율 결정 조서 : 변경없음

(2) 용적률 결정(변경) 조서

구분	종전 용도지역	변경 용도지역		접도조건 및 기타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기정	준공업지역	일반상업지역		—	400%이하	660%이하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용지로 기부채납한 경우 허용용적률 × (1+1.3α) 이내 ※ α = (공공시설제공면적) / (공공시설 제공후 대지면적)
	준공업지역	준주거지역		8m 이상	300%이하	400%이하	
				8m 미만	250%이하	400%이하	
	준공업지역	준공업지역		12m이상	300%이하	400%이하	
				12m미만	250%이하	375%이하	
	준공업지역	일반 주거 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	200%이하	250%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	150%이하	200%이하	
구분	종전 용도지역	변경 용도지역		접도조건 및 기타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변경	준공업지역	일반상업		—	400%이하	660%이하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용지로 기부채납하거나 공공시설 등을 설치 제공하는 경우 허용용적률 × (1+1.3α) 이내 ※ α = (공공시설제공면적) / (공공시설 제공후 대지면적)
	준공업지역	준주거		8m 이상	300%이하	400%이하	
				8m 미만	250%이하	400%이하	
	준공업지역	준공업		—	300%이하	400%이하	
	준공업지역	일반 주거 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	200%이하	250%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	150%이하	200%이하	

※ 공동주택 건축시에는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의 '2-2 공동주택 건립형 (5)용적률계획' 을 따른다.

※ 준공업지역내 공동주택 · 노인복지주택 · 오피스텔 · 다중생활시설(그 밖의 용도와 함께 건축하는 경우 포함) 건립시 용적률은 250%이하로 하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4항 및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2015.12)에 따라 완화 가능하다.

(3) 높이 결정(변경) 조서

구 분	적 용 대 상		높 이 계 획	비 고
기 정	경인로변		80m 이하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적용 ●건축법 제60조 제3항에 의한 도로사선제한 (H=1.5D이하)을 적용하지 않음 ●특별계획구역은 특별계획구역의 지침에 따름 ●특별계획구역의 세부개발계획이 결정된 지역은 결정된 지침에 따름
	간선변(20m~30m)		70m 이하	
	이면부(소필지 지역)		40m~60m 이하	
	구로기계공구 상가		20m 이하	
	학교부지		20m 이하	
	※ 구로기계공구상가는 장래여건변화에 따른 개발시 공공용지 확보 및 지구단위계획운영을 고려하여 20m 이하로 최고높이 규제			
구 분	적 용 대 상		높 이 계 획	비 고
변경	경인로변	준공업지역	80m 이하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건축물 최고높이는 해당 구역안의 건축계획에서 정하는 기준을 따름 ●특별계획(가능) 구역은 그 지침에 따름 ●특별계획구역의 세부개발계획이 결정된 지역은 결정된 지침에 따름
		준주거지역	90m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80m 이하	
	간선변(20m 이상)	준공업지역	70m 이하	
		준주거지역	70m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40m, 60m, 70m, 80m 이하	
	이면부	제3종일반주거지역	40m, 60m 이하	
	구로기계공구상가	준공업지역	20m 이하	
	학교부지	—	20m 이하	
	※ 구로기계공구상가는 장래여건변화에 따른 개발시 공공용지 확보 및 지구단위계획운영을 고려하여 20m 이하로 최고높이 규제			
	※ 특별계획가능구역3, 4의 효력기간 이후 일반지구단위계획 지침 적용시에는 경인로변 준공업지역 높이기준인 80m를 적용			

다. 건축물 배치·형태·색채·건축선

(1) 건축선에 관한 결정 조서

구 분	적 용 지 역	계획내용		비 고
		기정	변경	
건 축 한계선	경인로변 간선도로변(폭 20m 이상)	3m	3m	경인로변, 십자로변 등
	이면도로변	1~2m	1~2m	-
	소규모 필지 밀집지역	2~3m	2~3m	보차혼용통로로 활용
	대형필지	6~8m	6~8m	가로공원, 수림대로 활용
	개발완료 된 도로변(아파트 단지 등)	1~3m	1~3m	

※ 개발완료 된 도로변(아파트 단지 등)에서 동일 가구내 상이한 건축한계선 폭원 일부 조정(획지번호 A5-1, 신도림중학교)

(2) 건축물 형태 및 외관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구 분		계획 내용	비 고
건축물 형 태	저층부 형태	●투시벽 및 투시형 셔터 설치 ●1층 개구부의 높이는 인접건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 ●개구부 없는 벽면의 도로변 노출 금지	
건축물 외 관	재료/색채	●외벽면의 재료, 의장, 색채는 주변 건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	
	야간조명	●폭 20m 이상 도로변에 10층 이상 건축시 상향식 야간조명 설치 권장 ●옥외 설치 미술 장식품의 야간조명 설치 권장	
기 타	옥외광고물, 가로경관	●통합간판 설치 유도 ●서울특별시 구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준수 ●‘디자인서울거리조성’ 설치기준 등 준수로 가로경관개선 유도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발코니 등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야 함	

※ 구체적 조성 및 설치에 관한 사항은 민간부문 시행지침 제8장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에 관한 사항)의 제19조에서 제21조 참조

3.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대지내 공지 및 통로

구 분		비 고
전 면 공 지	• 보도형 전면공지(간선 및 이면도로변) - 폭6m 이상 도로변의 건축선 후퇴부분 공지 - 기존 보도 또는 차도와 단차없이 조성 • 차도형 전면공지(이면도로변) - 폭6m 미만 도로변의 건축선 후퇴부분 공지 - 기존 차도와 단차없이 조성 • 조성 지침 - 담장, 계단, 화단 등 차량 및 보행통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 설치 금지 - 공공부문 보도 포장패턴을 우선 준용 - 인접지역 포장패턴과 조화, 내구성 있는 바닥재료로 포장 - 건축물 신축시 개발주체가 조성	
공 개 공 지	• 전면 도로변 가각부 및 주요 보행결절점 주변에 설치 • 일반인의 접근 및 이용에 편리하고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전면폭과 깊이를 가로에 면하는 전면폭이 더 크게 조성, 녹지율 30% 이상 • 2개소 이내로 설치, 1개소 최소면적 45㎡ 이상 조성 • 최소폭 5m 이상 • 필로티 구조시 유효높이 6m 이상 (위치지정 부분 제외) • 조경, 벤치, 파고라, 시계탑, 분수 등 다중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 • 공공지하공간과 연결한 대지의 공개공지는 침상형구조로의 설치를 권장하며, 계단경사로 등에 의하여 공공지하공간 및 지상공간에서 접근이 용이한 구조로 설치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26조
쌈지형 공 지	• 전면 도로변 가각부 및 도로변에 확보 • 1개소 최소폭 5m 이상, 최소면적 45㎡ 이상 • 인접 대지의 쌈지형 공지와 일체형으로 조성 • 접한 보도와 단차 없이 연속하여 조성 • 필로티 구조시 유효높이 6m 이상	
수림대	• 가로경관 향상 및 보행안전성 확보, 교통소음 저감을 도모 • 접한 보도와 단차없이 조성, 공공부문 보도포장패턴을 우선 준용 • 수림대부분은 교통소음 저감을 위해 상록교목 밀식	2개소
공공 보행통로	• 원활한 보행흐름 유도 및 보행우회 방지	1개소
보차 혼용통로	• 보행 및 차량의 원활한 흐름 유도	7개소

(1) 찜지형공지 (위치 지정)

가구번호		계획내용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A4	A4	2개소	2개소	-
B1	B1	2개소	2개소	1개소 위치변경
B2	B2	1개소	1개소	-
B3	B3	1개소	1개소	-
B4	B4	2개소	2개소	-
B5	B5	1개소	1개소	-
B6	B6	1개소	1개소	-
B7	B7	3개소	3개소	-
C1	C1	1개소	1개소	-
C3	C3	2개소	2개소	2개소 위치변경
C4	C4	3개소	3개소	-
C5	C5	-	1개소	획지계획 조정에 따른 1개소 신설
C6	C6	1개소	-	획지계획 조정에 따른 1개소 폐지
C7	C7	1개소	1개소	-
D1	D1	2개소	2개소	-
D2	D2	3개소	3개소	-
D3	D3	2개소	2개소	-
D5	D5	1개소	-	획지계획 조정에 따른 1개소 폐지
D6	D6	1개소	1개소	-
E1	E1	1개소	1개소	-
E2	E2	1개소	1개소	-
E3	E3	1개소	1개소	-

주) 대지면적 1,500㎡ 이상일 경우 대지면적의 10% 이상 확보

- (2) 수림대 (위치 지정) : 변경없음
 (3) 공공보행통로 (1개소) : 변경없음
 (4) 보차혼용통로 (7개소)

가구번호		계획내용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B5	B5	4~6m	4~6m	일부 변경(동일폭원 확보)
B7	B7	6m	6m	-
C3	C3	-	10m	획지계획 변경에 따른 신설
D1	D1	6m	-	획지계획 변경에 따른 폐지
D2	D2	4m	4m	-
D4	D4	-	10m	획지계획 변경에 따른 신설
D5	D5	6m	-	획지계획 변경에 따른 폐지
D6	D6	6m	6m	-
E2	E2	4m	4m	-

나. 차량동선 및 주차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적용 대상
차량출입불허구간	●간선가로변 원활한 차량소통 도모 및 차량진출입으로 인한 보행공간 단절 최소화	주요 간선 및 이면도로변
공동주차출입구	●연접한 획지의 공동주차출입 유도로 간선가로변 및 이면도로변 가로연속성 단절 최소화	주요 간선 및 이면도로변

(1) 차량 출입불허구간

가구번호	계획내용		비 고
	기 정	변 경	
전체구역	차량출입불허구간	차량출입불허구간	도로위계, 가각부, 현황, 획지계획에 따른 차량출입불허구간 일부 조정

(2) 공동 주차출입구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A5	A5	-	4개소	획지계획 조정에 따라 4개소 신설
B7	B7	1개소	1개소	-
C1	C1	-	2개소	차량출입불허구간 조정에 따라 2개소 신설
C3	C3	2개소	-	획지계획 조정 및 차량출입불허구간 조정에 따라 2개소 폐지
C4	C4	3개소	2개소	차량출입불허구간 조정에 따라 1개소 폐지
C11	C9	1개소	2개소	획지계획 조정에 따라 1개소 신설
D3	D3	1개소	1개소	-
D6	D6	1개소	-	지역현황을 고려하여 1개소 폐지
E4	E4	3개소	3개소	-

다. 경관 및 환경친화 요소

구 분	계획내용	비고
담장 및 옹벽의 처리	•담장 설치시 식재 담장 또는 투시형 담장의 설치를 권장 •옹벽은 자연석, 조경석 등을 사용하여 계단식으로 조성	
자연지반 보존	•저층부의 바닥, 비건폐지 등을 흙, 잔디 등의 자연재료로 조성 •지하부는 인공구조물 미설치 •보도 및 공원 등의 포장의 투장의 자연순환기능이 향상될 수 있도록 투수성 포장을 적극 도입하며 침투 저류시설과 연계조성	
중수도/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및 빗물 이용시설의 설치 권장 •빗물저수조의 설치시 서울특별시 빗물저수조 설치지침을 준용	
옥상녹화	• ‘서울특별시 옥상녹화시스템 설계 및 설계도서 작성지침’ 과 ‘보급형 옥상녹화 조성기법’에 의한 설치 권장	
녹색주차장	•잔디 등 투수성 재료를 사용한 녹색주차장 설치 권장 • ‘서울특별시 녹색주차장 활성화 계획’ 등 서울특별시 기준에 따라 조성	
신재생에너지	•총 건축공사비의 1%이상 신재생에너지 시설비 투자 또는 계획 총 에너지 사용량의 1%이상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할 것을 권장	
에너지절약	• ‘서울특별시 옥상녹화시스템 설계 및 설계도서 작성지침’ 과 ‘보급형 옥상녹화 조성기법’에 의한 설치 권장	

※ 구체적 조성 및 설치에 관한 사항은 민간부문 시행지침 제8장의 제19조에서 제21조 참조

4.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
가. 용적률 인센티브 - 지정

내 용			완 화 기 준	비 고
항 목				
획 지 획	획지단위개발	획지선 준수시	기준용적률 × a	●n=획지내 필지수, ●n=2~3→a=0.08 ●n=4~9→a=0.16 ●n=10이상→a=0.24
공 동 개 발	공동개발 (지정/권장)	준수시	기준용적률 × a	●n=공동개발 필지수, ●n=2~3→a=0.05 ●n=4~9→a=0.1 ●n=10이상→a=0.15
건축물 용 도	권장용도	전층 권장	기준용적률 × (권장용도면적 ÷ 주차장을 제외한 건축면적) × 0.2	
대지내 공 지	공개공지	조성형태 및 규모 준수시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 - 의무면적) ÷ 대지면적] × a	●필로티 구조 a=0.5 ●침상형 구조 a=1.0 ●개방형 구조 a=1.2
	쌈지형공지	조성형태 및 규모 준수시	기준용적률 × (제공면적/대지면적) × a	●필로티 구조 a=0.5 ●개방형 구조 a=1.2
	건축한계선	전면공지	기준용적률 × (제공면적/대지면적) × 1.2	
대지내 통 로	보행통로	공공보행통로 지상형	기준용적률 × (조성면적/대지면적) × a	●필로티 구조 a=0.5 ●개방형 구조 a=1.0
		지하형	기준용적률 × (조성면적/대지면적)	
		보차혼용통로	기준용적률 × (조성면적/대지면적)	
건축물 형 태	옥외광고물 및 통합간판등 설치	준수시	기준용적률 × 0.03	●서울특별시 구로구 옥외광고물 관리조례 적용
	첨단미디어보드 설치	준수시	기준용적률 × 0.03	●민간부문 시행지침 적용
	건축물 미관을 위한 현상설계	준수시	기준용적률 × 0.04	
공동·공용 주차장		준수(설치)시	기준용적률 × 0.05	
환 경 친 화 적 건축물	자연지반 보존	보존시	기준용적률 × (자연지반보존 ÷ 대지면적) × 0.2	
	옥상녹화	준수시	기준용적률 × (녹화면적 ÷ 대지면적) × 0.1	●녹화면적은 대지면적의 20%이내 적용(법정 조경면적 제외)
	중수도시설 설치	준수시	기준용적률 × 0.04	●총 사용수량의 10%이상을 재사용할 수 있는 시설 ●관련법에 의한 의무설치시 미적용
	빗물이용시설 설치	준수시	기준용적률 × 0.04	●빗물저류탱크용량(ton)이 건축면적 × 0.05 또는 대지면적 × 0.02 이상 설치시 적용
	녹색주차장, 투수성 포장	준수시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 ÷ 대지면적)	●기준용적률 × 0.05이내
	신재생에너지	준수시	기준용적률 × 0.05	●건축공사비의 1%이상 또는 총에너지사용량의 1%이상 부담
	에너지절약	1등급(3개항목 중 1개항목 준수시)	기준용적률 × 0.08	●에너지절감율 33.5%이상 ●에너지성능지표 81점이상 ●친환경건축물인증 85점이상
		2등급(3개항목 중 1개항목 준수시)	기준용적률 × 0.05	●에너지절감율 23.5~33.5%미만 ●에너지성능지표 74~81점미만 ●친환경건축물인증 75~85점미만
구분지상권		제공시	기준용적률 × 0.3	

- 주) 1. 허용용적률 산출 : 기준용적률 + ∑(각 항목별 용적률 인센티브) ≤ 허용용적률
 2. 획지계획 인센티브는 획지선을 준수하여 획지단위개발 이행시 부여, 획지간 자발적 공동개발의 경우에는 각 획지별 필지단위개발 인센티브 중 가장 큰 값을 적용
 3. 권장용도는 당해 용도의 바닥면적 합이 건물전체 바닥면적(주차장 면적 제외)의 20%이상인 경우에만 인정
 4. 대지내 공지에 관한 인센티브 부여시 공지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는 중복하여 적용치 않음
 5. 미관지구내 건축한계선 후퇴부분은 인센티브 면적 산정시 제외하며,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시한 건축한계선보다 추가하여 후퇴한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추가로 부여
 6. 지하공공보행통로는 지하철, 지하광장, 지하보도와 연계시에 부여
 7. 인센티브로 제공되는 용적률의 20%는 친환경계획요소 사용시에만 제공되며, 기타의 일반계획요소에 의해 대체 불가함
 8. 특별계획구역은 특별계획구역 지침 및 민간부문 시행지침 제13조의 내용에 따라 별도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함

나. 용적률 인센티브 - 변경

(1) 계획유도 인센티브(유형1)

유형	내용	비고
용도지역	일반상업지역(종전 : 준공업지역)	
위치특성	간선도로(경인로, 구로중앙로)변, 구로역 및 신도림역세권	
기준/허용 용적률	400%이하 / 660%이하	
계획목표	- 권장용도 반드시 준수하여 허용용적률 달성이 가능하도록 계획 - 일반상업기능 외 문화업무 등의 권장용도 유도	

항목		기준	비 고	
획 지 계 획	획지단위개발	기준용적률×a	2~3필지	a=0.08
			4~9필지	a=0.16
			10필지 이상	a=0.24
공 동 개 발	공동개발	기준용적률×a	2~3필지	a=0.08
			4~9필지	a=0.16
			10필지 이상	a=0.24
건축물 용 도	권장용도(전층)	기준용적률×(권장용도면적÷주차장을 제외한 건축면적)×a	a=0.5	
대지내 공 지	공개공지	기준용적률× [(설치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a	- 필로티 구조 a=0.5 - 침상형 구조 a=1.0 - 개방형 구조 a=1.2	
	쌈지형공지	기준용적률× [(조성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a	- 필로티 구조 a=0.5 - 개방형 구조 a=1.0	
	건축한계선	기준용적률× [(조성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a	a=3.0	
대지내 통 로	공공보행통로(지상)	기준용적률×(조성면적/대지면적)×a	- 필로티 구조 a=0.5 - 개방형 구조 a=1.0	
	공공보행통로(지하)		a=1.0	
	보차혼용통로		a=1.0	
건축물 형 태	옥외광고물 및 통합간판등 설치	기준용적률×a	a=0.03	
	첨단미디어보드 설치		a=0.03	
	건축물 미관을 위한 현상설계		a=0.04	
공동주차통로, 공동주차장		기준용적률×a	a=0.05	
구분지상권		기준용적률×a	a=0.3	

- 주) 1. 획지계획 인센티브는 획지선을 준수하여 획지단위개발 이행시 부여
 2. 권장용도는 당해 용도의 연면적이 전체 연면적(주차장 면적 제외)의 20%이상인 경우에만 인정
 3. 대지내 공지·통로에 관한 인센티브 부여시 중복하여 산정하지 않음
 4. 미관지구내 건축한계선중 미관지구로 인한 건축선 후퇴부분과 중복되는 부분은 인센티브 면적 산정에서 제외하며, 그 이상 후퇴한 경우에만 인센티브 부여
 5. 지하공공보행통로는 지하철, 지하광장, 지하보도와 연계시에 부여
 6. 친환경 인센티브가 '허용용적률-기준용적률'의 30/100에 미달하는 경우 계획유도 인센티브로 부족한 인센티브 대체 불가(단, 연면적 3,000㎡ 미만의 소규모 건축물 제외)
 7. 옥외광고물 및 통합간판등 설치, 첨단미디어보드 설치의 서울특별시 구로구 옥외광고물 관리조례 및 민간부문 시행지침 적용

(2) 계획유도 인센티브(유형2)

유형	내용	비고
용도지역	준주거지역(8m 이상)(종전 : 준공업지역)	
위치특성	간선도로(경인로, 십자로, 공원로)변	
기준/허용 용적률	300%이하 / 400%이하	
계획목표	●보차혼용통로 계수 완화로 허용용적률 달성	

항목		기준	비 고	
획 지 계 획	획지단위개발	기준용적률×a	2~3필지	a=0.08
			4~9필지	a=0.16
			10필지 이상	a=0.24
공 동 개 발	공동개발	기준용적률×a	2~3필지	a=0.08
			4~9필지	a=0.16
			10필지 이상	a=0.24
건축물 용 도	권장용도(전층)	기준용적률× (권장용도면적÷주차장을 제외한 건축면적)×a	a=0.2	
대지내 공 지	공개공지	기준용적률× [(설치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a (a는 3이내, 필로티구조시 a는 2이내)	●필로티 구조 a=0.5 ●침상형 구조 a=1.0 ●개방형 구조 a=1.2	
	쌈지형공지	기준용적률× [(조성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a	●필로티 구조 a=0.5 ●개방형 구조 a=1.0	
	건축한계선	기준용적률× [(조성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a	a=1.2	
대지내 통 로	공공보행통로(지상)	기준용적률×(조성면적/대지면적)×a	●필로티 구조 a=0.5 ●개방형 구조 a=1.0	
	공공보행통로(지하)		a=1.0	
	보차혼용통로		a=3.0	
건축물 형 태	옥외광고물 및 통합간판등 설치	기준용적률×a	a=0.03	
	첨단미디어보드 설치		a=0.03	
	건축물 미관을 위한 현상설계		a=0.04	
공동주차통로, 공동주차장		기준용적률×a	a=0.05	
구분지상권		기준용적률×a	a=0.3	

- 주) 1. 획지계획 인센티브는 획지선을 준수하여 획지단위개발 이행시 부여
 2. 권장용도는 당해 용도의 연면적이 전체 연면적(주차장 면적 제외)의 20%이상인 경우에만 인정
 3. 대지내 공지·통로에 관한 인센티브 부여시 중복하여 산정하지 않음
 4. 미관지구내 건축한계선중 미관지구로 인한 건축선 후퇴부분과 중복되는 부분은 인센티브 면적 산정에서 제외하며, 그 이상 후퇴한 경우만 인센티브 부여
 5. 지하공공보행통로는 지하철, 지하광장, 지하보도와 연계시에 부여
 6. 친환경 인센티브가 '허용용적률-기준용적률'의 30/100에 미달하는 경우 계획유도 인센티브로 부족한 인센티브 대체 불가(단, 연면적 3,000㎡ 미만의 소규모 건축물 예외)
 7. 옥외광고물 및 통합간판등 설치, 첨단미디어보드 설치의 서울특별시 구로구 옥외광고물 관리조례 및 민간부문 시행지침 적용

(3) 계획유도 인센티브(유형3)

유형	내용	비고
용도지역	준주거지역(8m 미만)(종전 : 준공업지역)	
위치특성	철도남측 이면도로변, 도로확보 곤란한 지역으로 보차혼용도로 계획	
기준/허용 용적률	250%이하 / 400%이하	
계획목표	●보차혼용도로 및 건축한계선 계수 완화로 허용용적률 달성	

항목		기준	비 고	
획 지 계 획	획지단위개발	기준용적률×a	2~3필지	a=0.08
			4~9필지	a=0.16
			10필지 이상	a=0.24
공 동 개 발	공동개발	기준용적률×a	2~3필지	a=0.08
			4~9필지	a=0.16
			10필지 이상	a=0.24
건축물 용 도	권장용도(전층)	기준용적률× (권장용도면적÷ 주차장을 제외한 건축면적)×a	a=0.2	
대지내 공 지	공개공지	기준용적률× [(설치면적-의무면적)÷ 대지면적]×a	●필로티 구조 a=0.5 ●침상형 구조 a=1.0 ●개방형 구조 a=1.2	
	쌈지형공지	기준용적률× [(조성면적-의무면적)÷ 대지면적]×a	●필로티 구조 a=0.5 ●개방형 구조 a=1.0	
	건축한계선	기준용적률× [(조성면적-의무면적)÷ 대지면적]×a	a=3.0	
대지내 통 로	공공보행통로(지상)	기준용적률×(조성면적/대지면적)×a	●필로티 구조 a=0.5 ●개방형 구조 a=1.0	
	공공보행통로(지하)		a=1.0	
	보차혼용도로		a=3.0	
건축물 형 태	옥외광고물 및 통합간판등 설치	기준용적률×a	a=0.03	
	첨단미디어보드 설치		a=0.03	
	건축물 미관을 위한 현상설계		a=0.04	
공동주차통로, 공동주차장		기준용적률×a	a=0.05	
구분지상권		기준용적률×a	a=0.3	

- 주) 1. 획지계획 인센티브는 획지선을 준수하여 획지단위개발 이행시 부여
 2. 권장용도는 당해 용도의 연면적이 전체 연면적(주차장 면적 제외)의 20%이상인 경우에만 인정
 3. 대지내 공차통로에 관한 인센티브 부여시 중복하여 산정하지 않음
 4. 미관지구내 건축한계선중 미관지구로 인한 건축선 후퇴부분과 중복되는 부분은 인센티브 면적 산정에서 제외하며, 그 이상 후퇴한 경우에만 인센티브 부여
 5. 지하공공보행통로는 지하철, 지하광장, 지하보도와 연계시에 부여
 6. 친환경 인센티브가 '허용용적률-기준용적률'의 30/100에 미달하는 경우 계획유도 인센티브로 부족한 인센티브 대체 불가(단, 연면적 3,000㎡ 미만의 소규모 건축물 제외)
 7. 옥외광고물 및 통합간판등 설치, 첨단미디어보드 설치에 서울특별시 구로구 옥외광고물 관리조례 및 민간부분 시행지침 적용

(4) 계획유도 인센티브(유형4)

유형	내용	비고
용도지역	준공업지역(종전 : 준공업지역)	
위치특성	간선도로(경인로, 구로중앙로)변	
기준/허용 용적률	300%이하 / 400%이하	
계획목표	●권장용도 반드시 준수하여 허용용적률 달성이 가능하도록 계획 ●준공업지역에 적합하도록 산업업무기능의 권장용도 유도	

항목		기준	비 고	
획 지 계 획	획지단위개발	기준용적률×a	2~3필지	a=0.08
			4~9필지	a=0.16
			10필지 이상	a=0.24
공 동 개 발	공동개발	기준용적률×a	2~3필지	a=0.08
			4~9필지	a=0.16
			10필지 이상	a=0.24
건축물 용 도	권장용도(전층)	기준용적률× (권장용도면적÷ 주차장을 제외한 건축면적)×a	a=0.5	
대지내 공 지	공개공지	기준용적률× [(설치면적-의무면적)÷ 대지면적]×a	●필로티 구조 a=0.5 ●침상형 구조 a=1.0 ●개방형 구조 a=1.2	
	쌈지형공지	기준용적률× [(조성면적-의무면적)÷ 대지면적]×a	●필로티 구조 a=0.5 ●개방형 구조 a=1.0	
	건축한계선	기준용적률× [(조성면적-의무면적)÷ 대지면적]×a	a=1.2	
대지내 통 로	공공보행통로(지상)	기준용적률× (조성면적/대지면적)×a	●필로티 구조 a=0.5 ●개방형 구조 a=1.0	
	공공보행통로(지하)		a=1.0	
	보차혼용통로		a=1.6	
건축물 형 태	옥외광고물 및 통합간판등 설치	기준용적률×a	a=0.03	
	첨단미디어보드 설치		a=0.03	
	건축물 미관을 위한 현상설계		a=0.04	
공동주차통로, 공동주차장		기준용적률×a	a=0.05	
구분지상권		기준용적률×a	a=0.3	

- 주) 1. 획지계획 인센티브는 획지선을 준수하여 획지단위개발 이행시 부여
 2. 권장용도는 당해 용도의 연면적이 전체 연면적(주차장 면적 제외)의 20%이상인 경우에만 인정
 3. 대지내 공지·통로에 관한 인센티브 부여시 중복하여 산정하지 않음
 4. 미관지구내 건축한계선중 미관지구로 인한 건축선 후퇴부분과 중복되는 부분은 인센티브 면적 산정에서 제외하며, 그 이상 후퇴한 경우만 인센티브 부여
 5. 지하공공보행통로는 지하철, 지하광장, 지하보도와 연계시에 부여
 6. 친환경 인센티브가 '허용용적률-기준용적률'의 30/100에 미달하는 경우 계획유도 인센티브로 부족한 인센티브 대체 불가(단, 연면적 3,000㎡ 미만의 소규모 건축물 예외)
 7. 옥외광고물 및 통합간판등 설치, 첨단미디어보드 설치의 서울특별시 구로구 옥외광고물 관리조례 및 민간부문 시행지침 적용

(5) 계획유도 인센티브(유형5)

유형	내용	비고
용도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종전 : 준공업지역)	
위치특성	간선도로(경인로, 십자로, 공원로) 및 이면도로변	
기준/허용 용적률	200%이하 / 250%이하	
계획목표	●계획의 일관성유지를 위해 허용용적률 달성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정 계수 유지(쌈지형공지 개방형은 필로티형의 2배로 조정)	

항목		기준	비 고	
획 지 계 획	획지단위개발	기준용적률×a	2~3필지	a=0.08
			4~9필지	a=0.16
			10필지 이상	a=0.24
공 동 개 발	공동개발	기준용적률×a	2~3필지	a=0.08
			4~9필지	a=0.16
			10필지 이상	a=0.24
건축물 용 도	권장용도(전층)	기준용적률× (권장용도면적 ÷ 주차장을 제외한 건축면적) × a	a=0.2	
대지내 공 지	공개공지	기준용적률× [(설치면적-의무면적) ÷ 대지면적] × a	●필로티 구조 a=0.5 ●침상형 구조 a=1.0 ●개방형 구조 a=1.2	
	쌈지형공지	기준용적률× [(조성면적-의무면적) ÷ 대지면적] × a	●필로티 구조 a=0.5 ●개방형 구조 a=1.0	
	건축한계선	기준용적률× [(조성면적-의무면적) ÷ 대지면적] × a	a=1.2	
대지내 통 로	공공보행통로(지상)	기준용적률× (조성면적/대지면적) × a	●필로티 구조 a=0.5 ●개방형 구조 a=1.0	
	공공보행통로(지하)		a=1.0	
	보차혼용통로		a=1.0	
건축물 형 태	옥외광고물 및 통합간판등 설치	기준용적률×a	a=0.03	
	첨단미디어보드 설치		a=0.03	
	건축물 미관을 위한 현상설계		a=0.04	
공동주차통로, 공동주차장		기준용적률×a	a=0.05	
구분지상권		기준용적률×a	a=0.3	

- 주) 1. 획지계획 인센티브는 획지선을 준수하여 획지단위개발 이행시 부여
 2. 권장용도는 당해 용도의 연면적이 전체 연면적(주차장 면적 제외)의 20%이상인 경우에만 인정
 3. 대지내 공지·통로에 관한 인센티브 부여시 중복하여 산정하지 않음
 4. 미관지구내 건축한계선중 미관지구로 인한 건축선 후퇴부분과 중복되는 부분은 인센티브 면적 산정에서 제외하며, 그 이상 후퇴한 경우만 인센티브 부여
 5. 지하공공보행통로는 지하철, 지하광장, 지하보도와 연계시에 부여
 6. 친환경 인센티브가 '허용용적률-기준용적률'의 30/100에 미달하는 경우 계획유도 인센티브로 부족한 인센티브 대체 불가(단, 연면적 3,000㎡ 미만의 소규모 건축물 예외)
 7. 옥외광고물 및 통합간판등 설치, 첨단미디어보드 설치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옥외광고물 관리조례 및 민간부문 시행지침 적용

(6) 친환경 인센티브(공통)

계획목표	•녹색건축, 에너지효율등급, 신재생에너지 : 관련 지침 변경에 따라 등급별 계수 차등화하여 상위등급 인증 유도 •중수도, 빗물관리시설, 옥상녹화, 자연지반보존, 녹색주차장 : 기정 최대계수 적용하여 친환경 건축물 유도
------	--

항목		기준	비 고
녹색건축 인증	최우수(그린 1등급)	기준용적률×a	a=0.06
	우수(그린 2등급)	기준용적률×a	a=0.04
	우량(그린 3등급)	기준용적률×a	a=0.02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에너지 효율 1등급	기준용적률×a	a=0.04
	에너지 효율 2등급	기준용적률×a	a=0.03
	에너지 효율 3등급	기준용적률×a	a=0.02
신재생 에너지 보급확대	신재생 에너지 공급률 20% 초과	기준용적률×a	a=0.06
	신재생 에너지공급률 15%~20%	기준용적률×a	a=0.05
	신재생 에너지 공급률 10%~15%	기준용적률×a	a=0.04
	신재생 에너지 공급률 5%~10%	기준용적률×a	a=0.03
	신재생 에너지 공급률 3%~5%	기준용적률×a	a=0.02
중수도시설 설치		기준용적률×a	a=0.04
빗물관리시설 설치		기준용적률×a	a=0.04
옥상녹화		기준용적률×(녹화면적÷대지면적)×a	a=0.1
자연지반보존		기준용적률×(보존면적÷대지면적)×a	a=0.2
녹색주차장		기준용적률×(설치면적÷대지면적)×a	a=0.2

- 주) 1. 녹색건축 인증,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녹색건축물 인증 기준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기준 준용,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에 따른 의무 대상 준수
 2. 중수도시설 설치 : 총 사용량의 10% 이상 처리시설 설치시 적용, 관련법상 의무시설인 경우 제외
 3. 빗물관리시설 설치 : 침투량(ton/hr)의 합이 건축면적×0.05 또는 대지면적×0.02 이상이 되도록 설치
 4. 옥상녹화 : 법정 조경으로 산입된 면적 제외, 녹화면적은 대지면적 30%까지만 허용
 5. 자연지반 보존 : 지하구조물 미설치시

5.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가. 특별계획(가능)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①	신도림역 주변 특별계획구역	한국타이어부지 (1-1블록)	신도림동 337번지 일대	23,610	-	23,610	대우미래 사랑시티
			한국타이어부지 (1-2블록)	신도림동 646번지 일대 (한천길 37 일대)	58,001	-	58,001	대림아파트
			대성연탄부지	신도림동 360-51번지 일대 (경인로 271 일대)	35,239.2	-	35,239.2	디큐브 시티
			기산부지	구로동 3-25번지 일대	35,713	-	35,713	테크노 마트
	②	구로역 주변 특별계획구역	애경백화점부지	구로동 573,501번지 일대 (구로큰길 31, 41 일대)	29,919	-	29,919	애경백화점, GS자이
기정	③	구로역앞 사거리 특별계획구역	구로본동 598-14번지 일대 (경인로 377-1 일대)	19,073	감)19,073	-	-	-
변경	③	구로역앞 사거리 특별계획가능구역3	구로동 602-5번지 일대 (경인로 558-6 일대)	-	증)20,287	10,551	-	-
	④	구로역앞 사거리 특별계획가능구역4	구로동 596-6번지 일대 (경인로 54길 15 일대)			9,736	-	-

나. 특별계획(가능)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적 (㎡)	변경사유
기정	③	구로역앞 사거리 특별계획구역	구로본동 598-14번지 일대 (구로구 경인로 377-1 일대)	19,073	기결정
변경	③	구로역앞 사거리 특별계획가능구역3	구로동 602-5번지 일대 (경인로 558-6 일대)	10,551	장기 미시행된 기존 특별계획구역으로 구 로역세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유도 및 관리 방안이 필요한 지역(지적선으로 구역경계 조정 및 구역면적 재산정 : 증 1,214㎡)
	④	구로역앞 사거리 특별계획가능구역4	구로동 596-6번지 일대 (경인로 54길 15 일대)	9,736	

※ 특별계획가능구역 효력기간은 3년으로 하며, 주민요청(대상 토지 면적의 1/2 이상 동의) 및 입안권자(구청장 등)가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위원회 자문(자치구 포함)을 거쳐 2년 이내(총 5년 범위 이내)에서 효력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다. 구로역앞 사거리 특별계획가능구역3

(1) 구역 개요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비 고
구로역앞 사거리 특별계획가능구역3	구로동 602-5번지 일대 (경인로 558-6 일대)	10,551	

(2) 특별계획구역 지침(기정)

구 분	계 획 내 용	
토지이용	●구로 역세권 활성화 및 경인로변으로 상업·업무·문화복합용도	
용도지구	●일반미관지구(구로큰길변 12m) ●최고고도지구	
공공시설	도 로	●도로 확폭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 광로3-2(경인로) : 폭원 45m → 45~48m (일부구간 폭원변경) 경인로변의 교통환경개선을 위하여 대상지 내측으로 폭원3m 이상의 완화차로(가감속차로) 조성
	광 장	●구로역사 및 북구로광장 등의 연계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본 특별계획구역내 동측에 광장을 조성하여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 지정위치 : 구로동 602-5 일대 - 최소면적 : 1,500㎡이상
건축물 용 도	불허용도	●일반미관지구내 건축불허용도 준용
	권장용도	●문화시설 ●업무/오피스텔 ●교육연구시설
건축물 밀 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준공업지역 준치시 - 기준/허용 : 300% / 400% 이하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 × (1+1.3α) ※ α :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공공시설부지 제공 후 대지면적 ※ 특별계획구역의 용적률 인센티브는 민간부문 시행 지침 제13조의 내용에 따라 별도 적용
	최고높이	●120m 이하 [도로사선제한 (H=1.5D 이하) 배제]
기 타 사항에 관 한 계 획	건축한계선	●경인로변 : 10m ●광장변 및 이면도로변 : 2m
	대지내 공지	●쌈지형 공지 1개소 (경인로 및 동측도로 교차부 위치지정)
	차량출입 불허구간	●경인로변, 구로큰길변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구역내 개발		●특별계획구역 전체 통합개발 및 단위 획지별 개발 가능
정비(사업)방식		●구로역세권내 경인로변의 노후 및 낙후된 지역의 정비 및 낙후된 지역의 정비 및 활성화 유도를 위해 향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시에 예정지구로 지정받을 경우 도시환경정비사업 권장 ●일반 민영개발 등

- 주1) 특별계획구역 지침에서 제시한 도로 및 광장 등은 지구단위(세부개발)계획 수립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며, 공공시설의 설치 및 조성은 사업시행시 원인자(개발주체)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함.
 주2) 특별계획구역내 기반시설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조성후 기부채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주3) 특별계획구역 전체를 하나로 통합개발 할 경우는 도시계획시설도로(소1-32)를 폐지하고 광장 또는 공원, 공공보행통로로 대체할 수 있도록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융통성 부여.
 주4) 본 대상지 인접적 여건상 영등포부도심권역 및 구로역세권으로서 서남권중심의 역세권활성화 핵심지역으로 역할수행을 위한 도시기능 강화와 경쟁력을 감안, 향후 별도의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용도지역변경을 검토하고, 그에 따른 용적률은 관련법규 및 지침을 적용.

(3) 특별계획가능구역 지침(효력기간 내) (변경)

구 분		계 획 내 용
토지이용		●산업 중심의 구로 역세권 활성화를 위해 산업·업무용지로 활용
용도지역		●준공업지역
용도지구		●일반미관지구[경인로변 20m, 구로중앙로변(구로큰길변) 12m] ●최고고도지구
공공시설	광 장	●구로역사 및 북구로광장 등의 연계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본 특별계획구역내 동측에 광장을 조성하여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 지정위치 : 구로동 602-5 일대 - 최소면적 : 1,500㎡이상
건축물 용 도	불허용도	●지역지구내 건축불허용도 준용
	권장용도	●업무시설 ●지식산업센터/도시형공장 ●첨단산업 ●집배송시설(공업관련 유통·물류센터) ●교육연구시설
건축물 밀 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기준/허용 : 300% / 400% 이하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 × (1+1.3α) ※ α :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공공시설부지 제공 후 대지면적 ※ 특별계획구역의 용적률 인센티브는 민간부문 시행 지침 제13조의 내용에 따라 별도 적용
	최고높이	●120m 이하
기 타 사항에 관 한 계 획	건축한계선	●경인로변 : 10m(도로 3m, 보도 7m) ●광장변 및 이면도로변 : 2m
	차량출입 불허구간	●경인로변, 구로중앙로변(구로큰길변)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정비(사업)방식		●서울시 '준공업지역 재생과 활성화 방안' 에서 분류한 유형에 적합하도록 정비 ●추후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받을 경우 도시환경정비사업 권장 ●일반 민영개발 등

※ 특별계획구역 지침에서 제시한 도로 및 광장은 지구단위(세부개발)계획 수립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며, 공공시설의 설치 및 조성은 사업시행시 원인가(개발주체)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함.

※ 특별계획구역내 기반시설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조성후 기부채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본 대상지 입지적 여건상 영등포부도심권역 및 구로역세권으로서 서남권중심의 역세권활성화 핵심지역으로 역할수행을 위한 도시기능강화와 경쟁력을 감안, 향후 별도의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용도지역변경을 검토하고, 그에 따른 용적률은 관련법규 및 지침을 적용.

(4) 용적률 인센티브 운용기준

구 분		완화조건	인센티브		비 고
			기정	변경	
건축물용도	권장용도	지상층 연면적의 50% 이상 도입시	20%	20%	-
대지내공지	쌈지형공지	조성형태 및 규모 준수시	20%	20%	지구단위계획 시행 지침 제17조 준수시
	건축한계선	전면공지	20%	10%	-
건축물형태	첨단미디어 보드 설치	준수시	10%	10%	-
	건축물미관을 위한 현상설계	준수시	10%	10%	-
환경친화적건축물	자연지반 보존 등	준수시	20%	30%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준용

- 주) 1. 허용용적률 산출 : 기준용적률 + $\sum$ (각 항목별 용적률 인센티브) $\leq$ 허용용적률
 2. 인센티브로 제공되는 용적률의 30%는 친환경계획요소 사용시에만 제공되며, 기타의 일반계획요소에 의해 대체 불가함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의 친환경 인센티브 의무비율이 허용용적률과 기준용적률 차이의 30/100으로 변경)
 3.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 $\times (1 + 1.3\alpha)$ 이내
 ※ α :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공공시설부지 제공 후 대지면적
 4. 대지면적 1,500㎡ 이상의 필지는 대지면적의 10% 이상을 쌈지형공지로 조성

(5) 일반 지구단위계획 지침(효력기간 후)

- 특별계획가능구역 효력기간(3년 또는 5년) 후에는 '일반 지구단위계획 지침'을 적용한다. 단, 용적률은 본 지구단위계획의 유형별 인센티브(유형4) 적용한다.
- 일반 지구단위계획 지침 적용시 미개설된 도로의 경우 해당 획지의 사업시행자가 전면도로를 부담한다.

라. 구로역앞 사거리 특별계획가능구역4

(1) 구역 개요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비 고
구로역앞 사거리 특별계획가능구역4	구로동 596-6번지 일대 (경인로 54길 15 일대)	9,736	

(2) 특별계획구역 지침(기정)

구 분	계 획 내 용	
토지이용	●구로 역세권 활성화 및 경인로변으로 상업·업무·문화복합용도	
용도지구	●일반미관지구(구로큰길변 12m) ●최고고도지구	
공공시설	도 로	●도로 확폭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 광로3-2(경인로) : 폭원 45m → 45~48m (일부구간 폭원변경) 경인로변의 교통환경개선을 위하여 대상지 내측으로 폭원3m 이상의 완화차로(가감속차로) 조성
	광 장	●구로역사 및 북구로광장 등의 연계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본 특별계획구역내 동측에 광장을 조성하여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 지정위치 : 구로동 602-5 일대 - 최소면적 : 1,500㎡이상
건축물 용 도	불허용도	●일반미관지구내 건축불허용도 준용
	권장용도	●문화시설 ●업무/오피스텔 ●교육연구시설
건축물 밀 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준공업지역 존치시 - 기준/허용 : 300% / 400% 이하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 × (1+1.3α) ※ α :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공공시설부지 제공 후 대지면적 ※ 특별계획구역의 용적률 인센티브는 민간부문 시행 지침 제13조의 내용에 따라 별도 적용
	최고높이	●120m 이하 [도로사선제한 (H=1.5D 이하) 배제]
기 타 사항에 관 한 계 획	건축한계선	●경인로변 : 10m ●광장변 및 이면도로변 : 2m
	대지내 공지	●쌈지형 공지 1개소 (경인로 및 동측도로 교차부 위치지정)
	차량출입 불허구간	●경인로변, 구로큰길변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구역내 개발		●특별계획구역 전체 통합개발 및 단위 획지별 개발 가능
정비(사업)방식		●구로역세권내 경인로변의 노후 및 낙후된 지역의 정비 및 낙후된 지역의 정비 및 활성화 유도를 위해 향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시에 예정지구로 지정받을 경우 도시환경정비 사업 권장 ●일반 민영개발 등

- 주1) 특별계획구역 지침에서 제시한 도로 및 광장 등은 지구단위(세부개발)계획 수립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며, 공공시설의 설치 및 조성은 사업시행시 원인자(개발주체)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함.
- 주2) 특별계획구역내 기반시설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조성후 기부채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주3) 특별계획구역 전체를 하나로 통합개발 할 경우는 도시계획시설도로(소1-32)을 폐지하고 광장 또는 공원, 공공보행통로로 대체할 수 있도록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융통성 부여
- 주4) 본 대상지 입지적 여건상 영등포부도심권역 및 구로역세권으로서 서남권중심의 역세권활성화 핵심지역으로 역할수행을 위한 도시기능 강화와 경쟁력을 감안, 향후 별도의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용도지역변경을 검토하고, 그에 따른 용적률은 관련법규 및 지침을 적용.

(3) 특별계획가능구역 지침(효력기간 내) (변경)

구 분	계 획 내 용	
토지이용	●산업 중심의 구로 역세권 활성화를 위해 산업·업무용지로 활용	
용도지역	●준공업지역	
용도지구	●일반미관지구[경인로변 20m] ●최고고도지구	
건축물 용 도	불허용도	●지역지구내 건축불허용도 준용
	권장용도	●업무시설 ●지식산업센터/도시형공장 ●첨단산업 ●집배송시설(공업관련 유통·물류센터) ●교육연구시설
건축물 밀 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기준/허용 : 300% / 400% 이하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 × (1+1.3α) ※ α :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공공시설부지 제공 후 대지면적 ※ 특별계획구역의 용적률 인센티브는 민간부문 시행 지침 제13조의 내용에 따라 별도 적용
	최고높이	●120m 이하
기 타 사항에 관 한 계 획	건축한계선	●경인로변 : 10m ●이면도로변 : 2m
	대지내 공지	●쌈지형 공지 1개소 (구역서측 경인로변 위치지정)
	차량출입 불허구간	●경인로변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정비(사업)방식		●서울시 ‘준공업지역 재생과 활성화 방안’ 에서 분류한 유형에 적합하도록 정비 ●추후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받을 경우 도시환경정비사업 권장 ●일반 민영개발 등

※ 특별계획구역 지침에서 제시한 도로는 지구단위(세부개발)계획 수립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며, 공공시설의 설치 및 조성은 사업시행시 원인가(개발주체)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함.

※ 특별계획구역내 기반시설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조성후 기부채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본 대상지 입지적 여건상 영등포부도심권역 및 구로역세권으로서 서남권중심의 역세권활성화 핵심지역으로 역할수행을 위한 도시기능강화와 경쟁력을 감안, 향후 별도의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용도지역변경을 검토하고, 그에 따른 용적률은 관련법규 및 지침을 적용.

(4) 용적률 인센티브 운용기준

구 분		완화조건	인센티브		비 고
			기정	변경	
건축물용도	권장용도	지상층 연면적의 50% 이상 도입시	20%	20%	-
대지내공지	쌈지형공지	조성형태 및 규모 준수시	20%	20%	지구단위계획 시행 지침 제17조 준수시
	건축한계선	전면공지	20%	10%	-
건축물형태	첨단미디어 보드 설치	준수시	10%	10%	-
	건축물미관을 위한 현상설계	준수시	10%	10%	-
환경친화적건축물	자연지반 보존 등	준수시	20%	30%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준용

- 주) 1. 허용용적률 산출 : 기준용적률 + $\sum$ (각 항목별 용적률 인센티브) $\leq$ 허용용적률
 2. 인센티브로 제공되는 용적률의 30%는 친환경계획요소 사용시에만 제공되며, 기타의 일반계획요소에 의해 대체 불가함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의 친환경 인센티브 의무비율이 허용용적률과 기준용적률 차이의 30/100으로 변경)
 3.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 $\times (1 + 1.3\alpha)$ 이내
 ※ α :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공공시설부지 제공 후 대지면적
 4. 대지면적 1,500㎡ 이상의 필지는 대지면적의 10% 이상을 쌈지형공지로 조성

(5) 일반 지구단위계획 지침(효력기간 후)

- 특별계획가능구역 효력기간(3년 또는 5년) 후에는 '일반 지구단위계획 지침'을 적용한다. 단, 용적률은 본 지구단위계획의 유형별 인센티브(유형4) 적용한다.
- 일반 지구단위계획 지침 적용시 미개설된 도로의 경우 해당 획지의 사업시행자가 전면도로를 부담한다.

④ 경미한 사항에 관한 계획

1. 경미한 사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계 획 내 용		비 고
기 정 주 ¹⁾	변 경	
대지의 분할·교환에 관한 사항	대지의 분할·교환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최대개발규모 이내에서의 획지간 공동개발	-	획지간 공동개발 계획하지 않음
-	획지분할 가능선에 의한 획지계획 변경	신설
대지내 공지(전면공지 제외)의 위치변경 및 조성 방법 변경	대지내 공지(전면공지 제외)의 위치변경 및 조성 방법 변경	변경없음
수종·조경시설물 등의 설치계획의 변경	수종·조경시설물 등의 설치계획의 변경	변경없음
구역과 연결한 필지의 공동개발 (지구단위계획에 따를 것을 전제함)	구역과 연결한 필지의 공동개발 (지구단위계획에 따를 것을 전제함)	변경없음
대지내 통로 (공공보행통로 및 보차혼용통로)의 성격·설계계획(위치변경 및 신규설치)	대지내 통로(공공보행통로 및 보차혼용통로)와 공 동주차출입구의 성격·설계계획(위치 변경 및 신규 설치, 획지분할가능선 이행여부에 따라 불필요한 보차혼용통로 및 공동주차출입구 등의 폐지)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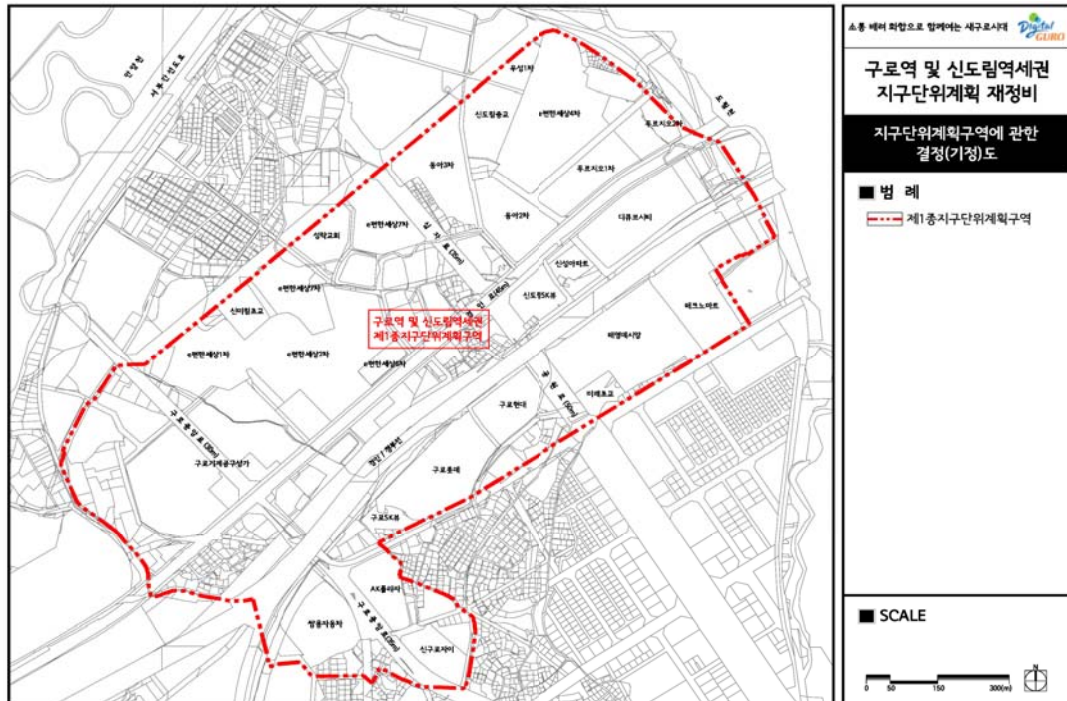
주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191호, 「111개구역에 대한 제1종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사항 일괄 결정」 사항 반영

III. 지형도면 등 관계도면 : 생략(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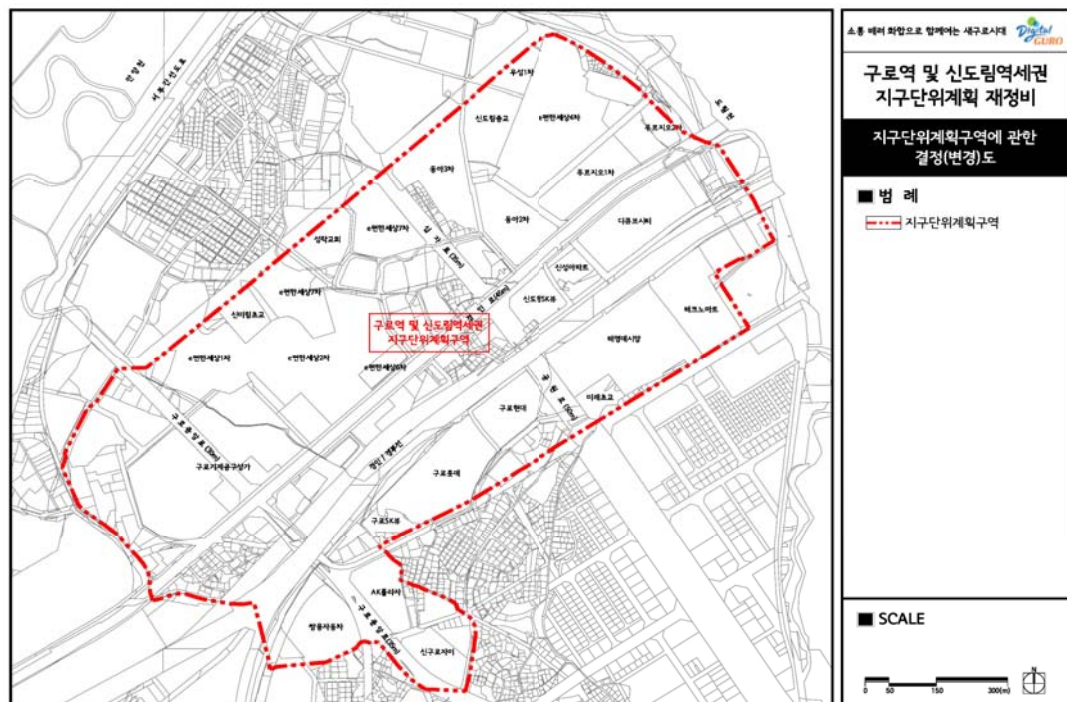
IV.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구로역 및 신도림역세권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서 참조 : 생략(열람
장소에 비치된 도면과 같음)

V.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02-2133-8384), 구로구 도시계획과(☎02-860-2957)에
관련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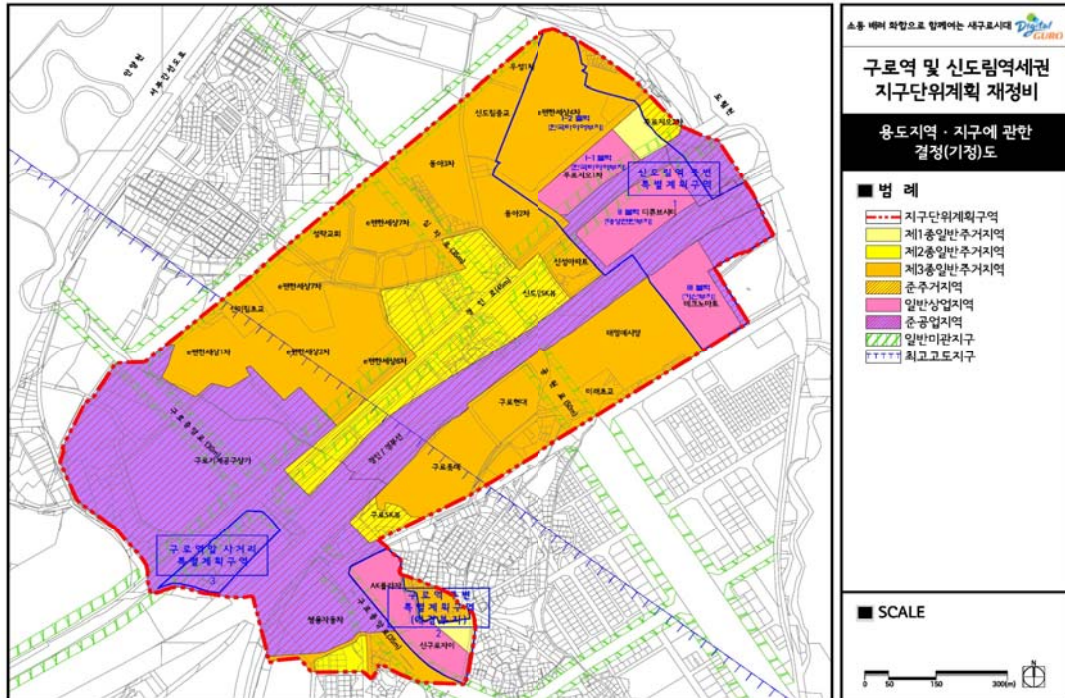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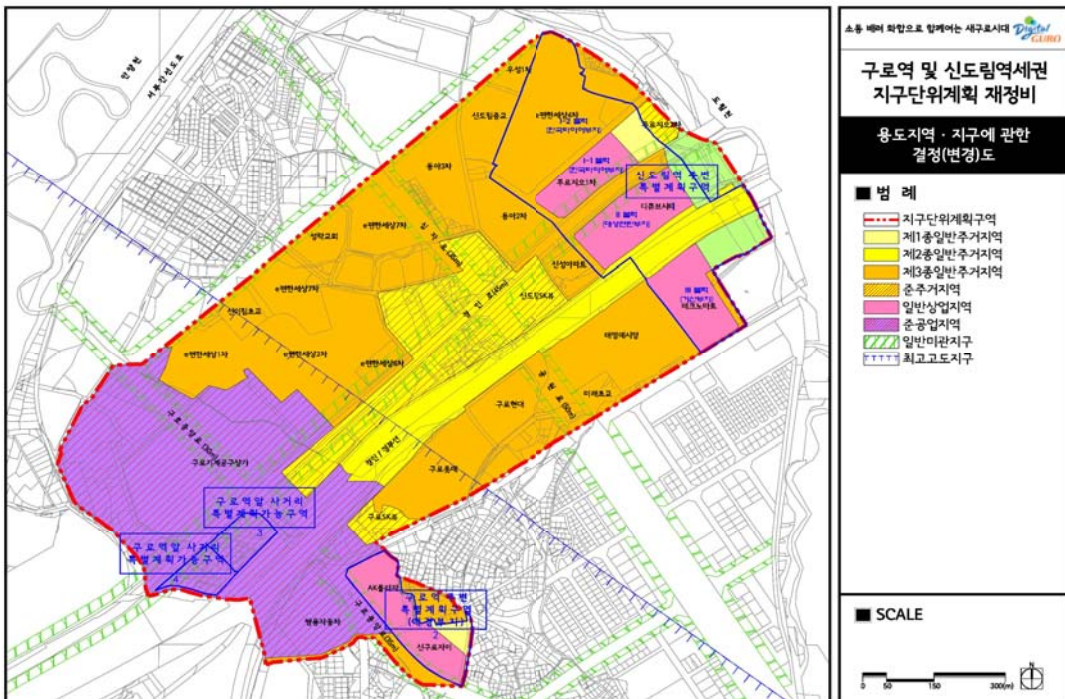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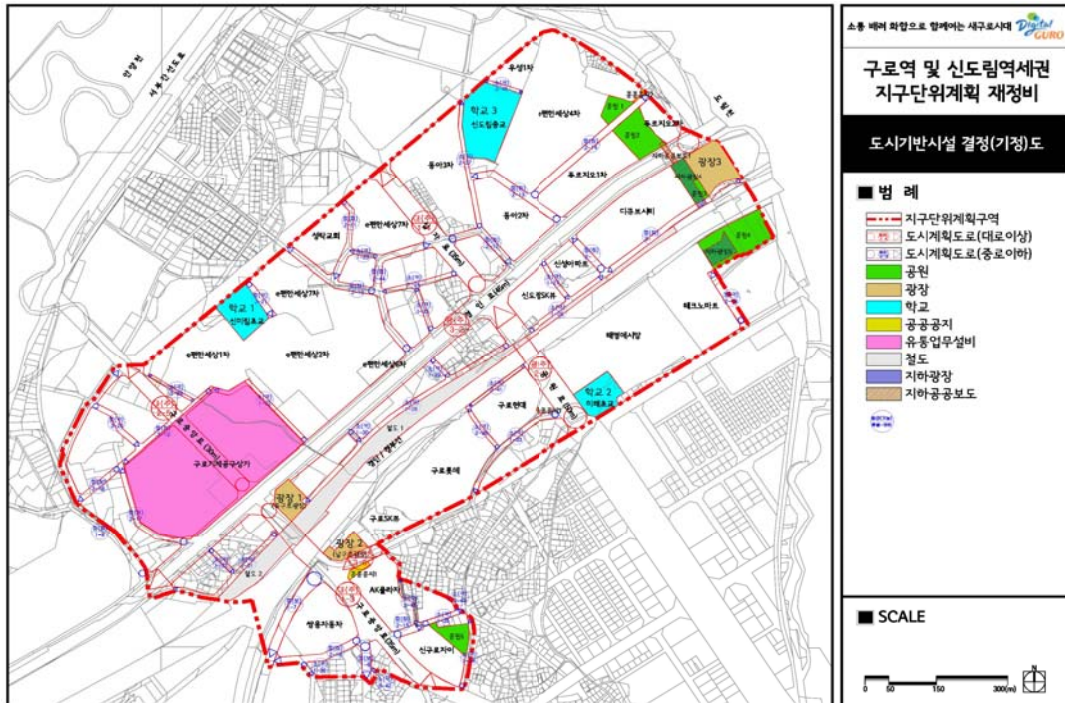
[용도지역 · 지구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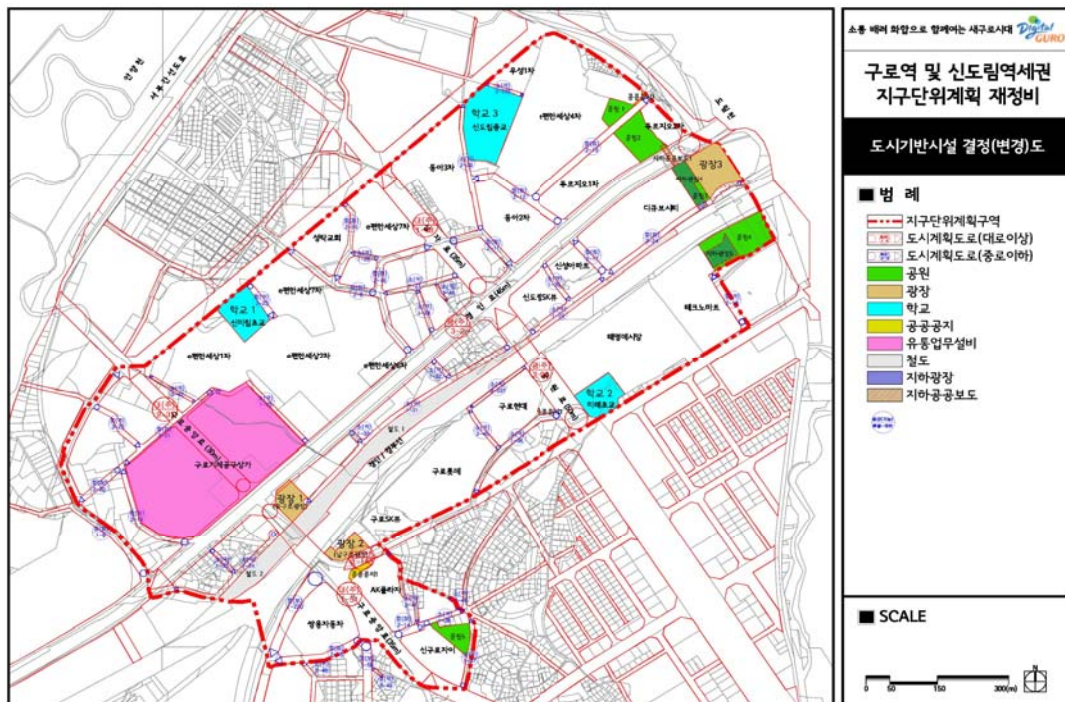
[용도지역 · 지구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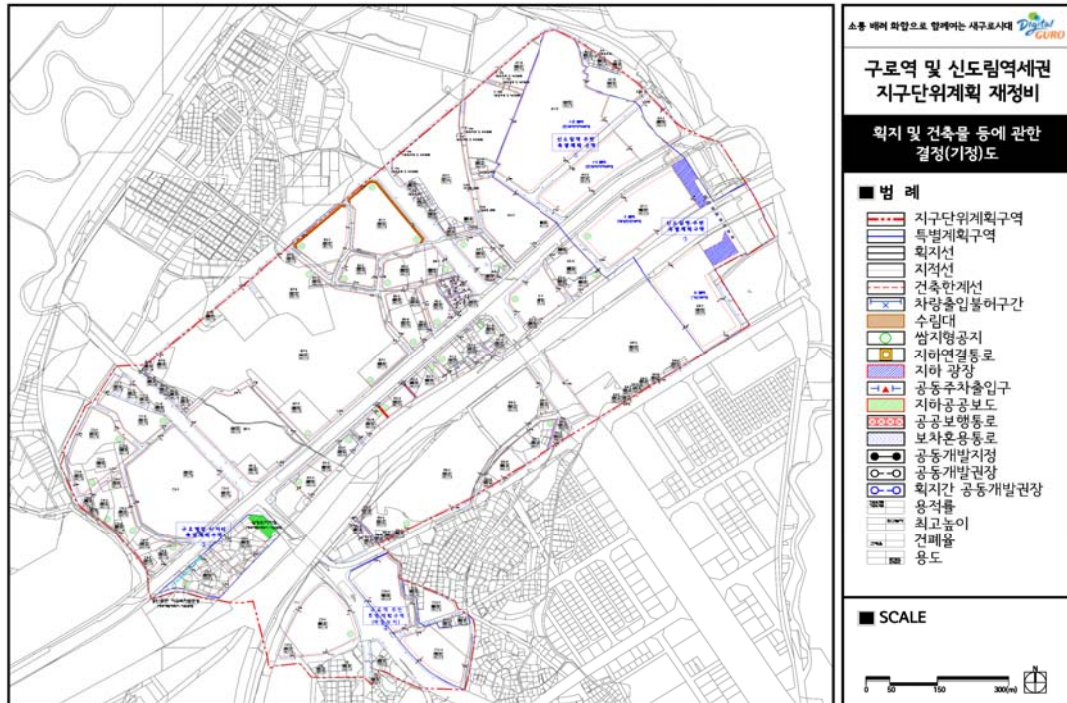
[도시기반시설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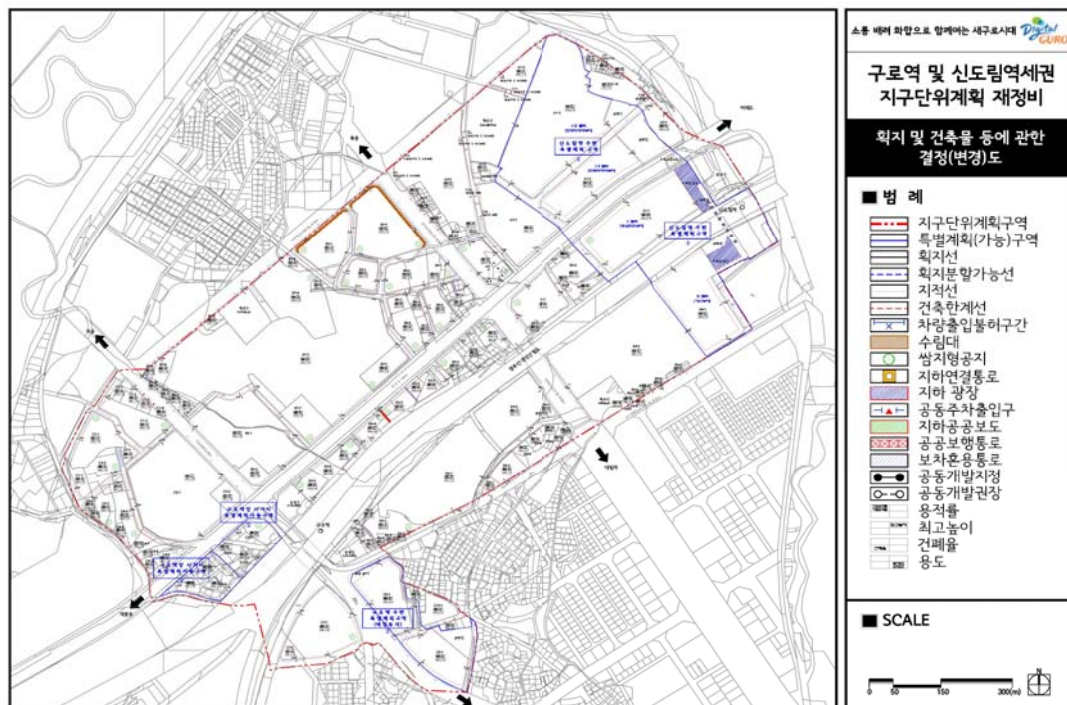
[도시기반시설 결정(변경)도]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기정)도]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391호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 · 지형도면 고시(서강대학교)

건설부고시 제229호(1983.7.6)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이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218호(2015.7.30)로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기본계획)이 변경 결정된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동 1-1 일대 서강대학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동법시행령 제25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 결정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 합니다.

2016년 12월 1일

서울특별시장

1. 변경결정 취지

- 현황도로 및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이용되는 국·공유지 일부를 학교시설에서 제척(854㎡)하는 사항임.

2.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

1)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초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변경	학교	대 학 (서강대학교)	서울시 마포구 신수동 1-1 일대	158,883	(감) 854	158,029	건설부고시 제229호 (1983.7.6)	

2)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 조서

(1) 구역계획

구 분	명 칭	연 번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관 리	일반관리구역	①	38,977	-	38,977	
		②	57,836	(감) 670	57,166	국·공유지 해제에 따른 면적감소
		③	13,051	(감) 23	13,028	국·공유지 해제에 따른 면적감소
	계		109,864	(감) 693	109,171	

구 분	명 칭	연 번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유지	상징경관구역	④	9,307	(감) 161	9,146	국·공유지 해제에 따른 면적감소
	계		9,307	(감) 161	9,146	
	외부활동구역	⑤	17,420	-	17,420	
	계		17,420	-	17,420	
보존	녹지보존구역	⑥	22,292	-	22,292	
	계		22,292	-	22,292	
합 계			158,883	(감) 854	158,029	

(2) 밀도계획(건폐율)

구 분	밀도산정 기준면적 (㎡)		건 폐 율 (%)					비 고
			법정건폐율		사용건폐율		관리건폐율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캠퍼스 전체	158,883	158,029	45.61	45.54	30.74	28.08	32.14	

※ 사용건폐율의 기정은 현황, 철거, 장래계획을 포함하였으나, 금회변경은 현황건축물로 산정함.

(3) 구역별 밀도계획(용적률·높이)

구역 구분	용 적 률 (%)							관 리 높 이 (m)	비 고
	법정용적률		사용용적률		이전용적률		관리 용적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①	155.56	155.56	107.00	92.81	-	-	110.00	•지표로부터 최대 +20m,24m,28m이하 (5층,6층,7층이하)	일반관리 구역
②	207.84	205.59	247.10	208.38	+42.16	+44.41	250.00	•지표로부터 최대 +20m,28m이하 (5층,7층이하) •지표로부터 최대 +49m,54m,55m이하 (해발고도 67m,72m,73m이하)	일반관리 구역
③	199.43	199.07	193.44	193.78	-	-	195.00	•지표로부터 최대 +28m이하 (7층이하) •지표로부터 최대 +48m이하 (해발고도 72m이하)	일반관리 구역
④	193.19	189.55	-	-	-	-	-	-	상징경관 구역
⑤	168.83	168.83	0.74	0.74	-	-	1.00	•지표로부터 최대 +6m이하(일부) (해발고도 40m이하)(일부)	외부활동 구역
⑥	150.00	150.00	-	-	-120.00	-124.91	-	-	녹지보존 구역

※ 사용용적률의 기정은 현황, 철거, 장래계획을 포함하였으나, 금회변경은 현황건축물로 산정함.

※ 용적률 산정 시, 비오톨1등급지 1,967㎡ 제외

※ 구역별 높이계획 : 고시도면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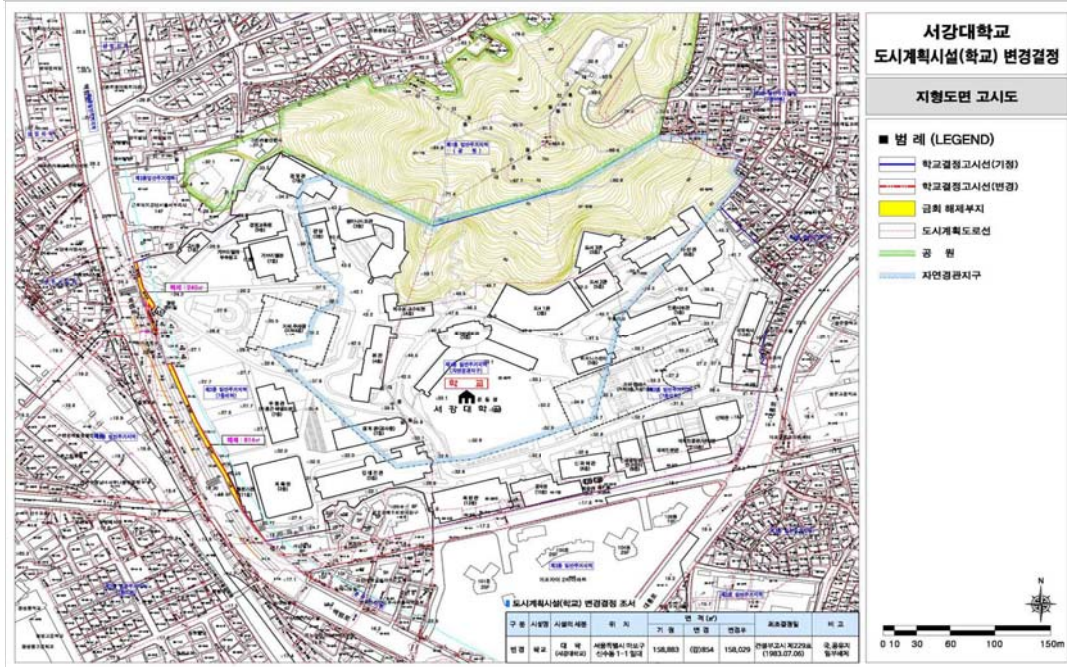
3. 관계도면 : 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결정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 도면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과 같음)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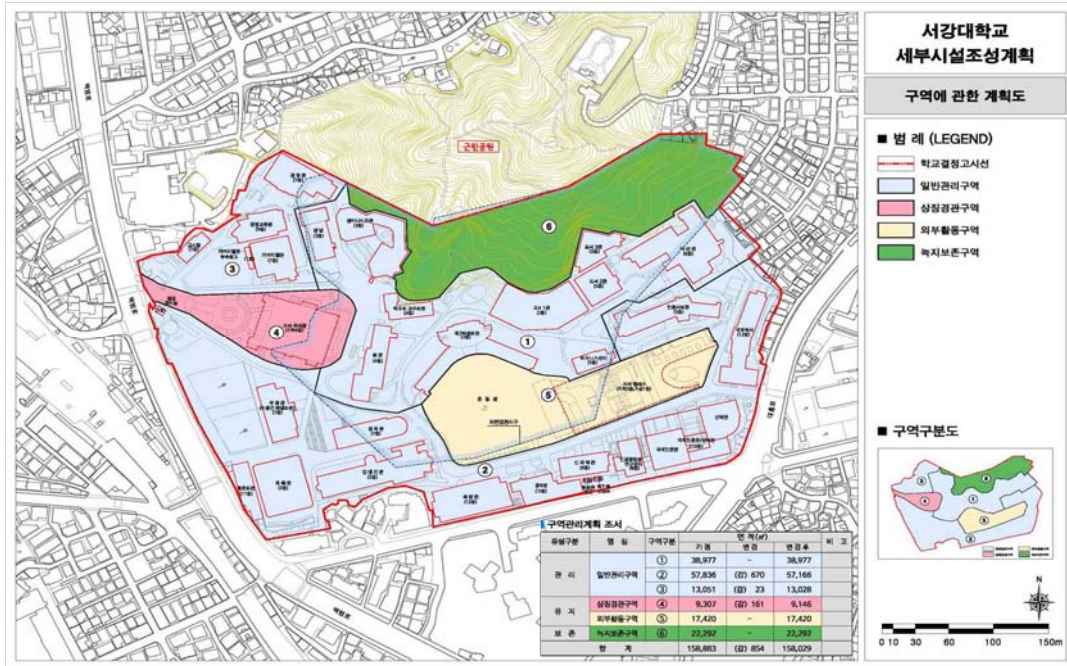
4.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전화 2133-8413) 및 마포구 도시계획과(전화 3153-9354)
에 관계도면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서울도시계획 포털(<http://urban.seoul.go.kr>) 및 토지이용규제
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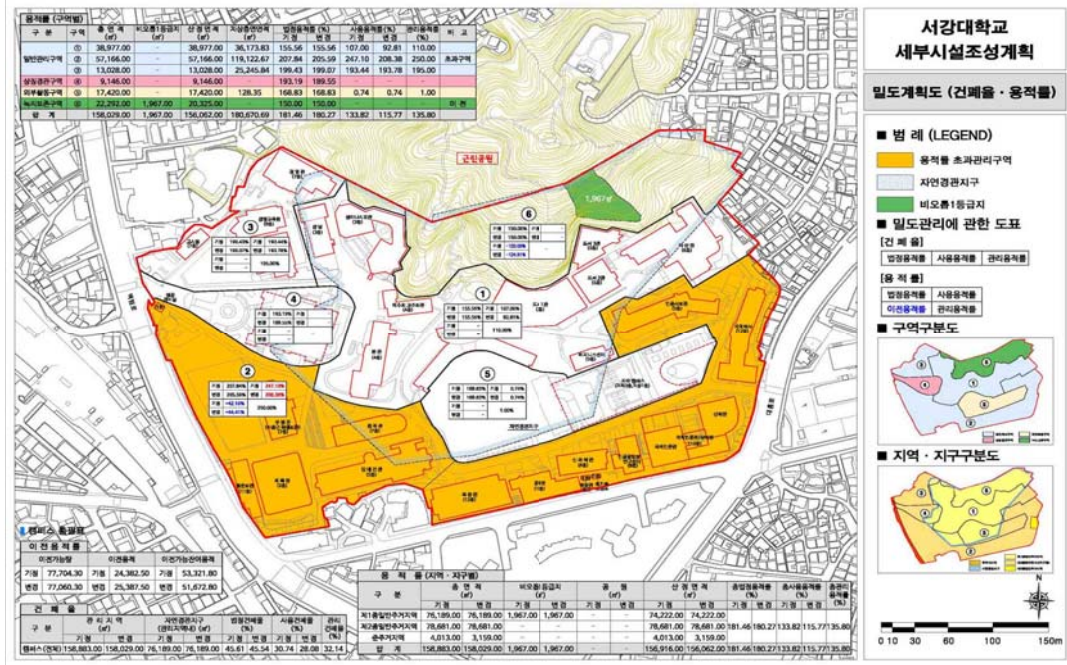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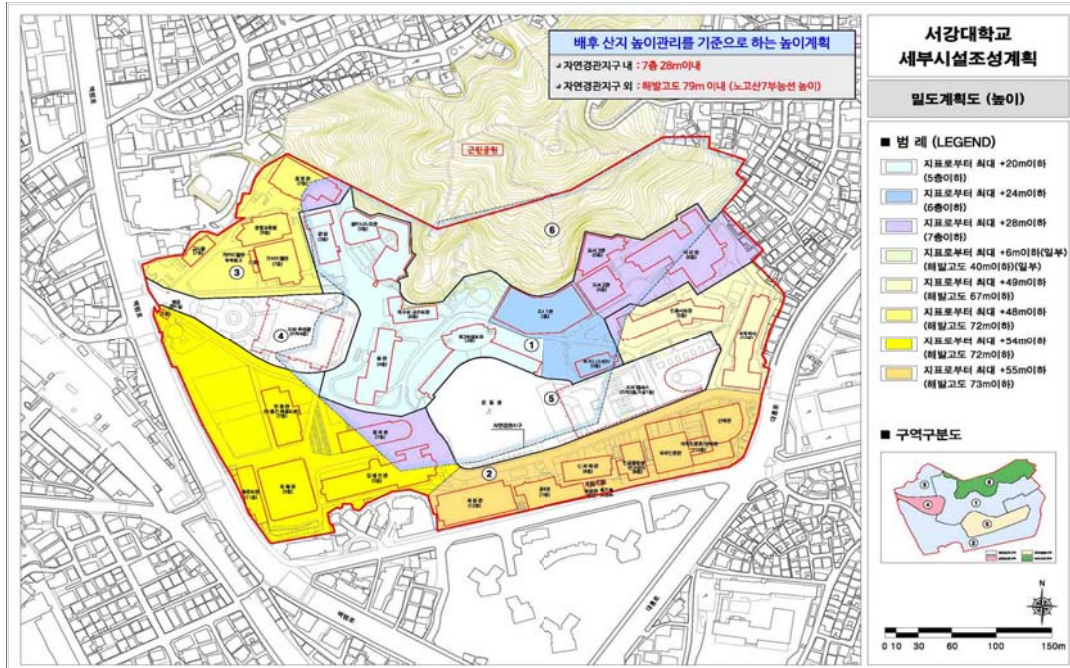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구역계획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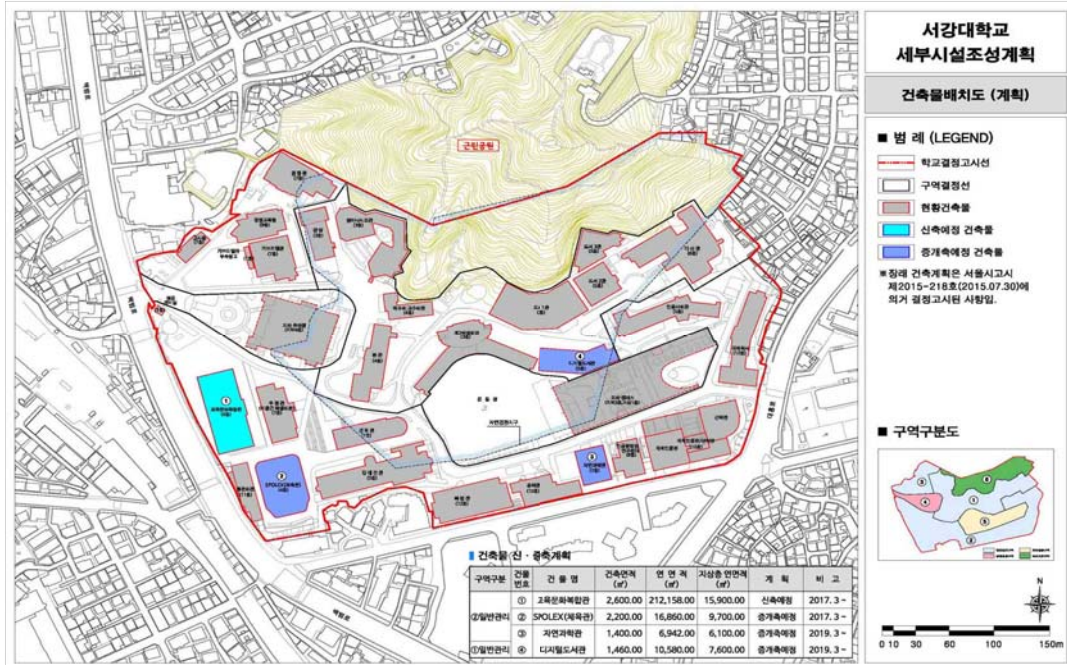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밀도계획도 (건폐율 · 용적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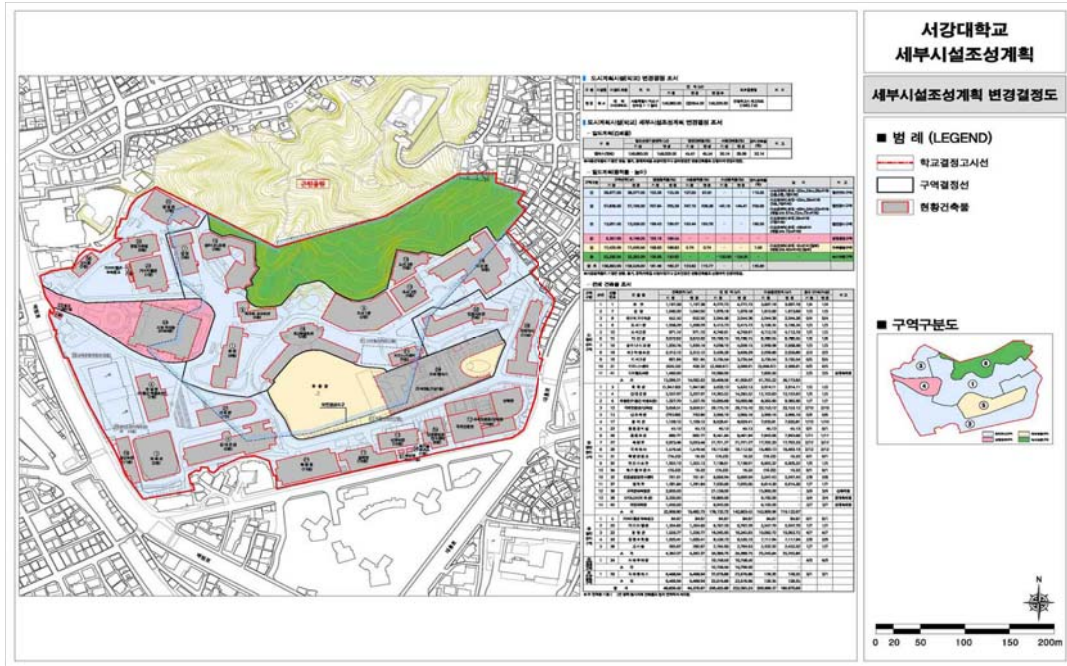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밀도계획도 (높이)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건축물배치도 (계획)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도



공 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2306호

중합공사시공업자 행정처분(등록말소)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혐의 건설업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에 의거 행정 처분(등록말소) 통지를 법인의 본점 소재지 및 대표자 주소지로 등기발송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2016년 12월 1일
서울특별시장

1. 공고기간 : 2016.11.29. ~ 2016.12.14.
2. 처분대상 및 내용

업체명 및 대표자	업종 및 등록번호	소재지	처분사유	위반법규	처분내용	처분근거
제이엠 월드㈜ 서장원	건축공사업 01-0561	서울시 강서구 남부순환로1길 25,1층	등록사항신고 불이행 사유로 인한 시정명령 불응	법 제81조 제2호	등록말소 (2016.12.23.)	법 제83조 제7호

3. 공고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 및 서울시청 홈페이지에 공고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시설안전과 ☎(02)2133-82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2312호

서울 시민시장 표준규약 공고

「서울특별시 시민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서울 시민시장 표준규약」을 제정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1일
서울특별시장

1. 제정이유

서울 시민시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시민시장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시민시장을 개설하려는 사람 등에게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및 제2조)

- 표준규약 제정목적 및 본 규약에서 사용되는 용어 정의

나. 시민시장의 종류 (안 제4조)

- 시민시장이 추구하는 목적과 판매물품 등에 따라 종류를 구분

다. 시민시장의 상품과 용역 (안 제5조)

- 시민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상품과 용역, 활동과 캠페인 세부화

라. 시민시장의 개설 및 시장개설자의 범위 (안 제6조 및 제7조)

- 시민시장 개설을 위한 장소적 여건 및 장소확보 지원절차
- 시민시장을 개설하고 운영할 수 있는 단체 및 개인 구체화

마. 시장개설자 및 시장참여자의 준수사항 (안 제8조 및 제9조)

- 운영계획 수립, 시설물 원상회복, 무단양도금지 등 시장개설자 준수사항
- 참가비 납부, 전대금지, 원산지 및 가격표지 등 시장참여자의 의무

바. 시민시장의 제한 (안 제10조)

- 시민시장의 개설, 운영, 참여제한 사유 명시

서울 시민시장 표준규약(안)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서울특별시 시민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시민시장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시장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조례 제2조 제2호의 시민시장이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민시장"이란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시민이 자발적으로 특정한 장소에 모여 서울특별시의 표준규약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를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5호의 임시시장을 말한다.
2. "시장개설자"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와 자치구의 관련 조례에 따라 임시시장을 개설한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3조제2호의 사회적경제 기업과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
3. "시장참여자"란 시장개설자의 승인을 받아 시민시장에서 상품과 용역을 거래 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상품"이란 다음 각 목의 품목 중 시민시장의 목적, 건전한 사회질서 및 상거래질서에 반하지 않는 품목을 말한다.
 - 가.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축산품
 - 나. 개인창작품(천연, 수공생산품)
 - 다. 중고품
 - 라. 공정무역상품
 - 마. 그 밖에 제5조제1호 내지 제7호 및 제10호의 품목
5. "용역"이란 반대급부를 전제로 제공하는 행위로서 건전한 사회질서 및 상거래 질서에 반

하지 않는 거래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약은 서울특별시내에서 열리는 시민시장에 적용한다.

제4조(시민시장의 종류) 시민시장은 「서울특별시 시민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고 한다.) 제2조제2호의 시민시장이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각 시민시장이 추구하는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예술시장 : 개인 및 단체의 창작활동 활성화를 목적으로 창작성과 창작행위 등을 선보이는 시민시장
2. 재사용(활용)장터 :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을 위해 시민이 직접 사용하던 물건을 가지고 판매, 교환, 나눔 등을 하는 시민시장
3. 농부시장 : 농부가 직접 생산한 농수축산품을 가지고 참여하거나 도시농업 및 도농직거래 활성화를 목적으로 맞는 농수축산품을 판매하는 시민시장
4. 마을시장 : 마을공동체의 이익실현 및 마을문화 발전 등을 목적으로 마을주민의 창작성, 지역공동체나 모임의 상품과 용역을 거래하는 시민시장
5. 사회적경제장터 : 사회적경제, 공정무역 등 윤리적 생산과 유통의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경제기업이 참여하는 시민시장
6. 그 밖에 시민시장이 추구하는 목적이 조례 제2조제2호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해당한다고 서울특별시(이하 '시장' 이라고 한다)이 인정한 시민시장

제5조(시민시장의 상품과 용역) 시민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상품과 용역, 시민시장에서 행할 수 있는 활동과 캠페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참여자가 직접 생산한 국내산 농수축산품 또는 도시농업 및 도농직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농수축산품
2. 시장참여자가 직접 조리한 조리식품
3. 시장참여자가 직접 생산한 가공식품
4. 시장참여자가 직접 창작한 창작성과 창작행위(공연, 퍼포먼스, 전시, 설치 등)
5. 시장참여자가 직접 사용한 물건
6. 지역의 주민공동체나 모임의 상품과 용역
7.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3조제2호의 사회적경제기업의 상품과 용역
8. 창작을 매개로 한 교육 및 시민참여 프로그램
9. 시민문화 발전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지향하는 활동 및 캠페인
10. 그 밖에 시장이 허용한 상품, 용역, 활동 및 캠페인

제6조(시민시장의 개설) 시민시장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시민시장의 개설장소는 공원, 광장, 도로, 공터, 전통시장 등 시민접객이 가능한 장소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 가. 재산 고유의 목적으로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고 이용시민에게 불편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

- 나. 점용허가 등 재산에 대한 정당한 사용권을 취득할 것
- 다. 조례 제4조에 따른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위배되지 않는 장소
- 2. 시민시장 개설 희망자가 조례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시장에게 시민시장 개설장소의 확보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는 개장희망일 60일 전까지 제9조의 시민시장 운영계획서(제9조에 해당 내용 없음 제8조제1항 인듯)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시장개설자의 범위) ① 시민시장을 개설하고 운영할 수 있는 단체 및 개인은 다음과 같다.

- 1.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3조제2호에 따른 사회적경제기업
- 2. 지역의 주민공동체나 모임
- 3.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 4. 그 밖에 시장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한다고 인정하는 단체 및 개인
- ② 시장개설자가 개인인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장개설자가 될 수 없다.
-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제8조(시장개설자의 준수사항) ① 시장개설자는 시민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1. 시민시장 운영목적
- 2. 시민시장 운영개요
 - 가. 시민시장의 명칭(종류)
 - 나. 시민시장의 콘셉트
 - 다. 운영주체(주최/주관)
 - 라. 개최장소
 - 마. 개최시기
 - 바. 주요내용
- 3. 시민시장에서 거래하고 행할 수 있는 상품, 용역, 활동 및 캠페인
- 4. 시장참여자 선정 및 관리
 - 가. 시장참여자의 자격기준, 모집 및 선정방법
 - 나. 시장참여자에 대한 교육
- 5. 시민시장과 지역상권과의 상생방안
- 6. 시장참여자과 지역주민과의 소통계획
 - 가. 지역주민의 참여방안
 - 나. 시민시장에 대한 지역민원 해소대책
- 7. 시민시장 개최장소의 시설물 보호 및 시민안전관리방안

8. 시민시장의 운영규칙

가. 시장개설자의 지원사항

- 1) 판매공간, 매대 등 시장참여자의 거래활동에 필요한 기본시설 구축
- 2) 방문객 유치를 위한 시민시장의 홍보 및 마케팅

나. 시장참여자의 의무

- 1) 영업허가 등 상품 거래에 필요한 사전절차 이행
- 2) 상품의 품질 및 위생관리 철저
- 3) 시민시장의 운영을 위한 참가비 납부
- 4) 시민시장에서 허용한 상품과 용역의 제공, 활동과 캠페인 전개
- 5) 시민시장의 정보와 안내사항의 숙지 및 준수
- 6) 시민시장의 운영과 개선에 필요한 설문 참여 및 정보 제공
- 7) 시민시장 참여 권리의 임의 양도 및 전대 금지
- 8) 원산지 및 가격표시 등 상품과 용역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 9) 고객행위, 고성방가 등 시민과 지역주민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금지
- 10) 쓰레기 무단투척 및 시설물 파손 금지 등 개최장소의 시설물 보호

다. 시민시장의 탈퇴 및 참여제한

- ② 시장개설자는 시민시장 개설장소의 확보 지원 등 시민시장 활성화 촉진 및 지원을 위해 시장이 요구하는 경우는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시장개설자는 시민시장 폐장시마다 시민시장 설치물의 철거, 파손 시설물의 복구 등 개최장소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 ④ 시장개설자는 시장참여자에게 원활한 시민시장 참여를 위해 재정운영현황 등 시민시장 운영과 관련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 ⑤ 시장개설자는 시민시장 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시민시장 홍보와 지원정책 수립 등에 필요한 정보를 시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⑥ 시장개설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가 금지된다.
 1. 시민시장의 임의 양도나 전대
 2. 시민시장의 상업적, 종교적, 정치적 이용
 3. 그 밖에 시장이 시민시장 활성화 지원을 위해 금지한 사항

제9조(시장참여자의 준수사항) 시장참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한다.

1. 참여하는 시민시장의 운영을 위한 참가비 납부
2. 참여하는 시민시장에서 허용한 상품과 용역의 제공, 활동과 캠페인 전개
3. 참여하는 시민시장의 정보와 안내사항의 숙지 및 준수
4. 시민시장의 운영과 개선에 필요한 설문 참여 및 정보 제공
5. 시민시장 참여 권리의 임의 양도 및 전대 금지
6. 원산지 및 가격표시 등 상품과 용역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7. 고객행위, 고성방가 등 시민과 지역주민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금지
8. 쓰레기 무단투척 및 시설물 파손 금지 등 개최장소의 시설물 보호
9. 그 밖에 참여하는 시민시장의 운영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제10조(시민시장의 제한) ① 시장은 시민시장이 이 규약을 따르지 않거나 안전사고 발생, 시설물 훼손, 불투명한 운영, 민원발생 등으로 인하여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는 공유지 사용제한을 포함한 시민시장의 개설과 운영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시장개설자는 시장참여자가 제9조의 시장참여자 준수사항 및 참여 시민시장의 운영규칙을 위반하거나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등 시민시장의 안정적 운영을 저해하는 경우는 시민시장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규약의 변경) ① 관련 법령 및 조례가 개정되어 규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시장이 규약을 변경하기 전까지 규약의 내용이 관련 법령 및 조례의 변경내용과 같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② 시장은 이 규약이 시민시장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현실적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개정한다.

③ 시장은 이 규약을 변경하는 경우 시장개설자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제12조(이 규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 이 규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과 규약내용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는 관련 법령 및 조례의 입법취지를 반영하여 이해관계자간의 협의를 통해 정한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2317호

천왕 도시개발사업 1차 공사완료 공고

천왕 도시개발사업이 1차 부분준공되었기에 「도시개발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사완료를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1일
서울특별시

1. 사업의 명칭 ; 천왕 도시개발사업
2. 시행자 : SH공사
3.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시 구로구 천왕동, 오류동 일원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 가. 사업시행지의 면적 : 464,662.5㎡
 - 나. 용도별 면적

구분	준공면적(㎡)	구성비(%)	비고
계	464,662.5	100	
주택용지	204,529.9	44.0	
근린생활시설	7,198.3	1.5	
도로	78,668.9	16.9	

구분	준공면적(㎡)	구성비(%)	비고
학교	22,409.2	4.8	
공공청사	4,024.5	0.9	
교육시설	15,409.9	3.3	
사회복지시설	2,658.6	0.6	
종교시설	2,589.8	0.6	
공공공지	127,173.4	27.4	

5. 준공일자 : 2016.11.22.

6. 주요 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 : 기반시설용지는 「도시개발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시에 무상귀속

※ 관계도서는 서울시 도시활성화과(02-2133-4647)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관계도면 등 게재 생략)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2318호

상계·장암 도시개발사업 1차 공사완료 공고

상계·장암 도시개발사업이 1차 부분준공되었기에 「도시개발법」 제5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사완료를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1일

서울특별시장

1. 사업의 명칭 ; 상계·장암 도시개발사업
2. 시행자 : SH공사
3.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 일원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 가. 사업시행지의 면적 : 16,139.2㎡
 - 나. 용도별 면적

구분	준공면적(㎡)	구성비(%)	비고
계	16,139.2	100	
근린공원	15,002.7	92.9	
군사시설	1,136.5	7.1	

5. 준공일자 : 2016.11.22.

6. 주요 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 : 기반시설용지는 「도시개발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시에 무상귀속

※ 관계도서는 서울시 도시활성화과(02-2133-4647)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관계도면 등 게재 생략)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2323호**

2016년 하반기 서울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안내 공고

우리시에서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지역 대학생」에게 다음과 같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대출받은 “일반 상환학자금” 및 “취업 후 상환학자금(든든학자금)”에 대한 대출이자를 지원하오니 대학생 여러분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2016년 12월 1일
서울특별시

가. 사업명 : 2016년 하반기 서울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나. 지원신청 대상자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일반 상환학자금”(소득 8분위 이하) 및

“취업 후 상환학자금”(소득 7분위 이하)을 대출받은 대학생으로서〉

- 대출 당시부터 현재까지 주민등록등본 상 서울 주소이며 서울소재 대학교에 재학(휴학) 중인 대학생
- 서울소재 고교졸업 후 국내 대학에 재학(휴학) 중인 대학생
- 다자녀(3인 이상) 가구의 자녀로서 대출 당시부터 현재까지 주민등록등본 상 서울 주소이며 서울소재 대학교에 재학(휴학) 중이거나, 서울소재 고교졸업 후 국내 대학에 재학(휴학) 중인 대학생

다. 지원금액

- 1) 일반 상환 학자금을 대출 받은 ‘소득 7분위 이하’와 3인 이상 ‘다자녀’ 가구 대학생
: 발생이자 전액지원
- 2) 일반 상환 학자금을 대출 받은 ‘소득 8분위’와 취업 후 상환 학자금을 대출 받은 ‘소득 7분위 이하’ 가구의 대학생
: 소득분위에 따라 차등지원(지원범위는 당해 연도 예산 내에서 서울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현재 재학 또는 휴학 중인 대학교에서 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원이며, 정부 및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이 있을 경우 이를 공제한 금액을 지원)

라. 신청기간 : ‘16. 12. 1.(목), 09:00 ~ ‘16. 12. 31.(토), 18:00

마. 신청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바. 지원대상자 확정 : 2017년 4월 이후(예정)

사. 지원방법 : 한국장학재단의 대출계좌로 입금(원리금상환) 및 SMS결과 통보
 ※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시 120 콜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2324호**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자에게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고 대상자와 연락도 되지 않아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1일
 서울특별시장

1. 건 명: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2. 근 거: ‘도로법’ 제1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5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6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대 상 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예정된 처분 내용
성명	주 소		
오해용	경기도 시흥시 호현로 **, *층호 (대야동)	일시: 2016-07-24 10:38 장소: 행주대교 남단 과적검문소 차량: *****6501 내용: 제한 축하중 1.05t 초과	과태료 50만원 부과
김삼태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양진로1020번길 32, ***동 ***호 (진접읍, 궁의문)	일시: 2016-07-30 15:12 장소: 행주대교 남단 과적검문소 차량: *****7313 내용: 제한 높이 0.1m 이상 초과	과태료 30만원 부과
김원선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로16길 2-19, ***호 (석촌동)	일시: 2016-10-06 14:25 장소: 목동교 차량: *****5921 내용: 제한 총중량 10.45t 초과	과태료 80만원 부과

4.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5. 의견진술 안내
 - 가. 의견진술 기한: 공고 종료일 다음 날로부터 20일
 - 나. 의견진술 기한 내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서식은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준용), 의견진술 시 의견진술서를 증빙서류와 함께 강서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진술 기한 내에 의견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 다. 또한, 의견진술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을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의견진술 기한 내에 의견진술이나 자진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도로법 제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마.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3급 이상),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 이상), 미성년자는 의견진술 기한 내에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 감경을 위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단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는 감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바. 의견진술서 제출처

-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237(마곡동) 강서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 전화번호: 02-2657-7922, 팩스번호: 02-2657-7950
- 전자우편: skyblue7@seoul.go.kr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2332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업체 행정처분(등록말소)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영업정지 종료일까지 위반사유를 보완하지 않아 동법 제83조 제3호의2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등록말소)되었음을 귀사에게 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1일
서울특별시장

1. 공고기간 : 2016. 12.1.(목) ~ 2016. 12. 15(목)

2. 공고대상

연번	업 체 명 (대표자)	업종 및 등록번호	소 재 지	위반내용	위반 법규	처분사항	처분 근거
1	(주)이레씨엔씨 (오종환)	건축공사업 01-3411	서울시 관악구 봉천로12길39, 209호	영업정지 종료일까지 위반사유 미보완	건설 산업 기본법 제10조	등록말소 (말소일자; 2016.12.30.)	같은법 제83조 제3호의 2
2	희경건설(주) (박희열)	토목건축 공사업 01-0118	서울시 서초구 서운로13, 909호				

3. 공고내용

1)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영업정지 종료일까지 위반사유를 보완하지 않아 동법 제83조 제3호의2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등록말소)되었음을 귀사에게 통지하며, 이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 및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고함을 알려드리니, 건설업등록증 및 수첩을 우리시에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가. 등록말소 일자 : 2016. 12. 30.

나.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의2

2) 아울러, 위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 문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울특별시(처분청)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거나,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시설안전과 ☎ (02)2133-82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2336호

「서울특별시 자치현장 조례」 제정 관련 공청회 개최 공고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우리시 최고의 규범인 「서울특별시 자치현장 조례」 제정과 관련한 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1일
서울특별시장

1. 일 시 : 2016. 12. 20(화) 14:00~15:30(90')
2. 장 소 : 서울시 서소문 별관 1동 대회의실
3. 참석대상 : 조례안에 대하여 관심 있는 시민,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
4. 내 용 : 제1부(경과보고, 전문가 주제발표), 제2부(지정토론, 질의응답)
5. 토 론 자 : 시의원, 시민단체, 전문가 등
6.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견제출
 - 2016년 12월 20일 한 이메일(yjh1217@seoul.go.kr) 또는
 - 우편(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법무담당관, (우)04524) 제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공청회 개최와 관련하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법무담당관
 - (☎2133-669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조례안
 -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공청회 및 의회 심의 결과 등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자치현장 조례안

<전문> 서울특별시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수도이다. 서울특별시는 시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고 개인의 창의와 문화의 다양성에 바탕을 둔 참여적 자치를 보장하며 경제사회 주체 간 조화를 통한 포용적 성장을 추구할 권한과 책무를 갖는다. 이에 서울특별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지방자치를 보장하는 「대한민국 헌법」에 입각하여 주민의 복리 증진 및 국가와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자치의 근간이 되는 이

조례를 제정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헌법」에 따라 지방자치의 기본이념을 명확히 하고 시민의 권리와 서울특별시의 책무 그리고 행정 운영의 기본 원칙 등을 규정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민) 이 조례에서 “시민”이란 국적을 불문하고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관할 구역 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과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시민은 지방자치의 주체이며 시의 행정과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의정(시의 행정과 시의회의 의정을 통틀어 이하 “시정”이라 한다)은 시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시민을 위하여 이루어진다.

② 시민은 누구든지 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시는 시민의 인격과 의견을 존중하고 민관협력을 통하여 주민자치를 실현하여야 한다.

제4조(조례의 위상) ① 이 조례는 시의 최고 규범으로서 시정의 근간이 된다.

② 시는 모든 시정을 결정·집행·평가할 때 이 조례를 기본으로 하며, 자치사무에 관하여 자치입법권·자치조직권·자치재정권을 행사할 때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시민의 권리 등

제5조(시민의 시정참여권) ① 시민은 시정에 관한 의견을 제안 할 수 있고,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나 청문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는 제1항에 따른 시민의 제안이나 요청을 성실히 검토하여야 하며, 시민이 관련 법령에 따라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발안 등 주민참여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와 참여 증진을 위하여 학습의 기회와 시정관련 정보를 시로부터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제6조(적법한 절차 및 행정 요구권) ① 시정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② 시민은 모든 행정영역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고 공정하고 적법하게 처리하여 줄 것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며, 시는 이에 대하여 응답할 의무를 진다.

제7조(안전보건권 및 재해예방보호) ① 시민은 자연적·사회적 재해 및 질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시는 자연적·사회적 재해를 예방하고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의료 환경과 안전한 사회 환경을 마련하는 등 시민의 안녕과 건강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제8조(표현의 자유) ① 시민은 다른 사람의 권리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 자신의 양심과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갖는다.

② 시는 시민이 다양한 의견을 표출하고 상호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정보기본권 및 정보격차해소) ① 시민은 정보화 시대에 부합하는 정보문화를 향유하고 자신에 대한 정보를 관리·통제할 권리를 갖는다.

② 시는 시민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특히,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정보기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0조(차별금지) 시민은 성별, 종교, 신체적·정신적 장애, 나이, 국적, 지역, 사회적 신분 등으로 인해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장애인의 권리) ① 장애인은 존엄하고 자립적인 삶을 영위하며 모든 분야의 사회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시는 장애인 관련 정책 결정을 수립·집행할 때에 장애인과 장애인을 보호하는 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외국인의 권리) ① 외국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 참여 또는 공공시설 이용에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갖는다.

② 시는 외국인의 생활과 원활한 사회 참여를 위해 배려하고 문화적 다양성 존중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출산양육을 위한 권리) ① 시민은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할 권리를 향유하고 이로 인해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시는 보육시설 등 출산과 양육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와 시설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4조(아동과 청소년의 권리 및 공교육진흥) ① 아동과 청소년은 자라나는 미래세대로서 모든 학대로부터 단절되어 그 지위에 걸맞은 교육과 배려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시는 미래세대의 육성과 교육기회의 평등을 도모하기 위해 공교육의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사회복지기본권) ① 시민은 인간다운 삶에 상응하는 복지를 누릴 권리를 갖는다.

② 시는 시민의 최소한의 사회문화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복지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6조(주거권) ① 시민은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

② 시는 시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시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문화생활향유권) ① 시민은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표현 하는 등 문화생활을 향유할 권리를 갖는다.

② 시는 공연, 전시, 체육, 축제, 공원 등 시민의 문화생활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18조(공동체 활성화) ① 시민은 자아실현을 위해 사회 각 영역의 공동체를 구성하고 참여하여 활동할 권리를 갖는다.

② 시는 사회기반조직으로서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근로기본권) ① 시민은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하여 근로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② 시민은 근로의 대가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임금을 받으며, 자신이 속한 기업의 경영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제20조(일자리기본권) ① 시민은 청년, 장년, 노년 등 생애 전 주기에 걸친 적절한 교육과 창업, 취업, 그 밖의 경제적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조력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시는 청년창업, 장노년의 재취업, 장애인·여성·사회적 기업 등 경제적 취약 계층의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포용적 성장) ① 시는 포용적 성장을 위한 사회적 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는 하도급이나 상가임대차 등 경제활동의 제반 영역에서 불공정한 거래발생을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사회경제적 양극화의 해소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소비자기본권) ① 시민은 안전한 제품을 선택하고 소비할 권리를 갖는다.

② 시는 제품의 질, 가격 및 안전에 대한 정보가 허위 및 과장 없이 시민에게 정확히 전달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제품의 하자로 인한 시민의 손해가 신속히 보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환경권 및 지속가능발전) ① 시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갖는다.

② 시는 사회경제적 활동이 환경 및 생태계와 조화되어 지속가능한 것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역사문화경관 보전) 시는 시의 역사문화와 경관을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시의 책무

제25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시민과 소통을 통해 시민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파악하여 시민의 의사가 시정에 폭 넓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시정에 관한 정보를 알기 쉽게 시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이 시정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지방자치의 주체로서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6조(시의회의 책무) ① 시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따라 합리적인 시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시민의 의사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의회는 시민과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예산 및 입법안 심사 등에 시민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중앙정부와의 협조) ①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및 그 밖의 행정규칙(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은 「대한민국헌법」에 따른 지방자치의 기본이념에 적합하여야 하며 이에 반하는 경우에는 시는 중앙정부에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시는 중앙정부에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요청하고, 확보하여야 한다.

제4장 자치사무

제28조(자치사무) ① 시는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의 주체로서 고유한 사무를 스스로 처리한다.
② 시와 자치구는 시민의 복리 및 실생활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고, 중앙정부는 국방, 외교, 사법 등 시와 자치구가 처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사무를 처리한다.
③ 시와 자치구는 서로 협력하여 합리적인 사무배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와 자치구의 사무 처리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자치구가 우선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자치구가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시가 처리하는 것이 적합한 사무는 시가 처리한다.

제29조(국가 위임사무 처리) ① 시는 중앙정부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한 국가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임은 보편적, 통일적 집행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하며, 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중앙정부가 부담한다.
③ 중앙정부의 위임사무에 대한 지도는 최소한으로 하고, 시는 국가 위임 사무 집행에 관한 자치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

제30조(중앙정부와의 관계) ① 시와 중앙정부의 관계는 상호 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를 보장하는 「대한민국헌법」에 입각하여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로 정한다.
② 명령 및 행정규칙은 법률에 명시된 범위를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중앙정부의 협의와 지원은 시의 자율성과 창의성, 지역적 특수성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장 자치권

제31조(자치입법권) ① 시는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치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

② 시는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하고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최저기준을 초과하거나 이에 추가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③ 조례는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 법률의 위임에 따라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의 민주성에 비추어 위 법률의 위임은 반드시 명시적, 구체적인 것에 한정하지 않는다.

제32조(자치조직권) ① 시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조례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중앙정부가 법률에 따라 정하는 기준은 인건비 등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조직권을 침해할 수 없다.

제33조(자치재정권) ① 시는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하여야 한다.

② 시는 중앙정부가 자신의 재정으로 부담하여야 할 부분을 시에 전가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③ 시는 국가·지방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고 지방자치의 자율성을 위하여 중앙정부에 그 사무에 상응하는 자주재원의 보장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시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 등을 산정하여 예산을 편성한다.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을 위하여 중앙정부가 법률에 따라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기준은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예산편성권을 침해할 수 없다.

제34조(대외협력) ① 시는 국가 균형발전 및 공동번영을 위하여 중앙정부, 국내 외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교류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는 통일이 시민과 시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대비하여야 하며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조하여 평화통일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장 보 칙

제35조(분야별 조례)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야별 조례를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2338호

2016년도 제21차 건축물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결과 공고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제21차 서울특별시 미술작품 심의회」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1일
서울특별시

- 가. 심의일시 : 2016. 11. 24.(목) 14:00 ~ 17:00
 나. 심의장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5층 회의실
 다. 심의작품 : 총 4건 4작품 (조각 3점, 회화 1점)
 라. 심의결과 : 승인 3작품, 부결 1작품
 마. 작품별 심의결과 : 별첨
 바.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디자인정책과(☎ 02-2133-27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제21차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 2016년 제21차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아래와 같이 의결합니다.

연번	건물명	종류	작품명	심의결과		사유 및 의견
				승인	부결	
1	중구 KEB 하나은행 본점	조각	Beautiful Dreamer	○		
2	서초구 서초푸르지오 써밋	조각	동녘	○		
3	강서구 마곡사이언 스타	회화	Montage-해송	○		
4	송파구 서울동부지방 검찰청사	조각	정의와 신념		○	• 전체적으로 상징성, 예술성, 조형성 부족 • 한글타이포그래피의 심미성이 낮음 - 영문장평과 양끝정렬된 한글장평(오픈자간)을 담고 있는 여백이 충분하지 않음 - 울산지검·법무부사례와도 다르므로 규정된 아이덴티티 디자인이 아닌 것으로 보여짐 • 국가기관이라면 상징적 모뉴먼트는 더욱 신중하게 의미고증 후 통일되게 해야될 것으로 보여짐 - 한국고유의 이미지를 강조한 한국의 정의의 여신상이라면, 조금 더 고증해야함

구 고 시

◆ 중구고시 제2016-112호

명동구역 제4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정비계획) 지정(변경) 정정고시

서울특별시 중구고시 제2016-82호(2016.09.09.)로 고시된 “명동구역 제4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정비계획) 지정(변경) 고시” 내용 중 토지분할측량에 의한 정비기반시설 면적 변경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1일
중 구 청 장

1. 정정내용

◎ 정비구역의 지정 (정정 전)

가. 정비사업의 명칭 : 명동구역 제4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나.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1) 명동구역 제4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변 경	명동구역 제4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중구 저동1가 48번지 일대	4,139.2	증) 0.2	4,139.4	· 정비기반시설 위치 및 면적 변경

다. 정비계획

1)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	비 고
		기 정	증(감)	변 경		
합 계		4,139.2	증) 0.2	4,139.4	100.0	
정비 기반 시설	소계	1,147.7	증) 0.2	1,147.9	27.7	
	도로	52.7	증) 5.9	58.6	1.4	· 정비기반시설 위치 변경(증 5.9㎡)
	공원	1,095.0	감) 5.7	1,089.3	26.3	· 정비기반시설 위치 변경(감 5.7㎡)
택지 (지구)	소 계	2,991.5	－	2,991.5	72.3	
	4지구	2,991.5	－	2,991.5	72.3	

3)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

마) 정비기반시설 부담 계획

- 명동구역 제4지구 정비기반시설 부담계획

구 분	구역명	시행면적 (㎡)	대지면적 (㎡)	정비기반시설 부담면적(㎡)	대지내 공공용지(㎡)	부담률(%)
기 정	명동구역 제4지구	4,139.2	2,991.5	1,147.7	122.1	25.53
변 경	명동구역 제4지구	4,139.4	2,991.5	1,147.9	122.1	25.53

- 정비기반시설 추가 부담면적(관리청으로 무상귀속)

구역명	위 치	시설 종류	정비기반시설 부담면적(㎡)			비 고
			기정	증감	변경	
명동구역 제4지구	저동1가 90-11	공원	30.2	감)8.8	21.4	· 사유건축물 점유면적 제외
	저동1가 91-3	공원	-	증)3.1	3.1	· 정비기반시설 추가
	소 계		30.2	감)5.7	24.5	
	저동1가 72-5	도로	-	증)3.2	3.2	· 정비기반시설 추가
	저동1가 72-7	도로	-	증)2.7	2.7	· 정비기반시설 추가
	소 계		-	증)5.9	5.9	
합 계			30.2	증)0.2	30.4	

◎ 정비구역의 지정 (정정 후)

가. 정비사업의 명칭 : 명동구역 제4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나.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1) 명동구역 제4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변 경	명동구역 제4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중구 저동1가 48번지 일대	4,139.2	감)1.4	4,137.8	· 정비기반시설 위치 및 면적 변경

다. 정비계획

1)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	비 고
		기 정	증(감)	변 경		
합 계		4,139.2	감) 1.4	4,137.8	100.0	
정비 기반 시설	소계	1,147.7	감) 1.4	1,146.3	27.7	
	도로	52.7	증) 5.9	58.6	1.4	· 정비기반시설 위치 변경(증 5.9㎡)
	공원	1,095.0	감) 7.3	1,087.7	26.3	· 정비기반시설 위치 변경(감 7.3㎡)
택지 (지구)	소 계	2,991.5	－	2,991.5	72.3	
	4지구	2,991.5	－	2,991.5	72.3	

3)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

마) 정비기반시설 부담 계획

- 명동구역 제4지구 정비기반시설 부담계획

구 분	구역명	시행면적 (㎡)	대지면적 (㎡)	정비기반시설 부담면적(㎡)	대지내 공공용지(㎡)	부담률(%)
기 정	명동구역 제4지구	4,139.2	2,991.5	1,147.7	122.1	25.53
변 경	명동구역 제4지구	4,137.8	2,991.5	1,146.3	122.1	25.51

- 정비기반시설 추가 부담면적(관리청으로 무상귀속)

구역명	위 치	시설 종류	정비기반시설 부담면적(㎡)			비 고
			기정	증감	변경	
명동구역 제4지구	저동1가 90-11	공원	30.2	감)10.4	19.8	· 사유건축물 점유면적 제외
	저동1가 91-3	공원	-	증)3.1	3.1	· 정비기반시설 추가
	소 계		30.2	감)7.3	22.9	
	저동1가 72-5	도로	-	증)3.2	3.2	· 정비기반시설 추가
	저동1가 72-7	도로	-	증)2.7	2.7	· 정비기반시설 추가
	소 계		-	증)5.9	5.9	
합 계			30.2	감)1.4	28.8	

2. 정정사유

- 정비기반시설의 조서상 토지분할측량에 따른 면적 변경이 있어 정정함

3. 열람장소

- 고시 관련 세부내용에 대하여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중구 도심재생과(☎3396-5783)에 관계서류 비치 및 열람

◆ 성북구고시 제2016-162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364호(2010.10.21.)로 도시계획시설(주차장)결정되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2016-1061호(2016.10.27.)로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및 사업인정에 관해 의견 청취 공고한 【성북동 230-1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성북동 230-1외 10필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동법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실시계획인가하고 동법 제91조 및 동법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토지 및 건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개별 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해서는 본 고시로 통지를 갈음할 것입니다.
3. 관계서류는 성북구청 교통행정과(☎ 02-2241-3412)에 비치하고 토지, 건물 등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6년 12월 1일

성 북 구 청 장

가.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나. 사업개요

사업의 명칭	사업의 위치	사업의 시행면적	최초 결정일	비 고
성북동 230-1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성북동 230-1 외 10필지	741㎡	2010-10-2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364호)	중복결정 (하천:542㎡)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성북구 보문로 168)

라.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고시일로부터 2017. 12. 31.

마.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 따로붙임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북구청 교통행정과(☎ 02-2241-34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 지 조 서

사업시행자 : 성북구청장

사업시행자 주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68

사업의 명칭 : 성북동 230-1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공사(230-1 외 10필지)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권		이 해 관 계 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이외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성북구 성북동 236-2	대	19.0	6.0	배재두	성북구 성북로 146-1(성북동)	유니온백양회 공업주식회사	서울 중구 소공동 50-5	근저당권	
2	성북구 성북동 236-5	대	8.0	8.0	오은서	강북구 삼각산로 143-1, 13동 804호 (수유동, 수유백산아파트)				
3	성북구 성북동 236-1	대	15.0	15.0	오은서	강북구 삼각산로 143-1, 13동 804호 (수유동, 수유백산아파트)				토지분할 236-1 236-7
4	성북구 성북동 237-1	대	13.0	13.0	오성환	성북구 성북로 144(성북동)	주식회사 하나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 66 (을지로2가)	근저당권	토지분할 237-1 237-11
5	성북구 성북동 237-10	대	5.0	5.0	오성환	성북구 성북로 144(성북동)				
6	성북구 성북동 237-2	대	21.0	21.0	김성순	성북구 성북로 144(성북동)				토지분할 237-2 237-12
7	성북구 성북동 237-3	대	51.0	51.0	서현자	송파구 동남로18길 44, 5동 905호 (가락동, 가락프라자아파트)	주식회사 국민은행	서울 중구 남대문로2가 9-1 (송파개통역지점)	근저당권	토지분할 237-3 237-13
8	성북구 성북동 254-9	대	25.0	5.0	임석희	서울 서대문구 현저동 46-1602	성북구청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 성북구 보문로 168 서울 종로구 관철동 43-8	압류 근저당권	공유지분 12분의1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면적 (㎡)	소 유 권		이 해 관 계 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이외의권리의 종류 및 내용	
9	성북구 성북동 254-9	대	25.0	5.0	최종한	서울 용산구 용문동 12-2	성북구청 한국주택금융 공사	서울 성북구 보문로 168	압류 근저당권	공유지분 12분의1
10	상동	대	25.0	5.0	장병선	서울 종로구 사직동 311-54	성북구청 한국주택금융 공사	서울 성북구 보문로 168	압류 근저당권	공유지분 12분의1
11	상동	대	25.0	5.0	김진원	서울 성북구 돈암동 229-2	성북구청 한국주택금융 공사	서울 성북구 보문로 168	압류 근저당권	공유지분 12분의1
12	상동	대	25.0	5.0	정은선	서울 종로구 창성동 122-8	성북구청 한국주택금융 공사	서울 성북구 보문로 168	압류 근저당권	공유지분 12분의1
13	상동	대	25.0	5.0	홍완식	서울 중구 장충동2가 159	성북구청 한국주택금융 공사	서울 성북구 보문로 168	압류 근저당권	공유지분 12분의1
14	상동	대	25.0	5.0	신유증	서울 중구 장충동1가 50-6	성북구청 한국주택금융 공사	서울 성북구 보문로 168	압류 근저당권	공유지분 12분의1
15	상동	대	25.0	5.0	문영덕	서울 성북구 보문동3가 45-14	성북구청 한국주택금융 공사	서울 성북구 보문로 168	압류 근저당권	공유지분 12분의1
16	상동	대	25.0	5.0	정문찬	서울 중구 필동 1가 45-1	성북구청 한국주택금융 공사	서울 성북구 보문로 168	압류 근저당권	공유지분 12분의1
17	상동	대	25.0	5.0	장우철	서울 성북구 돈암동 433-22	성북구청 한국주택금융 공사	서울 성북구 보문로 168	압류 근저당권	공유지분 12분의1
18	상동	대	25.0	5.0	최규식	서울 종로구 통의동 125-1	성북구청 한국주택금융 공사	서울 성북구 보문로 168	압류 근저당권	공유지분 12분의1
19	상동	대	25.0	5.0	황경진	서울 서대문구 교남동 123-5	성북구청 한국주택금융 공사	서울 성북구 보문로 168	압류 근저당권	공유지분 12분의1

별첨 조서

사업시행자 : 성북구청장

사업시행자 주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68

사업의 명칭 : 성북동 230-1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공사(230-1 외 10필지)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	실제 이용 상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주 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종류 및 내용	
1	성북구 성북동 236-2	건물	세멘조	9.0	점포	배재두	성북구 성북로 146-1 (성북동)					기존 무허가
2	성북구 성북동 236-1	건물	목조	52.0	음식점	이명순	도봉구 해동로 50, 315동1101호 (창동,주공아파트)					
3	성북구 성북동 237-1	건물	세멘연외조 조림식판넬	건물 32.0 창고 6.0 담장 1식	음식점	오성환	성북구 성북로 144(성북동)		주식회사 하나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 66 (을지로2가) (성북동지점)	근저당권	
4	성북구 성북동 237-3	건물	목조 목조심벽세멘벽돌	1층 : 27.0 2층 : 18.0	음식점	서현자	송파구 동남로18길 44, 5동 905호 (기락동,기락프라자아파트)		주식회사 국민은행	서울 중구 남대문로2가 9-1 (송파개릉역지점)	근저당권	
5	성북구 성북동 230-1	건물	세멘조	104.0 담장 1식 수목 1식	스튜디오	유정오	종로구 삼청로5길 24 (팔판동)					기존 무허가

◆ 성북구고시 제2016-163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1. 건설부고시 제465호(1967.12.18)로 도시계획시설(공원)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56호(2006.7.27)로 공원조성계획 수립된 북악산도시자연공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공고 제2016-1046호(2016.10.20.)로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해 열람공고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실시계획을 작성, 같은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저촉토지 및 지장물 소유자,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 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해서는 본 고시로 갈음합니다.
3.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청 공원녹지과(☎2241-366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6년 12월 1일
성 북 구 청 장

가. 사업개요

- 사업의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조성)
- 사업의명칭 : 북악산도시자연공원(성북지구) 조성(2차)
-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226-65번지 일대
- 사 업 면 적 : 101,059㎡ 중 5,772㎡

나.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다.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017. 12. 31까지

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물건조서 : 별첨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성북구 공원녹지과(서울시 성북구 보문로 168, ☎2241-366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토 지 조 서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시설사업(북악산도시자연공원 성북지구 조성)-2차

연번	위치		지목	공부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동명	지번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소유권이외 권리종류 및 내용	
1	성북	226-33	대	364	364		국(재정경제원)				
2	성북	226-36	대	400	400		국(재정경제원)				
3	성북	226-65	대	482	482	성북구 성북로 31길 135(성북동)	유상수				
4	성북	226-68	대	353	353		국(재무부)				
5	성북	226-69	대	1,028	1,028		국(재무부)				
6	성북	226-109	임	734	734	송파구 백제고분로23길 26,503호(삼전동)	김영노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삼선교지점)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근저당권 지상권	
7	성북	226-122	임	50	50	광주광역시 남구 서오층석탑1길 7-1(서동)	재단법인라인문화재단				
8	성북	226-234	대	2,000	2,000		서울시				

토 지 조 서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시설사업(북악산도시자연공원 성북지구 조성)-2차

연번	위치		지목	공부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동명	지번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소유권 이외 관리종류 및 내용	
9	성북	226-242	대	30	30		성복구				
10	성북	226-251	대	2	2	송파구 잠실동 19 아파트 63동 403호	이종원				
						관악구 남부순환로248길 29(봉천동)	이복성				
11	성북	226-252	도로	18	18		국(재무부)				
12	성북	226-266	임	3,475	183	부산 서구 시약로 122.1001호 (서대신동3가, 화인아트빌리지)	박경미				
13	성북	226-300	임	26	26	송파구 백제고분로23길 26,503호(삼전동)	김영노				

토 지 조 서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시설사업(북악산도시자연공원 성북지구 조성)-2차

연번	위치		지목	공부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동명	지번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소유권 이외 권리종류 및 내용	
14	성북	226-301	대	16	16		국(재무부)				
15	성북	226-302	대	14	14		국(재무부)				
16	성북	226-303	대	1	1		국(재무부)				
17	성북	226-304	대	56	56		국(재무부)				
18	성북	226-305	임	5	5		박경미				
19	성북	226-306	임	10	10	부산 서구 시약로 122.1001호 (서대신동3가, 화인아트빌리지)	박경미				

별첨 2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시설사업(북악산도시자연공원 성북지구 조성) -2차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규격	면적(㎡)		실제이용 상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측량 면적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소유권이의 권리 종류 및 내용	
1	성북동 226-65 226-270	건물 (주택 및 부수시설)	세멘조	59.306052	54	주거	성북구 성북로 31길 135 (성북동)	유상수				기존무허가
			조립식		92	주거						기존무허가
				-	1	보일러실						신발생무허가
2	성북동 226-33 226-109	건물 (주택)	세멘조	39.6696	74	주거	성북구 하월곡동 60-160	최태양				기존무허가
3	성북동 226-33 226-122	건물 (주택)	세멘조	49.587	118	주거	성북구 성북동 226-33	백정자				기존무허가
4	성북동 226-36	건물 (주택)	세멘조 조립식 등	-	45	주거		미상				신발생무허가
			세멘조 조립식 등	-	81	주거		미상				신발생무허가

◆ 노원구고시 제2016-114호

도시계획시설사업(유통업무설비:대규모점포)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정정 고시

1. 서울특별시 노원구고시 제2016-109호(2016.10.19)로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대규모점포)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정 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는 노원구청 건축과(☎2116-3897)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6년 12월 1일
노 원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동 333-1번지 일대
(관련지번 : 333-1, 342-1, 342-2, 342-4, 343-1, 343-4, 343-3, 342-3, 345-2, 345-3, 343-2)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대규모점포)
- 2) 사업의 명칭 : 월계이마트 증축공사

다. 사업시행규모

- 1) 사업시행면적 : 68,469.00㎡
- 2) 변경전(기존규모) : 연면적 39,727.96㎡
- 3) 변경후(증축 후) : 3개동, 연면적 99,967.58㎡
- 4) 신청현황

구 분	기 존(㎡)	증 축 후(㎡)	비고
대지면적	68,791.00	68,469.00	
건축면적	17,350.21	31,924.34	
연 면 적	39,727.96	99,967.58	증축 60,239.62㎡
건 폐 율	25.53 %	46.63 %	50% 이하
용 적 률	49.87 %	81.06 %	100% 이하

구분	이마트		트레이더스(㎡)	행복발전소(㎡)	합 계(㎡)
	기 존(㎡)	증축후(㎡)			
건축면적	17,350.21	16,712.24	14,891.99	320.11	31,924.34
연 면 적	39,727.96	53,680.94	45,302.53	984.11	99,967.58
층 수	지하1층/3층	지하1층/4층	지하1층/5층	지하1층/지상3층	

라.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 1) 성 명 : 주식회사 이마트
- 2) 주 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뚝섬로 377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1) 착수년월일 : 허가일(실시계획변경인가일)로부터 60일 이내

2) 준공예정일 : 착수일로부터 3년

바. 위치도 및 인가도면 : 노원구청 건축과 비치도면과 같음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

지 번	지목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지역지구
				정정 전	정정 후	
333-1	대	67,969	67,807	(주)신세계	(주)이마트	일반상업지역
342-1	잡	55	55	(주)신세계	(주)이마트	자연녹지지역
342-2	잡	3	3	(주)신세계	(주)이마트	자연녹지지역
342-4	잡	30	30	(주)신세계	(주)이마트	자연녹지지역
343-1	잡	36	36	(주)신세계	(주)이마트	자연녹지지역
343-4	잡	129	129	(주)신세계	(주)이마트	자연녹지지역
343-3	잡	142	142	(주)신세계	(주)이마트	자연녹지지역
342-3	잡	14	14	노원구	노원구	자연녹지지역
345-2	도	58	58	노원구	노원구	자연녹지지역
345-3	도	583	50	노원구	노원구	유통업무 설비시설
343-2	철	145	145	국 (국토교통부)	국 (국토교통부)	자연녹지지역
합 계			68,469			

아. 고시 방법 : 시보 게재

◆ 마포구고시 제2016-155호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마포세무서)사업 사업시행자 변경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14-68호(2014.4.17.)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6조, 제97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된 마포구 신수동 43번지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같은 법률 시행령 제97

조 에 따라 사업시행자 변경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계획과(☎02-3153-9355)에 비치하여 토지 및 물건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6년 12월 1일

마 포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동 43번지(변경없음)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 명 칭 : 마포세무서청사 신축공사

다.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변경없음)

- 면 적 : 2,126.0㎡
- 규 모 : 지하4층, 지상7층, 연면적 10,960㎡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지정 : 마포세무서장 박수영
 - 변경 : 마포세무서장 이인기
- 주 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234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지정 : 인가일로부터 ~ 2016.11.30.
- 변경 : 인가일로부터 ~ 2017.06.30.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따로 붙임(변경 없음)

사.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변경 없음)

토 지 조 서(변경없음)

연번	위치	지목	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지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1	신수동 43	대	2,126.0	2,126.0	국(국세청)	-				

◆ 양천구고시 제2016-86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1. 양천구 신정동 322-12 도시계획시설(주차장)-세신교회 주차전용건축물 용도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사항을 같은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청 건축과(☎2620-3561)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6년 12월 1일
양 천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322-12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용도변경
- 명 칭 : 세신교회 주차전용건축물 용도변경 공사

다. 사업규모

- 대지면적 : 1,157.5㎡
- 건축규모 : 지하1층/지상9층, 연면적 8,329.29㎡
- 용도변경 :
지하1층 자동차관련시설(기사대기실) 131.2㎡를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으로 용도변경
지상7층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769.12㎡를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655.38㎡ 및 종교시설(교회) 113.74㎡로 용도변경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재단법인기독교 대한감리회 유지재단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세종로 광화문빌딩)

마.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30일 이내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불 입

토지·건축물 조서

1) 토지조서

구분	지목	면적(㎡)		이용 상황	용도지역 (지구)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공부상	편입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권리자	
토지	대	1,157.50	0	대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중심지미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재단법인기독교 대한감리회유지 재단	종로구 세종대로 149(세종로, 광화문빌딩	해당없음		

2) 건축물조서

구분	구조	면적(㎡)	이용 상황	용도지역 (지구)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권리자	
건축물	RC조	8329.29	주차장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중심지미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재단법인기독교 대한감리회유지재단	종로구 세종대로 149(세종로, 광화문빌딩	해당없음		

구 공 고

◆ 도봉구공고 제2016-1144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 도봉구 고시 제2016-148호(2016.11.17.)로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한 아래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청 교통지도과(☎2091-4212)에 비치하여 토지 및 물건소유자,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6년 12월 1일
도 봉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도봉구 방학동 산 58-13번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 명칭 : 전형필가옥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

다. 사업규모

- 주차장조성 : 지상평면식 주차장 15면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주소

- 시행자 :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656(방학동720번지)

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 고시일로부터 2017.12.31까지

바. 열람공고 기간 : 공보게재일로부터 14일간

사. 지장물건의 소재지, 물건의종류, 구조및규격, 소유자·이해관계인의 성명·주소 : 별첨

토 지 조 서

사업명 : 진형필가옥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주 소	성명	주 소	성명	관리의 내용	
1	방학동 산58-13	임야	739	739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221(도곡동)		김우형			

물 건 조 서

사업명 : 진형필가옥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 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소 유 권		이해관계인			비고
					주 소	성명	주 소	성명	관리의 내용	
1	방학동 산58-13	헬스		39m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221(도곡동)		김우형			
		담장	블록	35m						
		문주	블록	1개						
		콘크리트포장		739㎡						

◆ 강남구공고 제2016-1984호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변경(폐지) 결정(안) 열람공고

1. 강남구 도곡동 168번지에 위치한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시설 폐지)이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 본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변경(폐지) 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열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2월 1일

강 남 구 청 장

가. 목적 :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변경(폐지) 결정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

나.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변경(폐지) 결정조서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체육 시설	강남구 도곡동 168	8,392.0	감)8,392.0	0	1977.4.29 (서고132)	시설결정 필요성 상실에 따른 폐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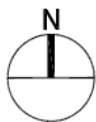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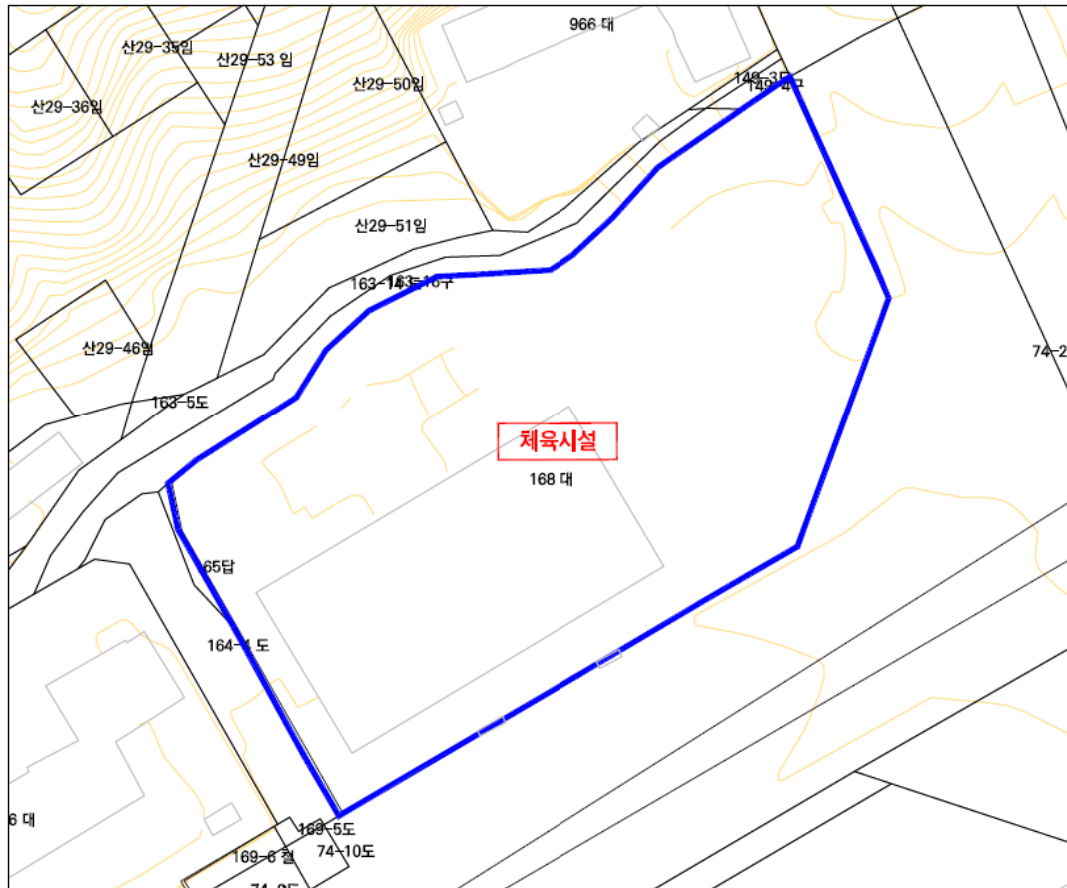
다. 열람기간 : 2016.12.1.~12.15.

라. 열람장소 : 강남구청 도시계획과(☎3423-6105)

마. 관련도서 : 게재생략(열람장소에 비치된 자료와 같음).

<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변경(폐지) 결정(안) 도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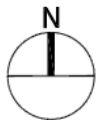
[기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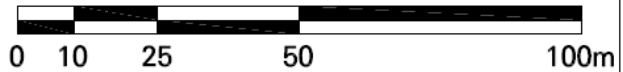
S = 1:1000



[변경]



S = 1:1000



◆ 송파구공고 제2016-1426호

도시관리계획(잠실광역중심 제1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재)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296호(2015.09.24)로 결정된 잠실광역중심 제1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신천동 29-1번지 관광숙박시설 건립'을 위해, 송파구 공고 제2016-809호(2016.07.01)로 열람공고하고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수정 의결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관련도서를 (재)열람합니다.
3. 본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열람 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2월 1일
송 파 구 청 장

- 1) 열람기간 : 2016.12.01. ~ 2016.12.15.(14일간)
- 2) 열람장소 : 송파구청 도시계획과
- 3) 열람내용

-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 도로 (변경)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대로	1	32	35	보조 간선	4,050 (68)	송파동 광20	방이동 대2-33	일반 도로	-	건고331호 (81.8.29)	오금로 일부구간 폭원변경
변경	대로	1	32	35~38 (38)	보조 간선	4,050 (68)	송파동 광20	방이동 대2-33	일반 도로	-	건고331호 (81.8.29)	

주) 오금로변 확폭된 도로(3m)구간은 사업시행자가 조성(포장 및 지하매설물이전 등 포함)하여 기부채납함.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 건축물의 용도 (신설)

구분	위 치	지 정 용 도	비고
전층	신천동 29-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및 부대시설	건축면적의 50%이상인 경우 수용된 것으로 봄

주) 지정용도는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용적을 특례 적용 시에 만 적용하되, 결정도서상 건축계획(안)을 참고하여 문화 및 집회시설(지상1/3층, 열린문화공간), 공개공간(지상2/3/6층), 공공업무시설(지상3층)을 설치·운영하여야 함.

※ 관광숙박시설 용적을 특례 적용받은 지정용도 부분은 향후 타 용도로 건축물 용도변경 불가

■ 용적률 계획 (변경)

구분	용도지역	세부 변경내용				비 고
		구분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기정	일반 상업지역	-	600%이하	800%이하	•허용용적률×(1+1.3×가중치×α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7조 준용	
변경	일반 상업지역 (신천동29-1)	-	600%이하	800%이하	•허용용적률×(1+1.3×가중치×α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7조 준용	지정용도 외 용도
		지정용도	600%이하	800%이하	1,000%이하	

주) 지정용도에 대한 상한용적률은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관광숙박시설로 건축 시에 만 적용
 : 상한용적률(1,000%) = {기준용적률(600%) + 허용용적률(200%) + 관광숙박시설 인센티브 용적률(200%)}
 ※ 허용용적률은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용적률 인센티브 유형(관광호텔 권장용도 중복적용 불가)에 따라 산정한다.
 ※ 관광숙박시설 인센티브 용적률은 '서울시 관광숙박시설 용적률에 관한 특례 운영기준 개선('14.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적률 완화 적용

■ 건축물의 배치, 대지내 공지 등에 관한사항 (변경)

구분	계 획 내 용		비 고
	기 정	변 경	
건 축 한계선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대지는 건축한계선 수직면을 넘어서 건축물 벽면과 부속시설이 설치될 수 없음 - 잠실지역 : 3~20m ※ 대상지 : 오금로변(5m 보도형), 잠실길변(5m 보도형)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대지는 건축한계선 수직면을 넘어서 건축물 벽면과 부속시설이 설치될 수 없음 - 잠실지역 : 3~20m ※ 대상지 : 오금로변(5m 보도형), 잠실길변(8.5m 차도형 + 보도형)	결정도 참조
전 면 공 지			

○ 지구단위계획 변경 사유

: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건립을 위해 주민 제
 안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를 반
 영함

※ 건축계획(안) ※ 관광숙박시설 사용계획 승인 및 건축허가 등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건축물 용도 : 관광숙박(554실)/ 업무/ 판매/ 문화 및 집회시설

■ 층 수(높이) : 지하5층/ 지상33층(129.65m)

■ 건축면적(건폐율) : 5,527.37㎡(56.54%)

■ 연 면 적(용적률) : 130,440.53㎡(993.59%)

4) 관계도서 : 생략(열람 장소에 비치)

5) 지역주민과 이해당사자의 열람편의 및 정확한 이해를 위하여 송파구청 도시계획과(담
 당: 이규용/ ☎ 2147-3002)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사업소고시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16-273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1일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그린글로벌(주)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3001-2 806호	서울시계 내 한강 (행주대교~ 당인리발전소)	선박 4척 (기선1, 부선3)	당인리발전소 서울복합 1,2호기 배수로 축조공사	2016.11.23. ~ 2017.3.31.	2016. 11.23.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16-274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1일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선우해운	인천 남구 매소홀로 68 210동 1001호	서울시계 내 한강 (아라한강갑문~당인리 발전소)	선박 3척 (기선2, 부선1)	당인리발전소 중량물 해상운송	2016.11.28. ~ 2016.12.31.	2016. 11.28.

기 타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6-419호

하천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한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SK텔레콤(주) 대표이사
 - 주 소 : 서울시 중구 을지로2가 11번지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85-7번지 등 3필지
 - 면 적 : 영구 48㎡, 일시 389.32㎡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이동통신 공용기지국 설치
 - 내 역 : 이동통신 공용기지국 1개소, 전기·광관로 389m
5. 점용기간(공사기간) : 2016.11.24.~2021.11.23.(2016.11.24.~2017.05.23.)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6-423호

하천점용(변경)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변경)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한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지역난방공사 서울중앙지사장
 - 주 소 : 서울시 마포구 하늘공원로 84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시 마포구 당인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서초구 반포동 일원
 - 면 적 : 영구 30,664㎡, 일시 100㎡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열배관 매설 1식
 - 내 역 :
 - 열배관 매설 1식(변경없음)
 - 열배관 보수공사를 위한 관로 주변 일시 점용
5. 점용기간(공사기간) : 2014.10.21.~2019.10.20.(2016.11.28.~2016.12.27.)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6-424호**

하천점용(변경)허가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및 3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변경)허가 실시계획(변경)인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한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당초>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115-1번지 등 22필지
 <변경>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115-1번지 등 17필지
 - 면 적 : <당초>268,205.7㎡
 <변경>197,426.5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한강도심 생태공원 확충사업
 - 내 역 :

당 초	변 경
- 자연형 호안 설치 1식 - 자전거도로 설치 1식 - 보행자도로 설치 1식 - 수목식재 1식 - 가도설치 L=40m	- 자연형 호안 설치 1식(변경없음) - 자전거도로 설치 1식(변경없음) - 보행자도로 설치 1식(변경없음) - 수목식재 1식(수량 일부 감소) - 가도설치 L=40m(변경없음)

5. 점용기간(공사기간) : 2013.09.11.~2018.09.10(2013.09.11~2016.12.31)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6-427호

하천점용(일시)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일시)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안양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서울특별시장
 - 주 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강서구 염창동 221-1
 - 면 적 : 377m²(굴착 168m², 가설도로 209m²)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지역난방 열수송관 계획보수공사
 - 내 역 : · 열수송관 600A 56m×1열(공급관) 교체
· 가설(우회)도로 1식
5. 점용기간(공사기간) : 2016.11.28.~2017.01.20.(2016.11.28.~2017.01.20.)

정 정

◆ 정 정

강서구고시 제2016-58호 정정

서울시보 제3363호(2016.8.4)에 게재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의 내용에 오류가 있어 아래와 같이 정정합니다.

2016년 12월 1일
강 서 구 청 장

[정정 전]

사용 또는 수용할 물건조서

사업시행자 : 강서구청장

사업의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공사명 : 공항동 40-8-30-60간 도로개설공사

연번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및규 격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소유자		지분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리내용	
1	방화동 644-12	담장	벽돌	54.2㎡	54.2㎡	정종영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수기토39-13, 302동 702호(수기마을현대힐스테이트)	1/1				변경없음
2	"	EGI 펜스	철	10.2㎡	10.2㎡	"	"	1/1				변경없음
3	"	철문	철	1식	1식	"	"	1/1				변경없음
4	"	보안등	전등	1식	1식	"	"	1/1				변경없음

[정정 후]

사용 또는 수용할 물건조서

사업시행자 : 강서구청장
사업의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공사명 : 방화동 642 ~ 647-14간 도로개설공사

연번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공부 면적	면적	소유자			지분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주 소		성명	주 소	권리내용	
1	방화동 644-12	담장	벽돌	54.2㎡	54.2㎡	정종영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수기로39-13, 302동 702호(수기마을현대힐스테이트)		1/1				경정 임 없
2	"	EGI 펜스	철	10.2㎡	10.2㎡	"	"		1/1				경정 임 없
3	"	철문	철	1식	1식	"	"		1/1				경정 임 없
4	"	보인등	전등	1식	1식	"	"		1/1				경정 임 없



함께 서울

시민과 함께 세계와 함께

- 안전한 서울
- 따뜻한 서울
- 꿈꾸는 서울
- 숨쉬는 서울

기관의 장	
선	
람	

공 람									